

DIPLOMATIC SERVICE EXAM · ESSAY

외교관후보자 2차 기출 완성

제3권 국제법

2016~2026년 제2차시험 기출 · 자습용 · 2026년 10월 판

차례

일러두기	3
제0장 시험 이해와 답안 쓰는 법	4
0-1 문제지에서 확인되는 시험 구조	5
0-2 11개년 출제 지도	5
0-3 주제별 빈도와 경향	6
0-4 국제법 사례형 답안 쓰는 법	7
0-5 학습 계획	8
제1장 국제법의 연원과 조약법	9
1-1 핵심 개념	10
1-2 기출 풀이	14
2018 제1문 공동선언문의 조약성과 구속력 부인 주장	14
2020 제1문 강제노동 조약의 무효와 관련 조약의 불이행	17
2020 제2문 인권조약 가입 시 해석선언과 조약 관계	20
2022 제3문 대기환경협약의 무효 주장과 중대한 위반	23
2025 제2문 자결권과 대세적 의무, 점령지 임대조약	26
제2장 국가·영토·관할권·국가면제	29
2-1 핵심 개념	30
2-2 기출 풀이	33
2017 제1문 국영기업과 대사를 상대로 한 계약 소송	33
2019 제2문 외국 비밀경찰관의 고문에 대한 형사관할권	36
2023 제3문 고문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과 국가면제	38
2024 제1문 탈식민지 국경분쟁과 연방 해체의 승계	40
제3장 외교·영사관계	43
3-1 핵심 개념	44
3-2 기출 풀이	46
2016 제2문 공관 화재와 소방 당국의 진입	46
2022 제2문 부임 외교관의 공항 폭행과 공사 직원의 보복	48
제4장 국가책임·외교적 보호·대응조치	51
4-1 핵심 개념	52
4-2 기출 풀이	55
2017 제2문 평화유지군의 부주의로 인한 전염병 피해	55
2018 제2문 희토류 공급 불이행과 인도적 물자 제공 거부	57
2019 제1문 반란단체의 수용과 회사·주주의 외교적 보호	60
2026 제1문 자율무기통제협정 위반에 대한 대응	62
제5장 해양법	65
5-1 핵심 개념	66
5-2 기출 풀이	69
2017 제3문 군함과 잠수함의 국제해협 통항	69
2018 제3문 영해 통항 상선 내 살인과 인도·관할권	71
2023 제1문 EEZ 급유와 선박 충돌, 공해상 추적·나포	73
2025 제1문 영해 통항 선박 수사, 저조고지 위 인공기지, EEZ 충돌	75
제6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ICJ	78
6-1 핵심 개념	79
6-2 기출 풀이	81
2021 제3문 차별철폐협정에 근거한 잠정조치와 관할권 항변	81
2026 제2문 대사관 점거, 잠정조치 불이행과 판결 집행	84
제7장 무력사용금지·자위권·UN 집단안보	87
7-1 핵심 개념	88

7-2 기출 풀이	90
2016 제1문 반란단체 지원과 유전지대 폭격·기뢰 설치	90
2019 제3문 내전 중 인질이 된 자국민과 외국인의 군사적 구출	93
2021 제2문 국경 총격에 대한 대규모 진격·점령과 제3국의 항의	95
2022 제1문 비회원국의 소수민족 탄압과 안보리·ICC	98
2023 제2문 반군 지원과 지역 방위기구 다국적군의 선박 격침	101
제8장 국제인권법 · 국제인도법 · 국제형사법	103
8-1 핵심 개념	104
8-2 기출 풀이	107
2020 제3문 내전 중 항복자·가족 살해와 상급자 명령·지휘관 책임	107
2021 제1문 원어민 교사 HIV 검사와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	109
2024 제2문 항공기 납치범의 인도 요청과 고문 위험	111
2024 제3문 인종차별 정권에 대한 해방기구의 무력투쟁	114
제9장 국제환경법과 우주법	117
9-1 핵심 개념	118
9-2 기출 풀이	121
2016 제3문 UNFCCC 전문에 담긴 국제환경법 기본원칙	121
2025 제3문 군소도서국 기구의 기후변화 권고적 의견 요청	124
2026 제3문 민간 기업의 달 자원 채굴과 탐사선 파괴	127
부록 참조 자료	129
부록 A 연도별 문항 일람	130
부록 B 주제 색인	131
부록 C 핵심 조문 요지	133

일러두기

이 권의 구성. 이 책은 2016~2026년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시험 국제법 기출 33개 대문을 주제별로 재배열하고, 문항마다 출제 포인트, 답안 개요, 예시답안을 붙인 자습서이다. 0장에서 시험 구조와 답안 쓰는 법을 정리하고, 1~9장에서 주제별 핵심 개념 카드와 기출 풀이를 제공한다. 부록에는 연도별 문항 일람(A), 주제 색인(B), 이 책에서 인용한 핵심 조문의 요지(C)를 실었다.

공부법. 각 장은 ‘핵심 개념 → 기출 풀이’ 순서이다. 기출 풀이에서는 문제지 원문을 읽은 뒤 바로 답안 개요와 예시답안을 보지 말고, 스스로 쟁점과 근거 조문을 적어 본 다음 비교하기를 권한다. 예시답안은 하나의 모범 구성일 뿐이며, 같은 결론에 이르는 다른 논리 구성도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 학설이 나뉘는 쟁점(자국민 구출, 해석선언의 효과, 달 자원 채굴 등)에서는 반대 결론도 근거가 충실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표기 기준.

- 조약 약칭: 조약법협약(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국가책임초안(ILC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외교관계협약(1961), 영사관계협약(1963), UNCLOS(UN해양법협약), ICJ규정, 로마규정(ICC 규정), 국가면제협약(2004년 UN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협약), 고문방지협약(CAT), 우주조약(1967), 책임협약(1972년 우주물체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협약).
- 판례는 ‘ICJ 사건명(판결·의견 연도)’으로 적었다. PCIJ,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중재, 유럽인권재판소, 국내 법원 판례는 법원을 함께 밝혔다.
- 조문 번호는 정확하다고 확인한 것만 적었다. 확신이 없는 경우 번호 없이 규칙의 내용만 서술하였다.
- 2025~2026년 문항의 예시답안은 문제지에 주어진 사실만을 전제로 작성하였다.
- 문제지 원문의 「」, 따옴표, 괄호 표기는 가능한 한 그대로 옮겼다. 2016~2021년 문제지는 2단 조판이어서 원본 이미지를 보고 문장 순서를 확정하였다.

저작권 주의. 기출 문항은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공개된 문제지에서 옮겼다. 외부 배포·판매 전에 이용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예시답안과 해설은 이 책의 저자가 작성한 것으로 출제기관의 공식 답안이 아니다.

제0장

시험 이해와 답안 쓰는 법

배점 구조 · 11개년 출제 지도 · 주제별 빈도 · 사례형 답안의 네 단계 · 학습 계획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

0-1 문제지에서 확인되는 시험 구조	5
0-2 11개년 출제 지도	5
0-3 주제별 빈도와 경향	6
0-4 국제법 사례형 답안 쓰는 법	7
0-5 학습 계획	8

0-1 문제지에서 확인되는 시험 구조

2016~2026년 국제법 문제지는 모두 **대문 3개**로 구성되며, 대문마다 가상의 국가 A, B, C ...가 등장하는 사실 관계(사례)를 주고 2~3개의 소문을 묻는다. 2019년처럼 소문 없이 하나의 물음만 있는 대문도 있다. 대문 배점의 합계는 매년 100점이다.

연도	제1문	제2문	제3문
2016	50점(소문 3)	30점(소문 2)	20점(단일)
2017	40점(소문 2)	30점(소문 2)	30점(소문 2)
2018	40점(소문 2)	40점(소문 2)	20점(소문 2)
2019	40점(단일)	30점(단일)	30점(단일)
2020	40점(소문 3)	40점(소문 2)	20점(소문 2)
2021	20점(소문 2)	40점(소문 2)	40점(소문 2)
2022	40점(소문 3)	30점(소문 3)	30점(소문 2)
2023	30점(소문 2)	30점(소문 2)	40점(단일)
2024	40점(소문 3)	30점(소문 3)	30점(소문 2)
2025	40점(소문 3)	30점(소문 2)	30점(소문 2)
2026	35점(소문 2)	35점(소문 3)	30점(소문 2)

2023년부터 문제지 표제가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시험’으로 바뀌어 5급 행정 시험과 같은 문제지가 쓰이고 있다(2023~2024년 표제는 ‘국제법 <필수>’). 시험 시간, 답안지 분량, 과목 편성 등 문제지에 나타나지 않는 사항은 매년 인사혁신처 공고로 확인해야 한다.

배점에서 읽을 것

소문 배점은 10점, 15점, 20점이 대부분이다. 10점 소문은 하나의 쟁점에 대한 규범 제시와 포섭, 20점 소문은 둘 이상의 쟁점이나 원칙과 예외의 두 단계 검토를 요구한다고 보면 된다. 이 책의 예시답안은 점수당 약 50~70자를 기준으로 했다(40점 대문 약 2,000~2,800자).

0-2 11개년 출제 지도

연도	문	소재와 쟁점	주제(이 책의 장)	배점
2016	1	반란단체 지원, 유전 폭격·기뢰 / 불간섭·무력사용·자위권	무력사용(7장)	50
	2	공관 화재와 소방 당국 진입 / 공관 불가침	외교관계(3장)	30
	3	UNFCCC 전문 / 환경법 기본원칙	환경법(9장)	20
2017	1	국영기업·대사 상대 계약 소송 / 국가면제·외교관 면제	국가면제(2장)	40
	2	평화유지군의 전염병 / 국제기구·공여국 책임	국가책임(4장)	30
	3	군함·잠수함의 해협 통행 / 무해통행·통과통행	해양법(5장)	30
2018	1	공동선언문 / 조약의 개념·체결권한·국내법 위반	조약법(1장)	40
	2	희토류 미공급과 인도적 물자 거부 / 불가항력·대응조치	국가책임(4장)	40
	3	영해 통행 상선 내 살인 / 범죄인인도·제27조	해양법(5장)	20
2019	1	반란군의 회사 재산 수용 / 외교적 보호	국가책임(4장)	40
	2	외국 비밀경찰의 고문 / 관할권 근거	관할권(2장)	30
	3	내전 중 인질 구출 / 자국민 보호와 무력사용	무력사용(7장)	30
2020	1	강제노동 철도조약 / 강행규범·가분성·국가책임	조약법(1장)	40

연도	문	소재와 쟁점	주제(이 책의 장)	배점
	2	인권조약 가입과 해석선언 / 유보	조약법(1장)	40
	3	항복자·가족 살해 / 상급자 명령·지휘관 책임	국제형사법(8장)	20
2021	1	원어민 교사 HIV 검사 / 규약위원회 견해·세계인권선언	인권법(8장)	20
	2	국경 총격과 점령, 제3국 항의 / 자위권·제48조	무력사용(7장)	40
	3	차별철폐협정과 ICJ / 잠정조치·관할권 항변	ICJ(6장)	40
2022	1	비회원국 소수민족 탄압 / 안보리 강제조치·ICC	집단안보(7장)	40
	2	부임 외교관의 공항 폭행 / 면제 개시·귀속·국가면제	외교관계(3장)	30
	3	대기환경협약 / 국내법 위반 무효·중대한 위반	조약법(1장)	30
2023	1	EEZ 급유·선박 충돌·추적 / EEZ 관할·제97조·추적권	해양법(5장)	30
	2	반군 지원과 지역기구 다국적군 / 집단적 자위권	무력사용(7장)	30
	3	고문 피해자의 국가 상대 소송 / 강행규범과 국가면제	국가면제(2장)	40
2024	1	탈식민지 국경·연방 해체 / 현상유지·국가승계	국가·영토(2장)	40
	2	항공기 납치범 인도 / 헤이그협약·고문방지협약	국제형사·인권(8장)	30
	3	해방기구의 무력투쟁 / 무력충돌 분류·포로 지위	국제인도법(8장)	30
2025	1	영해 통항 선박 수사, 저조고지, EEZ 충돌	해양법(5장)	40
	2	점령지 장벽과 임대조약 / 자결권·대세적 의무·제53조	조약법·연원(1장)	30
	3	군소도서국 기구의 권고적 의견 요청 / 관습 환경 의무	환경법(9장)	30
2026	1	자율무기통제협정 위반 / 제60조·대응조치	국가책임(4장)	35
	2	대사관 점거, 잠정조치, 판결 집행	ICJ·외교관계(6장)	35
	3	민간 기업의 달 채굴·탐사선 파괴 / 우주조약·책임협약	우주법(9장)	30

0-3 주제별 빈도와 경향

장	주제	대문 수	배점 합계
1	국제법의 연원과 조약법	5	180
2	국가·영토·관할권·국가면제	4	150
3	외교·영사관계	2	60
4	국가책임·외교적 보호·대응조치	4	145
5	해양법	4	120
6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ICJ	2	75
7	무력사용금지·자위권·UN 집단안보	5	190
8	국제인권법·인도법·형사법	4	100
9	국제환경법과 우주법	3	80
	합계	33	1,100

경향 세 가지

- ① **조약법과 무력사용이 양대 축이다.** 두 분야가 11년간 10개 대문, 370점을 차지한다. 특히 무력사용은 니카라과 사건(1986)의 구별(자금 → 무장·훈련 → 무력공격)이 세 번(2016, 2021, 2023) 반복되었다.
- ② **한 대문 안에서 분야를 교차시킨다.** 2022-2는 외교관계법·국가책임법·국가면제법을, 2026-2는 외교관계법과 ICJ 절차를, 2022-1은 집단안보와 ICC를 한 사례에 묶었다. 쟁점을 분야별로 쪼개어 각각의 규범을 찾아야 한다.
- ③ **실제 판례의 사실관계를 각색한다.** 2026-2는 테헤란 인질 사건, 2025-2는 장벽 권고적 의견, 2021-3은 조지아/러시아 사건, 2023-3은 독일/이탈리아 사건을 모델로 한다. 주요 판례의 사실관계와 판시를 짚으로 기억해 두면 문제의 의도를 금방 알아볼 수 있다.

0-4 국제법 사례형 답안 쓰는 법

국제법 답안은 **소문마다** 다음 네 단계를 반복한다. 법학 사례형 답안의 일반적 구조와 같다.

단계	할 일	예시(2022-2 1문)
① 쟁점	무엇이 다투어지는지 한 문장으로	“신임장 제정 전 외교관에게 형사재판권 면제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② 관련 규범	조약 조문(번호), 관습, 판례를 정확히	“외교관계협약 제39조 제1항은 ... 부임하기 위해 접수국 영역에 들어간 순간부터 특권·면제를 누린다고 규정한다.”
③ 사안 포섭	문제의 사실을 규범의 요건에 하나씩 대입	“甲은 아그레망을 받고 신임장을 소지한 채 부임을 위해 입국하였으므로 ...”
④ 결론	물음에 대한 직접적 답	“따라서 B국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

실전 팁

서론은 한두 문장이면 충분하다. “이 문제는 ①..., ②...를 묻는다”처럼 쟁점의 지도를 먼저 보여 주면 채점자가 답안 구조를 금방 파악한다. **결론도 짧게,** 소문별 결론을 한 문단으로 다시 묶는다. 본문은 물음의 번호 1), 2)를 그대로 따르고, 그 안에서 (1), (2)로 쟁점을 나눈다.

자주 하는 실수

- **조문 번호를 틀리게 쓰는 것.** 확신이 없으면 번호 없이 규칙의 내용만 정확히 쓰는 편이 낫다. 틀린 번호는 감점 요인이지만, 정확한 내용 서술은 그 자체로 점수가 된다.
- **포섭 없이 규범만 나열하는 것.** “제23조의 요건은 ...이다”로 끝내고 사안의 사실(제3국의 폭격, 우발적 충격이라는 구실 등)을 대입하지 않으면 사례형 답안의 핵심이 빠진다.
- **문제가 준 사실을 버리는 것.** ‘발효를 3개월 앞둔 시점’(2022-3), ‘A국 항구를 떠나’(2025-1), ‘스위스 정부에 선언’(2024-3)처럼 출제자가 일부러 넣은 사실은 반드시 답안에 등장해야 한다.
- **원칙만 쓰고 예외를 쓰지 않는 것, 또는 그 반대.** 국제법 쟁점은 대부분 ‘원칙 → 예외 → 예외의 요건’의 구조이다.

판례 인용의 원칙

판례는 **사건명과 연도**, 그리고 그 사건이 무엇을 판시했는지를 한 문장으로 쓴다. 예: “ICJ는 라그랑 사건(2001)에서 잠정조치 명령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하였다.” 판례의 세부 문단 번호까지 쓸 필요는 없다. 이 책에서 인용한 판례와 조문은 부록 B·C에 모아 두었다.

0-5 학습 계획

단계	기간(예시)	할 일
1	1~2주	1장(조약법)과 4장(국가책임)의 개념 카드를 먼저 익힌다. 다른 모든 장이 이 두 체계 위에서 움직인다.
2	3~5주	2·3·5·7장. 장마다 개념 카드 → 기출 문제만 보고 개요 작성(15분) → 답안 개요 표와 비교 → 예시답안 정독.
3	6~7주	6·8·9장과 부록 C의 조문 정리. 조문 번호를 수역별(해양법), 단계별(조약법·국가책임)로 묶어 암기한다.
4	8주 이후	연도별로 3문항을 실제 시간에 맞추어 작성(시험 시간은 공고 확인). 써봄(writegrow.net) 같은 첨삭 도구나 스터디로 피드백을 받는다.

제1장

국제법의 연원과 조약법

조약의 개념·체결권한 · 유보 · 무효(국내법 위반, 강행규범) · 종료·정지 · 대세적 의무와 자결권 | 기출 5문항:
2018-1, 2020-1, 2020-2, 2022-3, 2025-2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

1-1 핵심 개념	10
1-2 기출 풀이	14
2018 제1문 공동선언문의 조약성과 구속력 부인 주장	14
2020 제1문 강제노동 조약의 무효와 관련 조약의 불이행	17
2020 제2문 인권조약 가입 시 해석선언과 조약 관계	20
2022 제3문 대기환경협약의 무효 주장과 중대한 위반	23
2025 제2문 자결권과 대세적 의무, 점령지 임대조약	26

1-1 핵심 개념

조약법은 국제법 답안의 뼈대이다. 이 장의 다섯 문항은 모두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1969, 이하 ‘협약’)의 조문을 순서대로 적용하는 능력을 묻는다. 조약이 성립했는가(제2조, 제7조) → 유보가 붙었는가(제19조~제23조) → 무효 사유가 있는가(제46조~제53조) → 종료·정지 사유가 있는가(제60조~제64조) → 절차를 밟았는가(제65조~제66조)의 흐름을 기억하자.

국제법의 연원 — ICJ규정 제38조

ICJ규정 제38조 제1항은 재판소가 적용할 법으로 (a) 조약, (b)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 (c) 문명국이 인정한 법의 일반원칙, (d) 법칙 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의 사법 판결과 저명한 학설(제59조의 제한 아래)을 든다. 관습은 **일반관행**과 **법적 확신(opinio juris)**이라는 두 요소로 성립한다. 총회 결의는 그 자체로 구속력이 없지만 관습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제2항은 당사자가 합의하면 형평과 선(ex aequo et bono)에 따라 재판할 수 있다고 한다.

대립 구도

조약(명시적 동의) ↔ 관습(일반관행 + 법적 확신) · 형평과 선(합의 필요) ↔ 법 안의 형평(equity infra legem)

쓰이는 기출 2021-1(세계인권선언의 효력), 2024-1(국경분쟁의 적용 법규), 2025-3(관습법상 환경 의무)

답안 속 문장

“총회 결의는 그 자체로 구속력이 없으나, 그 내용이 일반관행과 법적 확신으로 뒷받침되면 관습국제법으로서 모든 국가를 구속한다.”

조약의 개념과 체결권한

조약은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고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국제적 합의이다(제2조 제1항 (a)). 핵심은 **법적 의무를 창설하려는 의사**이며, 문언·체결 경위로 판단한다(에게해 대룩봉 1978, 카타르·바레인 1994). 국가원수·정부수반·외교장관은 전권위임장 없이 국가를 대표하고(제7조 제2항 (a)), 그 밖의 자는 전권위임장이나 관행으로 대표성이 인정된다(제7조 제1항). 권한 없는 자의 행위도 사후 확인으로 유효해진다(제8조). 기속적 동의는 서명·비준·수락·승인·가입 등으로 표시한다(제11조~제17조).

대립 구도

정치적 선언(MOU) ↔ 조약 · 명칭·국내 분류 ↔ 법적 구속 의사

쓰이는 기출 2018-1(공동선언문), 2022-3(서명에 의한 동의)

답안 속 문장

“조약인지 여부는 명칭이나 국내법상 분류가 아니라 문언에 드러난 법적 구속 의사로 판단한다. 중재 조항과 개정·폐기 조항은 그 의사의 강한 징표이다.”

유보와 해석선언

유보는 명칭에 관계없이 조약 일부 규정의 법적 효과를 자국에 대해 배제·변경하려는 일방적 성명이다(제2조 제1항 (d)). 해석선언은 의미를 명확히 할 뿐 효과를 바꾸지 않는다. 유보는 조약이 금지하거나, 특정 유보만 허용하거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제19조, 제노사이드협약 유보 권고적 의견

1951). 수락은 유보국과의 조약 관계를 성립시키고(제20조 제4항 (a)), 단순 이의는 조약 관계를 막지 않으며 유보 관련 규정만 그 범위에서 적용 배제된다(제20조 제4항 (b), 제21조 제3항). 12개월 내 이의가 없으면 수락으로 간주된다(제20조 제5항).

대립 구도

수락 → 수정된 조약 관계 · 단순 이의 → 해당 규정 범위 제외 · 조약 관계 거부 의사 있는 이의 → 조약 관계 없음

쓰이는 기출 2020-2(지역 인권조약 가입 시 해석선언)

답안 속 문장

“명칭이 해석선언이라도 조약 규정의 법적 효과를 자국에 대해 변경하려는 것이면 협약 제2조 제1항 (d)의 유보이며, 그 허용 여부는 제19조의 양립성 기준으로 판단한다.”

조약의 해석

조약은 문맥에 따라 그리고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용어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한다(제31조 제1항). 문맥에는 전문과 부속서, 관련 합의가 포함되고, 후속 합의와 후속 관행, 관련 국제법 규칙도 함께 고려한다(제31조 제2항, 제3항). 준비작업 등 보충적 수단은 의미를 확인하거나 의미가 모호·불합리할 때 사용한다(제32조). 둘 이상의 언어가 정본이면 각 정본은 동등하게 권위가 있고, 차이가 해소되지 않으면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문언을 가장 잘 조화시키는 의미를 택한다(제33조). ICJ는 라그랑 사건(2001)에서 이 방식으로 잠정조치의 구속력을 도출하였다.

쓰이는 기출 2026-2(잠정조치의 구속력), 2023-1(EEZ 규정의 해석)

답안 속 문장

“ICJ규정 제41조의 ‘지시(indicate)’라는 문언만으로는 구속력이 불분명하나, 규정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보면 잠정조치는 구속력을 가진다(라그랑 사건).”

조약의 무효 — 국내법 위반에서 강행규범까지

협약은 무효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한다. 조약 체결권한에 관한 **명백하고 근본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위반(제46조), 대표 권한의 특정 제한 위반(제47조), 착오(제48조), 사기(제49조), 부패(제50조), 국가 대표에 대한 강박(제51조), 무력에 의한 강박(제52조), 강행규범 위반(제53조)이다. 제46조의 ‘명백성’은 선의로 행동하는 국가에게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이며(제2항), ICJ는 카메룬·나이지리아 사건(2002)에서 이를 엄격히 해석하였다. 제53조에 따른 무효는 조약 전체에 미치고 분리가 허용되지 않는다(제44조 제5항). 그 결과 당사국은 저촉 행위의 결과를 가능한 한 제거해야 한다(제71조). 새 강행규범이 생기면 저촉 조약은 그때부터 종료한다(제64조).

대립 구도

상대적 무효(제46조~제50조: 원용해야 하고 묵인으로 상실, 제45조) ↔ 절대적 무효(제51조~제53조)

쓰이는 기출 2018-1(체결권한-국내 절차), 2020-1(강제노동), 2022-3(비준동의 생략), 2025-2(점령지 임대조약)

답안 속 문장

“국내 비준동의 절차의 생략은 그것이 상대국에게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에만 무효 사유가 된다. 국가는 다른 국가의 헌법·입법 동향을 계속 파악할 일반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

조약의 종료·정지와 절차

양자조약의 **중대한 위반**은 상대방에게 종료·정지 사유가 된다(제60조 제1항). 중대한 위반은 허용되지 않는 이행 거부 또는 대상·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규정의 위반이다(제3항). 다만 인도적 조약의 인간 보호 규정은 예외이다(제5항). 이행에 필수적인 대상의 영구적 소멸·파괴는 후발적 이행불능(제61조), 근본적 사정변경은 엄격한 요건 아래 종료 사유가 되며(제62조), 국경 조약에는 사정변경을 원용할 수 없다(제62조 제2항 (a)). 어떤 사유든 상대국에 서면 통고하고 원칙적으로 3개월을 기다려야 하며, 이의가 있으면 현장 제33조의 수단으로 해결한다(제65조~제67조). 조약 발효 전 서명국은 대상·목적에 저해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제18조).

대립 구도

조약법(조약의 존속) ↔ 국가책임법(불이행의 위법성과 결과) — 가브치코보·나기마로스 사건(1997)

쓰이는 기출 2022-3(협약 의무 불이행), 2026-1(자율무기 금지 위반), 2018-2(이행불능)

답안 속 문장

“아직 발효하지 않은 조약은 위반될 수 없으므로 발효 전 행위는 제60조의 중대한 위반이 되지 않는다. 문제는 제18조의 의무 위반으로 다루어야 한다.”

강행규범과 대세적 의무

강행규범은 국제공동체 전체가 수락·인정한, 이탈이 허용되지 않는 규범이다(제53조). 침략 금지, 제노사이드·인도에 반한 죄 금지, 노예제·고문·인종차별 금지, 국제인도법의 기본 규칙, 자결권 등이 거론된다. 대세적 의무는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해 지는 의무로서 모든 국가가 그 보호에 법적 이익을 가진다(바르셀로나 트랙션 1970). 두 개념은 겹치지만 초점이 다르다. 강행규범은 **규범의 위계**, 대세적 의무는 **청구 주체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에 대해 모든 국가는 협력하여 이를 종식시키고, 그로 인한 상황을 승인하거나 유지를 원조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국가책임초안 제41조, 장벽 권고적 의견 2004).

대립 구도

강행규범(무효·위계) ↔ 대세적 의무(제48조에 따른 비피해국의 책임 추궁)

쓰이는 기출 2020-1, 2021-2, 2023-3, 2025-2

답안 속 문장

“강행규범과 국가면제 규칙은 서로 다른 차원에 있으므로 충돌하지 않는다. 면제는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정할 뿐 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독일/이탈리아 사건, 2012).”

자결권

인민이 정치적 지위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발전을 추구할 권리로서(헌장 제1조 제2항, 양 인권규약 공통 제1조, 총회 결의 1514·2625), 동티모르(1995)·장벽(2004)·차고스(2019) 사건에서 대세적 성격과 관습법적 지위가 확인되었다. 외적 자결(독립)은 식민지배·외국 점령 등에 한정되고, 기존 국가 안에서는 내적 자결(대표성 있는 정부, 자치)이 원칙이다. 영토보전, 현상유지(uti possidetis) 원칙과 조화되어야 한다.

대립 구도

자결권 ↔ 영토보전 · 외적 자결 ↔ 내적 자결 · 구체적 분리독립론(미확립)

쓰이는 기출 2025-2, 2024-3(민족해방전쟁), 2024-1(현상유지 원칙)

답안 속 문장

“자결권은 영토보전 원칙과 조화되어야 하므로, 전체 인민을 대표하는 정부를 가진 국가에서 일방적 분리 독립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1-2 기출 풀이

2018 제1문

공동선언문의 조약성과 구속력 부인 주장

총 40점 · 소문 2개 · 조약의 개념, 체결권한, 국내법 위반

제1문.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40점)

〈제시문〉

(가) A국과 B국은 2012년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선언문에 합의·서명하였다. 이 선언문은 제2조 내지 제14조에서 구체적 경제협력사항, 제15조에서 분쟁발생 시 중재 회부, 제16조에서 개정 및 폐기를 규정하였다. A국에서는 이 선언문이 입법부의 동의를 얻은 후 조약번호 부여 없이 공동선언문 순서 번호가 부여되어 관보의 '기타' 항목에 게재되었다.

(나) 2015년 B국에서 정변이 발생하였다. 새 정부는 위 선언문이 국제법상 조약이 아니며, 실령 조약이더라도 첫째, 당시 합의·서명한 혁명평의회 의장이 국가원수의 지위에 있지 않기에 조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둘째, B국 국내법상 모든 구속력 있는 합의가 평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하지만 위 선언문이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B국이 선언문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A국과 B국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당사국임)

1) 위 선언문이 국제법상 조약인지 여부를 판단하시오.

(20점)

2) 위 비엔나협약에 입각하여 (나)의 B국 주장이 타당한지를 논하시오. (20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명칭이 '선언문'인 합의가 조약인지(제2조 제1항 (a))와, 정변 후 새 정부의 구속력 부인 주장(제7조, 제46조)을 묻는다. **연결 개념** 조약의 개념, 국가 대표, 국내법 위반의 원용 제한, 정부 승계와 조약의 계속성. **합정** 관보 게재 방식이나 조약번호 미부여 같은 국내 처리 방식을 근거로 조약성을 부정하면 안 된다. 2)에서 제27조만 쓰고 제46조의 '명백성' 요건을 빠뜨리는 실수가 잦다.

■ 답안 개요

소문	쟁점	근거 조문·판례	결론	분량
1)	명칭이 선언문인 합의의 조약성	제2조 제1항 (a) · 에게해 대륙붕 (1978) · 카타르·바레인(1994) · 헌장 제102조	구속 의사(중재·폐기 조항) → 조약	약 1,100자
2)	혁명평의회 의장의 권한 · 국내 절차 위반	제7조 제1항 (b)·제2항 (a), 제8조, 제26조, 제27조, 제45조, 제46조 · 카메룬·나이지리아(2002)	두 주장 모두 부당	약 1,400자

예시답안 — 2018 제1문

이 문제는 형식이 ‘공동선언문’인 합의가 조약인지, 그리고 조약이라면 체결권한 흠결과 국내 절차 위반을 이유로 구속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앞의 것은 조약의 개념 문제이고, 뒤의 것은 조약의 무효 사유 문제이다.

1) 공동선언문이 국제법상 조약인지 여부

(1) 조약의 개념.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하 ‘협약’) 제2조 제1항 (a)는 조약을 “단일 문서에 또는 둘 이상의 관련 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로 정의한다. 따라서 조약인지는 명칭이 아니라 ① 국가 간의 ② 서면 합의로서 ③ 국제법의 규율을 받으려는, 즉 법적 권리·의무를 창설하려는 의사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2) 판단 기준.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에게해 대륙붕 사건(1978)에서 공동성명도 국제적 합의가 될 수 있으며 그 성격은 실제 문언과 체결 경위에 따라 정해진다고 하였다. 카타르·바레인 사건(관할권·수리가능성, 1994)에서는 양국 외무장관이 서명한 회의록이 권리·의무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국제적 합의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서명자가 정치적 선언에 그칠 의사였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즉 객관적 문언이 법적 의무를 표시하면 당사자의 사후 주관적 해석보다 문언이 우선한다.

(3) 사안의 포섭. 이 선언문은 국가원수급 정상회담에서 합의·서명된 서면 합의이다. 제2조~제14조는 구체적 경제협력 의무를, 제15조는 분쟁 발생 시 중재 회부를, 제16조는 개정 및 폐기를 규정한다. 중재 조항과 개정·폐기 조항은 당사국이 이 합의를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것으로 다루려 했다는 강한 징표이다. 정치적 선언이라면 구속력 있는 제3자 분쟁해결이나 폐기 절차를 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A국이 입법부 동의를 거친 점도 법적 문서로 다루었다는 정황이다. 관보에 조약번호 없이 ‘기타’ 항목으로 게재된 것은 A국 국내의 분류 방식일 뿐이며, 조약의 성립은 국내법상 분류가 아니라 국제법에 따라 판단한다. UN헌장 제102조의 등록이 없어도 조약의 효력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미등록 조약은 UN 기관에서 원용할 수 없을 뿐이다).

(4) 소결. 이 선언문은 명칭에도 불구하고 협약 제2조 제1항 (a)의 조약에 해당한다.

2) (나)에서 B국 주장의 타당성

(1) 정부 변경과 조약의 효력. 정변으로 정부가 바뀌어도 국가의 동일성은 유지되므로 국가가 체결한 조약의 구속력은 그대로이다. 협약 제26조(약속은 지켜져야 한다)에 따라 B국 새 정부도 선언문에 구속된다.

(2) 첫째 주장: 혁명평의회 의장의 체결권한. 협약 제7조 제2항 (a)에 따르면 국가원수, 정부수반, 외교장관은 직무상 전권위임장 없이 조약 체결의 모든 행위에 관하여 자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조항은 직함이 아니라 실질적 기능에 따라 적용된다. 정변 이후 혁명평의회 의장이 B국을 실효적으로 통치하며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있었다면 그는 사실상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으로 볼 수 있다. 설령 그

렇지 않더라도 제7조 제1항 (b)는 관련 국가의 관행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보아 그를 대표로 간주하려는 의사가 나타나는 경우를 인정한다. 정상회담에서 상대국 A국이 그를 B국 대표로 대우했고 B국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면 이 요건이 충족된다. 나아가 권한 없는 자의 행위라 하더라도 제8조에 따라 국가가 사후에 확인하면 법적 효과를 가지며, B국이 선언문을 이행해 왔다면 묵시적 확인이 인정될 수 있다. 첫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둘째 주장: 국내 절차 위반. 협약 제27조는 당사국이 조약 불이행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국내법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고 한다. 조약 체결권한에 관한 국내법 위반은 제46조가 따로 규율하는데, 위반이 명백하고 근본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칙에 관한 것이 아니면 동의를 무효로 하는 근거로 원용할 수 없다(제1항). ‘명백한’ 위반이란 통상의 관행에 따라 선의로 행동하는 국가에게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를 말한다(제2항). ICJ는 카메룬·나이지리아 사건(2002)에서 국가원수가 서명한 마루아 선언에 대해 국내 비준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한 무효 주장을 배척하면서, 국가원수의 권한 제한은 제46조 제2항의 의미에서 명백하지 않다고 하였고, 국가가 다른 나라의 입법·헌법 동향을 계속 파악할 일반적 의무는 없다고 하였다. 사안에서 ‘모든 구속력 있는 합의는 평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칙은 정변 직후의 B국 내부 규칙으로, A국이 객관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B국 최고 지도자가 직접 서명했으므로 A국은 B국 내부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따라서 명백한 위반이 아니며, 제46조에 따른 무효 원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B국이 사정을 안 뒤에도 선언문을 이행하는 등 그 유효성을 묵인하였다면 제45조에 따라 무효 사유를 원용할 권리를 상실한다.

(4) 소결. B국 새 정부의 두 주장은 모두 타당하지 않으며, B국은 선언문에 구속된다.

결론. 공동선언문은 법적 의무를 창설하려는 의사가 문언에 드러난 국가 간 서면 합의이므로 조약이다. 정부 변경은 조약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 체결자의 권한은 제7조·제8조에 따라 인정되며, 국내 절차 위반은 명백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제46조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근거: 조약법협약 제2조 제1항 (a), 제7조, 제8조, 제27조, 제46조 · 에게해 대륙붕 사건(1978) · 카타르·바레인 사건(1994) · 카메룬·나이지리아 사건(2002)

2020 제1문

강제노동 조약의 무효와 관련 조약의 불이행

총 40점 · 소문 3개 · 강행규범, 가분성, 국가책임

제1문.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40점)

〈제시문〉

A국은 주민을 강제동원하는 일당 지배 사회이다. B국은 A국과 함께 C국 항구로 연결되는 철로를 양국에 공동으로 건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X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에는 철도부설을 위해 A국이 노동력을, B국이 기술과 재원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또한, 노동력에 대한 급여 지급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인력을 동원하는 방식과 절차는 전적으로 A국에 일임되었다. C국은 X조약에 따른 철로를 C국으로 연결하고 항구 이용을 보장하는 Y조약을 A국 및 B국과 체결하였다. 철로 부설에는 A국 교도소에 복역 중인 재소자와 직업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 무보수로 강제동원되었다. 이 사실이 언론에 폭로되어 양국 정부가 국제적으로 비판을 받게 되었다. 그 후 A국은 다당제로 전환되고, 새 정부가 들어섰다.

- 1) A국 신정부가 X조약상의 노동력 제공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와 근거를 제시하시오. (10점)
- 2) B국이 X조약 하에서 노동력 제공 관련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적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10점)
- 3) C국이 철로 연결을 거부하는 경우 국가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근거를 제시하시오. (20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강행규범 위반 조약의 무효(제53조)와 분리 금지(제44조 제5항), 그리고 별개 조약(Y조약) 불이행의 국가책임을 묻는다. **연결 개념** 강행규범의 목록, 제53조와 제64조의 차이, 조약법과 국가책임법의 구별. **함정** 강제노동 금지 ‘일반’이 강행규범인지는 논란이 있으므로, 사안의 무보수·청소년 동원이 노예제·예속에 준한다는 포섭이 필요하다. 3)에서 X조약이 무효이니 Y조약도 당연히 무효라고 쓰면 감점된다.

■ 답안 개요

소문	쟁점	근거 조문·판례	결론	분량
1)	정부 변경·강행규범 위반과 의무 해제	제26조, 제53조, 제62조, 제64조 · ILO 제29호·제105호 · 자유권규약 제8조	무보수 강제동원 예정 시 무효 → 해제	약 900자
2)	나머지 부분의 유효 주장 (가분성)	제44조 제3항·제5항, 제71조	제53조 무효는 분리 불가 → 부정	약 600자
3)	C국의 철로 연결 거부와 국가책임	국가책임초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12조, 제30조, 제31조, 제41조 · 조약법협약 제61조, 제62조, 제65조 · 가브치코보(1997)	Y조약은 유효 → 원칙적으로 책임 발생	약 1,200자

예시답안 — 2020 제1문

이 문제는 강제노동을 전제로 한 조약 조항이 강행규범에 위반되는지(1·2문), 그리고 관련된 다른 조약의 불이행이 국가책임을 낳는지(3문)를 묻는다. 조약의 효력은 조약법이, 불이행의 위법성과 그 결과는 국가책임법이 규율한다는 구분을 유지하며 검토한다.

1) A국 신정부가 노동력 제공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1) 정부 변경만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 정부가 바뀌어도 국가는 동일하므로 조약은 계속 구속력을 가진다(협약 제26조). 체제 전환은 협약 제62조의 사정변경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당제 전환은 B국과의 철도 건설이라는 조약의 본질적 기초가 아니며, 정치 체제의 변화로 의무의 범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2) 강행규범 위반에 따른 무효. 협약 제53조는 체결 당시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을 무효로 한다. 강행규범이란 국제공동체 전체가 수락하고 인정하는 규범으로서 이탈이 허용되지 않는 규범이다. 노예제와 예속(servitude)의 금지는 대표적인 강행규범으로 인정되며, 강제노동 금지도 강제노동에 관한 ILO 협약(1930년 제29호, 1957년 제105호)과 자유권규약 제8조에 규정된 보편적 규범이다. 다만 법원의 유죄판결에 따른 노역처럼 일정한 예외가 인정되는 강제노동 일반까지 모두 강행규범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안의 X조약은 급여 지급 없이 A국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동원 방식을 전적으로 A국에 맡긴다. 주민을 강제동원하는 일당 지배 체제라는 사정을 함께 보면, 이 조항은 무보수 강제동원을 예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실제로 재소자뿐 아니라 직업학교 청소년까지 무보수로 동원되었다. 재판에 따른 형벌 노역의 범위를 넘어 청소년을 대가 없이 국가 사업에 동원하는 것은 예속에 해당하는 관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노동력 제공 조항은 강행규범과 충돌하며, X조약은 제53조에 따라 체결 시부터 무효이다. A국 신정부는 노동력 제공 의무에서 벗어난다.

(3) 다른 해석. 조항이 ‘노동력 제공’만 정했을 뿐 강제동원은 A국의 이행 방식이었다고 보면 조약은 유효하고, A국은 적법한 방식(자발적 고용, 정당한 임금)으로 이행하거나 B국과 합의하여 개정(제39조)·종료(제54조)할 수 있을 뿐이다. 강행규범이 체결 후 성립했다면 제64조에 따라 그때부터 종료한다.

2) B국이 나머지 부분의 적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협약 제44조는 조약 일부만 무효로 하는 가분성을 일정 요건 아래 인정한다(제3항). 그러나 제44조 제5항은 제51조(국가 대표에 대한 강박), 제52조(무력에 의한 강박), 제53조(강행규범 위반)의 경우 조약 규정의 분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X조약이 제53조로 무효라면 노동력 조항만 떼어 내고 기

술·재원 제공이나 공동 건설 조항을 유효로 남길 수 없으며, 조약 전체가 무효이다. B국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무효의 결과로 제71조 제1항은 당사국에게 강행규범에 저촉되는 규정에 의거하여 행한 행위의 결과를 가 능한 한 제거하고 상호관계를 강행규범에 일치시키도록 요구한다. B국은 오히려 강제노동의 결과를 제거 하는 데 협력할 의무를 진다.

반면 강행규범이 체결 후 새로 성립하여 제64조로 종료하는 경우에는 제44조 제3항의 요건(분리 가능성, 해당 조항이 동의를 본질적 기초가 아닐 것, 나머지 이행이 부당하지 않을 것)을 충족하면 나머지 부분이 존속할 수 있다. 사안의 노동력 제공은 철도 건설의 핵심 반대급부이므로 이 요건도 충족하기 어렵다.

3) C국이 철로 연결을 거부하는 경우 국가책임 발생 여부

(1) 국가책임의 성립 요건. 국가책임초안 제1조에 따라 국가의 모든 국제위법행위는 국가책임을 수반하 며, 제2조는 그 요소로 ① 국제법상 그 국가에 귀속되는 작위 또는 부작위가 ② 국제의무 위반을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제12조에 따르면 국가의 행위가 의무가 요구하는 바와 합치하지 않으면 그 의무의 연원과 성격에 관계없이 위반이다.

(2) Y조약의 효력. Y조약은 철로를 C국으로 연결하고 항구 이용을 보장하는 별개의 조약이다. 그 대상은 적법하므로 X조약이 무효라고 해서 Y조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C국 정부의 거부는 국가기관 의 행위로 C국에 귀속된다(제4조). 따라서 Y조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연결 거부는 원칙적으로 조약 위반으로서 국가책임을 발생시킨다. ICJ는 가브치코보·나기마로스 사건(1997)에서 조약의 존속 여부는 조약법, 조약 위반에 따른 책임은 국가책임법이 판단한다고 하였다.

(3) C국이 원용할 수 있는 사유. 첫째, 조약법상 사유이다. X조약의 무효로 철로 건설이 중단되어 연결할 대상 자체가 사라졌다면 Y조약은 이행불능(제61조)이나 근본적 사정변경(제62조)을 이유로 종료·정지를 주장할 여지가 있다. 이때에는 제65조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둘째, 국가책임법상 사유이다.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으로 창출된 상황을 유지하는 데 원조·지원하지 않을 의무(제41조 제2항)를 원용할 수 있지만, 신정부 출범 후 강제동원이 중단되었다면 이미 건설된 철로를 연결하는 것은 위법한 상황의 ‘유지’에 대한 지원으로 보기 어렵다. 셋째, A·B국의 Y조약 위반이 없으므로 대응조치(제49조)나 중대한 위반을 이유로 한 종료(제60조)도 원용할 수 없다.

(4) 결과.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면 C국은 위법행위를 중지하고(제30조) 손해를 완전히 배상할 의무(제 31조)를 진다.

결론. 노동력 조항이 무보수 강제동원을 예정한 것이라면 X조약은 강행규범 위반으로 전부 무효이고(제 53조, 제44조 제5항), A국은 의무에서 벗어나며 B국은 나머지 부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반면 Y조 약은 별개의 유효한 조약이므로, 조약법상 종료·정지 사유를 정식 절차로 원용하지 않은 채 철로 연결을 거부하면 C국은 국가책임을 진다.

근거: 조약법협약 제26조, 제44조 제5항, 제53조, 제64조, 제71조 · 국가책임초안 제1조, 제2조, 제12조, 제30조, 제31조, 제41조 · 가브치코보·나기마로스 사건(1997)

2020 제2문

인권조약 가입 시 해석선언과 조약 관계

총 40점 · 소문 2개 · 유보의 정의·허용성·효과

제2문.

다음 제시문을 읽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근거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총 40점)

〈제시문〉

A, B, C국은 보편적 인권의 보호 및 보장을 보다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적 인권조약을 체결하였다. 동 인권조약 체결 당시 이에 참여하지 않았던 D국은 조약이 발효한 후 가입 의사를 표명하였다. 2018년 5월 25일 D국은 가입의정서를 기탁하면서, 자국의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여 동 조약 제13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가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해석선언을 하였다. 이러한 해석선언에 대하여 2019년 8월 24일 현재 A국은 아무런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고, B국은 D국이 가입의정서를 기탁한 직후 이의를 제기하였다. 한편 C국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제13조에 대한 해석선언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D국과는 당사국 관계를 설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A, B, C, D국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당사국이다.

※ 해당 지역적 인권조약에는 유보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

1) D국이 행한 해석선언의 법적 의미를 설명하고, 이러한 해석선언의 허용 가능성에 대하여 논하시오. (20점)

2) A, B, C, D국의 조약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해석선언을 유보로 성질 결정한 뒤 허용성(제19조 (c))과 당사국 간 관계(제20조, 제21조)를 정확히 구성하는지 본다. **연결 개념** 위장된 유보, 양립성 기준, 묵시적 수락의 12개월, 단순 이의와 조약 관계 거부 이의. **합정** 날짜(2018. 5. 25. → 2019. 8. 24.)는 제20조 제5항의 12개월 경과를 확인하라는 신호이다. 제20조 제2항(한정된 교섭국)을 검토하지 않거나, A·B·C국 상호 관계(제21조 제2항)를 빠뜨리기 쉽다.

■ 답안 개요

소문	쟁점	근거 조문·판례	결론	분량
1)	해석선언의 성질과 허용성	제2조 제1항 (d), 제19조 (c) · 제노사이드협약 유보(1951) · 일반논평 제24호 · 벨릴로스(1988)	실질은 유보, 대상·목적과 양립 불가 가능성 큼	약 1,300자
2)	A·B·C·D국의 조약 관계	제20조 제2항·제4항·제5항, 제21조 제1항~제3항	A-D 수정 적용, B-D 제13조 일부 제외, C-D 관계 없음	약 1,400자

예시답안 — 2020 제2문

D국은 가입하면서 ‘해석선언’이라는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 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겠다고 밝혔다. 이 선언의 성격이 유보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허용 여부와 당사국 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1) 해석선언의 법적 의미와 허용 가능성

(1) 해석선언과 유보의 구별. 협약 제2조 제1항 (d)는 유보를 “그 문구 또는 명칭에 관계없이” 국가가 서명·비준·수락·승인·가입 시 조약의 일부 규정을 자국에 적용함에 있어 그 법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변경하려고 의도하는 일방적 성명으로 정의한다. 반면 해석선언은 조약이나 특정 규정의 의미·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일방적 성명으로, 법적 효과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다. ILC의 ‘조약 유보에 관한 실행지침’(2011)도 같은 구분을 따르며, 성명의 성격은 명칭이 아니라 그 성명이 의도하는 법적 효과로 판단한다고 한다.

(2) D국 선언의 성격. D국은 “자국의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여” 제13조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선언하였다. 이는 조약 문언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자국에 대해서는 조약상 보장 수준을 낮추겠다는 것이므로, 제13조의 법적 효과를 변경하려는 의도가 있다. 따라서 명칭과 달리 유보(이른바 위장된 유보)로 다루어야 한다. 유럽인권재판소도 벨릴로스 사건(1988)에서 스위스의 해석선언을 실질적 유보로 보고 그 유효성을 심사하였다.

(3) 허용 가능성. 협약 제19조는 ① 조약이 유보를 금지하는 경우, ② 특정 유보만 허용하는 경우, ③ 유보가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경우에 유보를 할 수 없다고 한다. 이 인권조약에는 유보 규정이 없으므로 ③의 양립성 기준이 적용된다. 이 기준은 ICJ의 제노사이드협약 유보 권고적 의견(1951)에서 비롯되었다.

인권 보호와 보장의 ‘확대·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조약에서 표현의 자유는 핵심 권리이다. 그런데 D국의 선언은 제한의 범위나 기준을 특정하지 않고 ‘정치적 상황’이라는 막연한 사유로 권리를 제한하겠다는 것이어서, 다른 당사국이 그 효과를 가늠할 수 없다. 자유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24호(1994)는 인권조약에서 모호하고 일반적인 유보는 조약 목적과 양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D국의 유보는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허용되지 않는 유보의 효과. 협약은 이를 명시하지 않는다. 동의주의에 따르면 무효인 유보를 한 국가는 당사국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인권조약 실행(일반논평 제24호, 벨릴로스 사건)과 ILC 실행지침은 무효인 유보를 분리하여 유보국이 유보 없이 조약에 구속된다고 추정하되, 유보국이 반대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2) A, B, C, D국의 조약 관계

협약 제20조 제2항은 교섭국 수가 한정되어 있고 조약 전체의 적용이 각 당사국 동의의 본질적 조건인 경우 모든 당사국의 수락을 요구한다. 이 조약은 3개국이 체결한 지역 조약이지만, 인권조약은 상호주의적 교환이 아니라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객관적 성격을 가지므로 ‘전체 적용이 동의의 본질적 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일반 규칙인 제20조 제4항과 제5항이 적용된다. 아래는 D국의 선언이 유보로서 유효하다고 전제하고 정리한다.

(1) A국과 D국. 제20조 제5항에 따르면 유보를 통보받은 후 12개월 또는 기속적 동의를 표시한 날 중 늦은 날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국가는 유보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2018년 5월 25일 가입 후 2019년 8월 24일까지 A국은 아무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통보가 지체 없이 이루어졌다고 전제) 묵시적으로 수락한 것이 된다. 제20조 제4항 (a)에 따라 A국과 D국 사이에 조약이 발효하며,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제13조는 유보의 범위에서 변경되어 적용된다.

(2) D국의 가입 효력. 제20조 제4항 (c)에 따르면 유보를 포함한 기속적 동의는 적어도 하나의 다른 계약국이 유보를 수락하는 즉시 효력을 가진다. A국의 묵시적 수락으로 D국은 당사국이 된다.

(3) B국과 D국. B국은 이의만 제기하였을 뿐 조약 관계를 배제한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제20조 제4항 (b)에 따라 단순 이의는 조약 발효를 막지 않으며, 제21조 제3항에 따라 유보와 관련된 규정은 유보의 범위에서 두 나라 사이에 적용되지 않는다. 즉 제13조 중 D국이 제한하려는 부분은 B국과 D국 사이에 적용되지 않고 나머지는 적용된다.

(4) C국과 D국. C국은 이의를 제기하면서 D국과 당사국 관계를 설정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였다. 제20조 제4항 (b) 단서에 따라 C국과 D국 사이에는 조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5) A, B, C국 상호 간. 제21조 제2항에 따라 유보는 다른 당사국 상호 간의 관계에서 조약 규정을 변경하지 않으므로, 세 나라 사이에서는 원래 조약이 그대로 적용된다.

(6) 유보가 무효인 경우. 1)에서 본 것처럼 유보가 조약 목적과 양립하지 않아 무효라면, A국의 침묵은 무효인 유보를 유효로 만들지 못한다. 분리설에 따르면 D국은 유보 없이 조약 전체에 구속되며, 그 경우 A, B국과 D국 사이에는 제13조를 포함한 조약 전체가 적용된다.

결론. D국의 선언은 명칭과 달리 제13조의 법적 효과를 변경하려는 유보이며, 범위가 막연하고 핵심 권리를 제한하므로 조약 목적과 양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유효하다고 볼 경우 A국과는 수정된 조약 관계, B국과는 제13조 일부가 제외된 조약 관계가 성립하고, C국과는 조약 관계가 없으며, A·B·C국 상호 간에는 원래의 조약이 적용된다.

근거: 조약법협약 제2조 제1항 (d), 제19조~제21조 · 제노사이드협약 유보 권고적 의견(1951) · 자유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24호(1994) · 벨릴로스 사건(유럽인권재판소, 1988) · ILC 조약 유보에 관한 실행지침(2011)

2022 제3문

대기환경협약의 무효 주장과 중대한 위반

총 30점 · 소문 2개 · 제46조, 제60조, 제18조

제3문.

A국과 B국은 양국 영역 내 대기오염도가 높아지자 양국 간 환경부장관 회의를 통해 대기환경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대기환경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이 협약문에 따르면, 양국은 국경선 20 km 지역 내 일정 규모의 대기오염시설 건설을 허가할 경우 타 당사국에게 이를 통지하고 허가 조건에 대해 상호 협의해야 한다. 이 협약이 체결될 경우 일반적으로 양국 국민의 재산권에 제한이 가해지며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수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B국 ‘예산처리재정법’(이하 ‘법률’)에 따르면, 국민의 재산권에 제한을 가하고 국가 재정에 부담을 수반하는 협약 체결 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B국 정부는 별도의 비준 동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협약에 서명하였다. A국은 협약 서명 후 발효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B국과의 국경선 인근 10 km 지역 내 대형 제철공장을 건설할 것을 허가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B국과의 협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단, A국과 B국은 모두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회원국이다)

(총 30점)

- 1) 협약 발효 후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로 취임한 B국 대통령은 A국을 상대로, 법률에 규정된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생략한 것은 조약체결권에 관한 국내법 규정의 위반이므로 협약이 무효임을 주장하였다. 이 주장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시오. (10점)
- 2) 이러한 무효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B국 대통령은 A국이 대형 제철공장 건설 허가 시 B국과 협의하지 않은 것은 협약의 중대한 위반으로서 조약의 종료사유임을 주장하였다. 이 주장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시오. (20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국내 비준동의 절차 위반이 무효 사유가 되는지(제46조)와, 발효 전 행위를 중대한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제60조, 제28조, 제18조)를 묻는다. **연결 개념** 명백성 요건, 조약 불소급, 발효 전 서명국의 의무, 절차적 의무의 독자성. **함정** ‘발효를 3개월 앞둔 시점’이라는 시간 정보를 놓치면 곧바로 제60조를 적용하는 오답이 된다. 출제자는 이 정보로 제18조를 끌어내도록 설계했다.

■ 답안 개요

소문	쟁점	근거 조문·판례	결론	분량
1)	비준동의 생략과 무효 주장	제26조, 제27조, 제45조, 제46조 · 카메룬·나이지리아(2002)	명백한 위반 아님 → 부당	약 700자
2)	발효 전 협의 불이행과 종료 주장	제18조, 제24조, 제28조, 제60조 제1항·제3항, 제65조 · 가브치코보(1997) · 펄프공장(2010)	발효 전이라 위반 아님 → 부당(제18조 책임 문제)	약 1,400자

예시답안 — 2022 제3문

B국 대통령은 협약의 무효(국내 비준동의 절차 위반)와 종료(중대한 위반)를 차례로 주장한다. 무효는 동의 과정의 흠을, 종료는 유효한 조약의 위반을 전제로 하므로 요건이 다르다.

1) 국내법 위반을 이유로 한 무효 주장

(1) 원칙. 협약 제27조는 조약 불이행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국내법을 원용할 수 없다고 하며, 그 예외로 제46조를 둔다.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조약 체결권한에 관한 국내법 규정 위반은 그 위반이 명백하고 근본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칙에 관한 것이 아니면 동의를 무효로 하는 근거로 원용할 수 없다. 제2항은 통상의 관행에 따라 선의로 행동하는 국가에게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를 ‘명백한’ 위반이라 한다.

(2) 근본적 중요성. B국의 비준동의의 요건은 헌법이 아니라 법률(‘예산처리재정법’)에 있고, 재정 부담이 ‘수반될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해석의 여지가 크다.

(3) 명백성. 결정적인 것은 명백성이다. A국은 B국 정부가 서명으로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였다는 사실을 신뢰하였을 뿐이며, 이 협약이 B국 법률상 동의의 대상인지까지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 ICJ는 카메룬·나이지리아 사건(2002)에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입법·헌법 동향을 계속 파악할 일반적 법적 의무는 없다고 하고 국내 비준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한 무효 주장을 배척하였다. 사안에서도 위반은 A국에게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았다.

(4) 그 밖의 사정. 정부 교체는 조약상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제26조), 발효 후 B국이 협약을 이행해 왔다면 제45조에 따라 무효 원용권을 잃는다. 따라서 무효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

2) 중대한 위반을 이유로 한 종료 주장

(1) 제60조의 요건. 협약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양자조약의 일방 당사국이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 타방 당사국은 그 위반을 조약의 종료 또는 전부·일부의 시행정지 사유로 원용할 수 있다. 제3항은 중대한 위반을 ① 협약이 허용하지 않는 조약의 이행 거부 또는 ② 조약의 대상과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규정의 위반으로 정의한다.

(2) 위반 시점의 문제. A국의 허가는 협약 서명 후 발효 3개월 전에 이루어졌다. 조약은 발효 후에만 당사국을 구속하고(제24조, 제26조), 제28조에 따라 발효 전에 발생한 행위나 사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발효 전의 허가 시 협의하지 않은 것은 협약의 ‘위반’이 아니며, 제60조의 중대한 위반이 될 수 없다. ICJ도 가브치코보·나기마로스 사건(1997)에서 헝가리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위반을 근거로 조약 종료를 통고한 것은 성급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3) 발효 전 의무: 제18조. 다만 서명국은 발효 전이라도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삼갈 의무를 진다(제18조). 국경 10 km 이내 대형 제철공장을 협의 없이 허가한 것이 이 의무를 위반하는지가 문제이다. 제18조는 조약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수준의 행위를 금지하므로, 대형 오염원 하나의 허가가 협약 목적 전체를 좌절시키는지는 의문이다. 설령 제18조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은 국가책임의 문제일 뿐, 발효된 조약의 중대한 위반을 요건으로 하는 제60조의 종료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4) 발효 후 위반이 되는 경우. 협약은 허가 '시점'의 통지·협의를 요구하므로 이미 허가된 시설에는 소급하지 않는다. 다만 발효 후 A국이 증설·변경을 허가하면서 협의하지 않으면 위반이 된다. 이 경우 통지·협의를 규정이 '필수적 규정'인지가 문제인데, 이 협약은 국경 인근 오염시설에 대한 통지·협의를 핵심 수단으로 하므로 그 위반은 중대한 위반이 될 수 있다. ICJ는 펄프공장 사건(2010)에서 사전 통지·협의를 절차적 의무 위반을 실체적 의무 위반과 별개로 인정하였는데, 절차적 의무가 조약 체제에서 독자적 중요성을 가진다는 점을 보여 준다.

(5) 절차. 중대한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B국은 일방적으로 조약을 종료시킬 수 없고, 제65조에 따라 상대국에 서면으로 통고하고 원칙적으로 3개월의 기간을 두어야 하며, 이의가 있으면 UN헌장 제33조의 수단으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결론. 국회 비준동의 절차 생략은 A국에게 명백한 위반이 아니므로 제46조에 따른 무효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 또한 A국의 허가는 발효 전에 이루어져 협약 위반이 아니므로 제60조의 중대한 위반을 이유로 한 종료 주장도 정당하지 않다. B국은 제18조 위반에 따른 국가책임을 다투거나, 발효 후 협의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근거: 조약법협약 제18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46조, 제60조, 제65조 · 카메룬·나이지리아 사건(2002) · 가브리코보·나기마로스 사건(1997) · 펄프공장 사건(2010)

2025 제2문

자결권과 대세적 의무, 점령지 임대조약

총 30점 · 소문 2개 · 자결권, 대세적 의무, 제53조

제2문.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글〉

A국은 무력행사를 통해 점령 중인 B국 X지역에 분리 장벽을 건설하였다. UN 총회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장벽 건설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였다. ICJ는 A국의 B국 X지역에 장벽 건설이 해당 지역 주민의 이동의 자유, 생계, 교육 및 보건 서비스 접근권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며, 국제인도법 및 대세적 의무를 창설하는 강행규범에 해당하는 자결권을 위반한다는 권고적 의견을 부여하였다. 이후 A국은 장벽철거 없이 X지역을 C국에 군사적 목적으로 임대하는 조약을 체결하였다.

- 1) 자결권 원칙은 국제사회에서 널리 인정되는 기본 원칙이나, 구체적 적용에 있어 다양한 법적·정치적 쟁점을 수반한다. 자결권 원칙의 국제법적 의의와 그 행사의 한계를 논하시오. (15점)
- 2) 본 사건에서 논의된 대세적 의무의 개념과 법적 성격을 설명하고, A국과 C국 사이 체결된 임대조약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3조에 따라 무효인지를 논하시오. (15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장벽 권고적 의견(2004)을 모델로 자결권의 의의와 한계, 대세적 의무와 강행규범의 관계, 강행규범 위반 조약의 무효를 묻는다. **연결 개념** 결의 1514·2625, 영토보전, 바르셀로나 트랙션, 국가책임초안 제41조·제48조, 제44조 제5항·제71조. **합정** 대세적 의무와 강행규범을 같은 개념으로 쓰면 안 된다. 임대조약이 ‘왜’ 강행규범과 충돌하는지(점령지 처분 불가, 자결 침해 상황의 영속화)를 구체적으로 포섭해야 한다.

■ 답안 개요

소문	쟁점	근거 조문·판례	결론	분량
1)	자결권의 의의와 한계	헌장 제1조 제2항, 제55조 · 공통 제1조 · 결의 1514, 2625 · 동티모르(1995), 장벽(2004), 차고스(2019), 코소보(2010)	강행규범·대세적 의무이나 외적 자결은 식민·점령에 한정	약 1,000자
2)	대세적 의무의 개념·성격과 임대조약의 효력	바르셀로나 트랙션(1970) · 국가책임초안 제41조, 제48조 · 조약법협약 제34조, 제44조 제5항, 제53조, 제66조, 제71조	임대조약은 제53조로 전부 무효	약 1,100자

예시답안 — 2025 제2문

이 문제는 장벽 권고적 의견의 구조를 빌려 자결권의 법적 지위와 한계(1문), 대세적 의무와 강행규범의 관계 및 그 위반 조약의 효력(2문)을 묻는다.

1) 자결권 원칙의 국제법적 의의와 행사의 한계

(1) 근거와 발전. UN헌장 제1조 제2항과 제55조는 인민의 동권과 자결 원칙을 규정하고, 총회 결의 1514(1960)와 2625(1970), 자유권·사회권규약 공통 제1조가 이를 구체화하였다.

ICJ는 동티모르 사건(1995)에서 자결권의 대세적 성격을, 장벽 권고적 의견(2004)에서 점령국의 자결권 존중 의무를, 차고스 권고적 의견(2019)에서 1960년대에 이미 관습법상 권리로 확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오늘날 자결권은 강행규범의 대표적 예로 거론된다.

(2) 내용. 자결권은 인민이 정치적 지위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발전을 추구할 권리로, 외적 자결(독립 등)과 내적 자결(기존 국가 안에서의 대표·자치)로 나뉜다.

(3) 행사의 한계. 첫째, 영토보전 원칙과의 조화이다. 결의 2625는 자결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전체 인민을 대표하는 정부를 가진 국가의 영토보전을 해치는 행동을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따라서 식민지배·외국 점령 이외의 상황에서 외적 자결, 특히 일방적 분리독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른바 구체적 분리독립론은 확립된 관습이 아니며, ICJ도 코소보 권고적 의견(2010)에서 이 문제를 판단하지 않았다.

둘째, '인민'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소수민족 일반이 곧바로 외적 자결의 주체가 되지는 않는다. 셋째, 독립 시에는 현상유지(uti possidetis) 원칙에 따라 기존 행정경계가 국경이 된다. 넷째, 제3국은 자결권을 명분으로 무력을 행사하거나 내정에 간섭할 수 없다.

사안의 X지역 주민은 무력으로 점령된 지역의 인민이므로, 점령의 종식과 자유로운 지위 결정을 요구하는 외적 자결권의 전형적 주체이다.

2) 대세적 의무의 개념·성격과 임대조약의 효력

(1) 대세적 의무의 개념. ICJ는 바르셀로나 트랙션 사건(1970)에서 국가가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하여 지는 의무와 다른 국가에 대하여 지는 의무를 구별하고, 앞의 것은 그 권리의 중요성 때문에 모든 국가가 그 보호에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하였다. 그 예로 침략행위·제노사이드의 불법화, 노예제와 인종차별로부터의 보호를 들었다. 이후 자결권(동티모르, 장벽, 차고스)과 국제인도법의 기본 규칙(장벽)도 대세적 의무로 인정되었다.

(2) 법적 성격. 첫째, 대세적 의무는 의무의 '상대방'에 관한 개념으로, 위반 시 피해국 아닌 국가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국가책임초안 제48조 제1항 (b)). 둘째, 규범의 '위계'(이탈 금지, 저축 조약의 무효)에 관한 강행규범과 개념이 다르며, 강행규범상 의무는 대부분 대세적이지만 그 역은 반드시 성립하지 않는다. 셋째, 모든 국가에 일정한 의무를 발생시킨다. 장벽 권고적 의견은 모든 국가가 장벽 건설로 생긴 위법 상황을 승인하지 않고 그 유지에 원조·지원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고 하였고, 국가책임초안 제41조 제2항도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에 대해 같은 의무를 규정한다.

(3) 임대조약의 제53조 무효 여부. 제53조는 체결 당시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을 무효로 한다. 사안에서 ICJ는 장벽 건설이 강행규범인 자결권을 위반한다고 판단하였다. A국은 그 위법 상황을 시정하지 않은 채 X지역을 C국에 군사적 목적으로 임대하였다.

첫째, 점령국은 점령지에 대한 주권이 없어 이를 처분할 수 없으며, 임대는 무력에 의한 영토 취득 금지와 충돌한다. 둘째, 군사 목적 임대는 점령과 분리를 장기화하여 주민의 자유로운 지위 결정을 가로막으

므로, 조약의 대상 자체가 자결권 침해 상황의 유지·강화이다. 셋째, 임대조약은 C국이 지는 불승인·불원조 의무에 정면으로 반한다.

따라서 임대조약은 체결 당시 강행규범(자결권)과 충돌하므로 제53조에 따라 처음부터 무효이다. 제44조 제5항에 따라 일부 조항만 분리하여 존속시킬 수 없고, 제71조 제1항에 따라 당사국은 그 조약에 따른 행위의 결과를 가능한 한 제거해야 한다.

제53조에 관한 분쟁은 제66조 (a)에 따라 ICJ에 회부할 수 있다. B국은 이 조약에 구속되지 않으며(제34조), 다른 국가들도 대세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결론. 자결권은 헌장·인권규약·관습법에 근거한 강행규범이자 대세적 의무이지만, 영토보전·국경 안정성과 조화되어야 하므로 외적 자결은 식민·점령 상황 등에 한정된다. 점령지를 군사 목적으로 임대하는 A·C국 간 조약은 자결권 침해 상황을 영속화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므로 제53조에 따라 전부 무효이다.

근거: UN헌장 제1조 제2항, 제55조 · 자유권·사회권규약 공통 제1조 · 총회 결의 1514(1960), 2625(1970) · 조약법협약 제34조, 제44조 제5항, 제53조, 제66조, 제71조 · 국가책임초안 제41조, 제48조 · 바르셀로나 트랙션(1970), 동티모르(1995), 장벽(2004), 차고스(2019), 코소보(2010) 권고적 의견·판결

제2장

국가 · 영토 · 관할권 · 국가면제

국경과 국가승계 · 관할권의 근거 · 제한적 국가면제 · 강행규범과 면제 | 기출 4문항: 2017-1, 2019-2, 2023-3, 2024-1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

2-1 핵심 개념	30
2-2 기출 풀이	33
2017 제1문 국영기업과 대사를 상대로 한 계약 소송	33
2019 제2문 외국 비밀경찰관의 고문에 대한 형사관할권	36
2023 제3문 고문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과 국가면제	38
2024 제1문 탈식민지 국경분쟁과 연방 해체의 승계	40

2-1 핵심 개념

국가는 국제법의 1차적 주체이다. 이 장은 국가의 공간적 범위(영토·국경·승계), 국가 권한의 범위(관할권), 그리고 다른 국가 법원 앞에서의 국가의 지위(국가면제)를 다룬다. 외교관의 면제는 제3장에서 따로 다루지만, 2017-1처럼 국가면제와 함께 출제되기도 한다.

현상유지(uti possidetis juris) 원칙

독립 시점의 식민지 행정경계를 신생국 사이의 국제 국경으로 인정하는 원칙이다. 중남미에서 형성되어 아프리카로 확대되었고, ICJ는 부르키나파소/말리 국경분쟁 사건(1986)에서 이를 탈식민지화와 결합된 일반원칙이라고 하였다. 같은 판결은 권원과 실효적 지배의 관계를 정리하였다. 행위가 권원과 일치하면 실효적 지배는 이를 확인할 뿐이고, 권원 보유국이 아닌 국가의 지배보다 권원이 우선하며, 권원이 불분명할 때 실효적 지배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구유고 해체 시 바덴테르 중재위원회 의견 제3호(1992)는 연방 내부 경계에도 이 원칙을 적용하였다.

대립 구도

법적 권원(행정경계) ↔ 실효적 지배(effectivités) · 국경 안정성 ↔ 자결권

쓰이는 기출 2024-1 (1)(2), 2025-2

답안 속 문장

“현상유지 원칙에 따라 독립 당시의 행정경계가 국경이 되며, 독립 후 일방의 실효적 지배는 권원에 반하는 한 국경을 바꾸지 못한다.”

국가승계와 국경

국가승계는 한 국가가 영역의 국제관계에 대한 책임을 다른 국가로 대체하는 것이다. 1978년 「조약에 관한 국가승계 협약」 제11조는 국가승계가 그 자체로 조약으로 확정된 국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고, 제34조는 국가의 일부가 분리되어 국가를 형성하면(선행국 존속 여부와 무관) 기존 조약이 승계국에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한다. 조약법협약 제62조 제2항 (a)도 국경 조약에 대한 사정변경 원용을 금지한다. 1983년 국가재산·부채 승계 협약은 국가 해체의 경우 합의를 우선하고, 합의가 없으면 부동산은 소재지 승계국으로, 그 밖의 재산과 부채는 형평한 비율로 배분한다.

대립 구도

국경·영역 제도(계속성) ↔ 일반 조약(유형별 규칙)

쓰이는 기출 2024-1 (2)(3)

답안 속 문장

“국가승계는 그 자체로 조약에 의해 확정된 국경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승계국은 선행국의 국경을 그대로 승계한다(1978년 협약 제11조).”

국가관할권의 종류와 근거

관할권은 입법·사법·집행관할권으로 나뉘며, 집행관할권은 엄격히 영토적이다. 로터스호 사건(PCIJ, 1927)은 국가 독립에 대한 제한은 추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역외 입법관할권에 넓은 재량을 인정하였다. 오늘날 인정되는 연결점은 속지주의(주관적·객관적), 속인주의, 수동적 속인주의, 보호주의, 보편주의이다. 보편

관할권은 해적, 제노사이드,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고문 등에 인정되며, 고문방지협약 제5조 제2항과 제7조는 혐의자 소재국에 ‘인도 아니면 소추’ 의무를 부과한다(벨기에/세네갈 사건, 2012).

대립 구도

입법관할(넓은 재량) ↔ 집행관할(영토 한정) · 속지주의 ↔ 보편주의

쓰이는 기출 2019-2, 2018-3, 2024-2

답안 속 문장

“혐의자가 자국 영역에 있는 이상, 고문방지협약 당사국은 범죄지나 국적과 무관하게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도하지 않으면 소추에 회부할 의무를 진다.”

국가면제 — 절대적 면제에서 제한적 면제로

국가는 주권평등에 따라 다른 국가 법원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 오늘날 관행은 주권적 행위에만 면제를 인정하는 **제한적 면제론**이다. UN 국가면제협약(2004)은 상업적 거래(제10조), 고용계약(제11조), 인적 손해와 재산 손해(제12조) 등의 예외를 둔다. 상업적 거래 여부는 계약의 **성질**을 우선 고려하고, 합의나 법정지 관행이 있으면 **목적**도 고려한다(제2조 제2항). 국가기관·기구 주권적 권한을 행사하는 범위에서만 국가로 취급되며(제2조 제1항 (b)), 독립 법인격을 가진 국영기업의 소송은 국가 자체의 면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제10조 제3항). 재판권 면제와 강제집행 면제는 별개이다.

대립 구도

주권적 행위(acta jure imperii) ↔ 상업적 행위(acta jure gestionis) · 성질 기준 ↔ 목적 기준

쓰이는 기출 2017-1, 2022-2 (3), 2023-3

답안 속 문장

“군사 목적의 물품이라도 시장에서 누구나 거래할 수 있는 물품을 구매하는 계약은 그 성질상 상업적 거래이므로 국가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강행규범 위반과 국가면제

ICJ는 독일/이탈리아 관할권 면제 사건(2012)에서 국가면제 규칙은 절차적 성격을 가져 행위의 적법성에 관한 실체 규칙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하고, 강행규범 위반이나 다른 구제 수단의 부재를 이유로 면제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도 알바르사니 사건(2001)과 존스 사건(2014)에서 고문 피해자의 민사소송에 대한 면제 부여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반면 형사 절차에서는 영국 상원의 피노체트 사건(1999)처럼 고문을 공적 기능으로 보지 않아 전직 국가원수의 물적 면제를 부인한 예가 있다.

대립 구도

실체 규범(강행규범) ↔ 절차 규범(면제) · 민사(국가 자체의 면제) ↔ 형사(공무원의 물적 면제)

쓰이는 기출 2023-3, 2019-2

답안 속 문장

“면제를 인정하는 것은 고문 금지라는 실체 규범으로부터의 이탈이 아니라, 어느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절차적 결정일 뿐이다.”

영토 내 불법행위 예외

UN 국가면제협약 제12조는 사망·신체 상해 또는 유형 재산 손해에 대한 금전 배상 소송에서, 국가에 귀속되는 작위·부작위가 법정지국 영역에서 전부 또는 일부 발생하고 행위자가 그 당시 그 영역에 있었으면 면제를 원용할 수 없다고 한다. 행위의 주권적 성격과 무관하게 적용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ICJ는 2012년 판결에서 무력충돌 중 군대의 행위에는 관습법상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쓰이는 기출 2023-3(국외 고문 → 부적용), 2022-2 (3)(공항 폭행 → 적용 가능)

답안 속 문장

“고문이 법정지국 밖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영토적 연결을 요건으로 하는 불법행위 예외는 적용되지 않는다.”

2-2 기출 풀이

2017 제1문

국영기업과 대사를 상대로 한 계약 소송

총 40점 · 소문 2개 · 제한적 국가면제, 외교관의 민사재판권 면제

제1문.

A국의 국영기업 ‘갑’은 자국 정부의 사이버전 장비용으로 납품하기 위하여 B국의 ‘을’로부터 다량의 컴퓨터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B국 주재 A국 대사는 ‘갑’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였다. 그러나 ‘갑’은 ‘을’로부터 계약 내용에 따른 컴퓨터를 인도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을’은 계약위반을 이유로 자국의 국내법원에 ‘갑’과 ‘A국 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40점)

- 1) ‘을’이 ‘갑’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B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하시오. (20점)
- 2) ‘을’이 B국 주재 ‘A국 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B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하시오. (20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같은 거래에 관련된 두 피고에 대해 서로 다른 면제 법리(국가면제와 외교관 면제)를 구별하는지 본다. **연결 개념** 성질·목적 기준, 국가 기구의 범위, 외교관계협약 제31조의 세 예외, 면제 포기. **함정** ‘사이버전 장비용’이라는 목적에 끌려 주권적 행위로 단정하면 감점이다. 대사의 보증에 대해 제31조 제1항 (c)의 ‘상업적 활동’을 쉽게 인정하는 것도 흔한 오류이다.

■ 답안 개요

소문	쟁점	근거 조문·판례	결론	분량
1)	국영기업의 컴퓨터 구매와 국가면제	국가면제협약 제2조 제1항 (b)·(c), 제2항, 제10조 제1항·제3항 · 독일/이탈리아(2012)	성질상 상업 거래 → 관할권 행사 가능	약 1,300자
2)	대사의 보증과 외교관 면제	외교관계협약 제31조 제1항·제4항, 제32조, 제39조 제2항 · 국가면제협약 제2조 제1항 (c)	포기 없으면 관할권 행사 불가	약 1,300자

예시답안 — 2017 제1문

‘을’은 두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국영기업 ‘갑’에 대해서는 국가면제가, ‘A국 대사’에 대해서는 외교관의 면제가 문제된다. 두 면제는 근거와 범위가 다르므로 나누어 검토한다.

1) ‘갑’에 대한 소송과 B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1) 국가면제의 의의와 발전. 국가면제란 국가와 그 재산이 다른 국가 법원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 것으로, 주권평등에서 나온 관습국제법 원칙이다. ICJ는 독일/이탈리아 관할권 면제 사건(2012)에서 국가

면제가 관습법상 권리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과거에는 국가의 모든 행위에 면제를 인정하는 절대적 면제론이 지배하였으나, 국가가 상업 활동에 대거 참여하면서 주권적 행위(acta jure imperii)에만 면제를 인정하고 상업적·사법적 행위(acta jure gestionis)에는 면제를 부인하는 제한적 면제론이 일반화되었다. UN 국가면제협약(2004)도 이를 반영한다.

(2) ‘갑’이 면제의 주체인지. 협약 제2조 제1항 (b)는 ‘국가’에 국가의 기관뿐 아니라 국가의 주권적 권한을 행사할 자격이 있고 실제로 행사하는 범위에서 국가의 기관·기구(agency or instrumentalities)를 포함한다.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국영기업은 원칙적으로 국가와 구별되며, 주권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면제를 주장할 수 있다. ‘갑’이 컴퓨터를 구매하는 것은 주권적 권한의 행사가 아니라 일반 사인과 같은 지위에서 하는 거래이다.

(3) 상업적 거래인지: 성질 기준과 목적 기준. 협약 제2조 제1항 (c)는 상업적 거래에 물품 판매나 용역 공급을 위한 모든 상업적 계약 또는 거래를 포함하고, 제2항은 그 판단에서 계약의 성질을 우선 고려하되 당사자가 합의하였거나 법정지국 관행상 목적이 관련되는 경우 목적도 고려한다고 한다. 성질 기준에 따르면 컴퓨터 매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전형적 상업 거래이다. 목적 기준에 따르면 ‘사이버전 장비용’이라는 군사·안보 목적 때문에 주권적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다수 국가의 관행과 협약은 성질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다. 군대에 납품할 물품이라도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컴퓨터를 구매하는 계약은 상업적 성질을 잃지 않는다.

(4) 상업적 거래의 예외. 협약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가 외국의 자연인·법인과 상업적 거래를 하고 그 분쟁이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다른 국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그 국가는 면제를 원용할 수 없다. 또한 제10조 제3항은 독립된 법인격과 소송능력을 가진 국영기업이 상업적 거래에 관한 소송에 관련되더라도 국가 자체의 면제에는 영향이 없다고 한다. 즉 ‘갑’은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받고, A국은 그 뒤에 숨지 못하지만 A국이 직접 피고가 되는 것도 아니다.

(5) 소결. B국 법인 ‘을’과의 매매계약 대금 미지급은 상업적 거래에 관한 분쟁이고, B국 법원은 국제사법상 관할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B국 법원은 ‘갑’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강제집행은 별도의 집행면제 규칙에 따른다.

2) ‘A국 대사’에 대한 소송과 B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1) 외교관의 민사재판권 면제. 외교관계협약 제31조 제1항에 따라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며, 다음 세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행정재판권으로부터도 면제된다. ① 접수국 영역 안의 개인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소송(파견국을 대신하여 공관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제외), ② 외교관이 개인 자격으로 관련된 상속 소송, ③ 외교관이 공무 외로 접수국에서 수행하는 직업적 또는 상업적 활동에 관한 소송이다.

(2) 보증이 공적 행위인 경우. 대사가 A국을 대표하여 보증하였다면 그 보증은 A국의 행위이다. 대사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제31조 제1항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제된다. 이 경우 ‘을’은 A국을 상대로 보증 책임을 물어야 하며, A국에 대해서는 국가면제가 문제된다. 국가면제협약 제2조 제1항 (c)는 금융 거래에 관한 보증 의무와 그 밖의 상업적 성질의 계약을 모두 상업적 거래에 포함하므로, 매매계약의 이행 보증에 대해서는 A국이 면제를 원용하기 어렵다.

(3) 보증이 사적 행위인 경우. 대사가 개인 자격으로 보증했다고 보더라도, 제31조 제1항 (c)의 ‘직업적 또는 상업적 활동’은 계속적·영리적 활동을 뜻하며, 한 번의 보증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따라서 사적 보증이라도 면제가 유지된다.

(4) 면제의 포기과 다른 구제 수단. 면제는 파견국만 포기할 수 있고 포기는 명시적이어야 한다(제32조 제1항, 제2항). 또한 면제는 파견국의 재판권을 면제하지 않으므로(제31조 제4항) ‘을’은 A국 법원에 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적 보증이라면 이임 후 면제가 소멸한 뒤 B국에서 소송할 수도 있다(제 39조 제2항).

(5) 소결. A국이 면제를 명시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B국 법원은 재임 중인 A국 대사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결론. 국영기업 ‘갑’의 컴퓨터 구매는 목적이 군사적이더라도 성질상 상업적 거래이므로 B국 법원은 ‘갑’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A국 대사는 보증의 성격과 관계없이 외교관계협약 제31조에 따라 민사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므로, ‘을’은 A국의 면제 포기를 얻거나, A국 자체 또는 A국 법원을 통한 구제를 모색해야 한다.

근거: UN 국가면제협약(2004) 제2조, 제10조 · 외교관계협약 제31조, 제32조 · 독일/이탈리아 관할권 면제 사건(2012)

2019 제2문

외국 비밀경찰관의 고문에 대한 형사관할권

30점 · 단일 문항 · 관할권 이론, 보편관할권, 공무원 면제

제2문.

A국 국민인 甲은 평소 B국 정부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자주 비판을 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甲은 국내 여행 중 B국 정부가 파견한 비밀경찰에 납치당하여 B국으로 끌려가 심한 고문을 받았다. 그 후 甲은 석방되어 A국으로 귀국하였다. 몇 년 후 甲은 자신을 고문한 B국의 비밀경찰관 乙이 A국에 거주하는 것을 알고 A국의 수사기관에 乙을 고소하였고 乙은 위 고문행위와 관련하여 A국의 법원에 기소되었다. 乙은 관련 재판과정에서 A국 법원은 자신을 재판할 관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다. 국가가 국제법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한 이론과 A국이 위 사건에 대하여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를 각각 설명하시오.

(30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관할권 이론을 정리(전반부)한 뒤 사안에 여러 연결점을 중첩 적용(후반부)하는 능력을 본다. **연결 개념** 로터스 원칙, 속지·수동적 속인·보편주의, 고문방지협약 제5조·제7조, 물적 면제. **합정** ‘국내여행 중’ 납치되었다는 사실(속지주의 근거)을 놓치기 쉽다. 乙의 항변에는 면제 주장이 함축되어 있으므로 면제를 간단히라도 다루는 것이 좋다.

■ 답안 개요

부분	쟁점	근거 조문·판례	결론	분량
전반	관할권의 종류와 근거 이론	로터스호(1927) · 체포영장(2002) 개별의견	다섯 연결점 정리	약 900자
후반	A국의 형사관할권 근거와 면제 항변	고문방지협약 제5조 제1항 (c)·제2항, 제7조 · 벨기에/세네갈(2012) · 피노체트(1999)	속지·수동적 속인·보편주의로 관할권 인정, 면제 부정	약 1,200자

예시답안 — 2019 제2문

乙은 A국 법원의 관할권을 다투고 있다. 먼저 국가관할권의 근거에 관한 이론을 정리하고, 이를 사안에 적용한 뒤, 관할권 행사를 막을 수 있는 면제 문제를 함께 검토한다.

1) 국가관할권의 근거에 관한 이론

(1) 관할권의 종류. 국가관할권은 입법관할권(법을 제정하여 적용 대상을 정하는 권한), 사법관할권(법원이 재판하는 권한), 집행관할권(체포·압수 등 강제조치 권한)으로 나뉜다. 집행관할권은 엄격히 영토적이어서 다른 국가의 동의 없이는 그 영역에서 행사할 수 없다.

(2) 로터스 원칙.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로터스호 사건(1927)에서 국가 독립에 대한 제한은 추정되지 않으며, 국가는 금지 규칙이 없는 한 역외 행위에 대해서도 입법·사법관할권을 행사할 넓은 재량을

가진다고 하였다. 다만 오늘날에는 국가가 관할권 행사를 위해 국제법상 인정된 연결점을 제시해야 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3) 연결점의 원칙. ① 속지주의: 자국 영역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관할권으로, 범죄가 시작된 국가(주관적 속지주의)와 결과가 발생한 국가(객관적 속지주의) 모두에 인정된다. ② 속인주의(능동적 속인주의): 자국민이 국외에서 범한 범죄. ③ 수동적 속인주의: 자국민이 피해자인 국외 범죄. 과거에는 논란이 있었으나 테러·고문 등에 관한 조약에서 널리 채택되었다. ④ 보호주의: 국가 안보·통화 등 국가의 핵심 이익을 해치는 국외 범죄. ⑤ 보편주의: 해적, 제노사이드,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고문처럼 국제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해치는 범죄에 대해 범죄지·국적과 무관하게 인정되는 관할권이다. 체포영장 사건(2002)에서 일부 재판관(히긴스·코이만스·뷔르겐탈 공동 개별의견)은 피의자가 자국 영역에 없는 경우의 보편관할권도 금지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2) A국이 사건에 대해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1) 속지주의. 甲은 ‘국내여행 중’ A국 영역에서 B국 비밀경찰에 납치되었다. 납치는 A국 영역에서 시작되었으므로 납치·감금 범죄에 대해 A국은 주관적 속지주의에 따른 관할권을 가진다. 고문 자체는 B국에서 행해졌으나 납치와 고문이 하나의 계속된 범행이라면 그 일부가 A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도 근거가 된다. 또한 외국 공무원이 A국 영역에서 국가권력을 행사한 것은 A국 주권의 침해이기도 하다.

(2) 수동적 속인주의. 피해자 甲은 A국 국민이다. 고문방지협약(이하 ‘CAT’) 제5조 제1항 (c)는 피해자가 자국민이고 그 국가가 적절하다고 여기는 경우 관할권을 확립하도록 한다. A국이 이를 국내법에 규정하였다면 고문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보편주의. CAT 제5조 제2항은 혐의자가 자국 관할 영역에 있고 그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 관할권을 확립하도록 하며, 제7조는 이 경우 인도하지 않으면 소추를 위해 권한 있는 당국에 회부할 의무를 부과한다 (인도 아니면 소추). 乙은 A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A국이 CAT 당사국이라면 국적이나 범죄지와 무관하게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할 의무를 진다. ICJ는 벨기에/세네갈 사건(2012)에서 이 소추 의무가 인도 요청이 없더라도 존재한다고 하였다. A국이 CAT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고문 금지는 강행규범이며 고문에 대한 보편관할권은 관습법상 허용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4) 면제 항변의 검토. 乙이 B국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능적(물적) 면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남는다. 乙은 국가원수·외교장관 같은 고위직이 아니므로 체포영장 사건에서 인정된 인적 면제는 없다. 물적 면제에 대해서는, 영국 상원이 피노체트 사건(1999)에서 CAT가 고문을 ‘공무원의 행위’로 정의하면서 처벌 체계를 둔 이상 고문은 면제의 근거가 되는 공적 기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ILC도 외국 공무원의 형사관할권 면제 초안(2022년 1독 채택)에서 고문 등 국제법상 범죄에는 물적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었다. 따라서 乙의 면제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결론. 국가관할권은 속지·속인·수동적 속인·보호·보편주의를 근거로 하며, 집행관할권은 영토에 한정된다. A국은 납치가 시작된 영역국으로서 속지주의, 피해자의 국적국으로서 수동적 속인주의, 그리고 乙이 자국에 있다는 점에서 CAT상 보편관할권(인도 아니면 소추)을 근거로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乙의 관할권 부인 항변은 타당하지 않다.

근거: 로터스호 사건(PCIJ, 1927) · 체포영장 사건(2002) · 고문방지협약 제5조, 제7조 · 피노체트 사건(영국 상원, 1999) · 소추 또는 인도 의무 사건(벨기에/세네갈, 2012)

2023 제3문

고문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과 국가면제

40점 · 단일 문항 · 강행규범과 국가면제, 영토 내 불법행위 예외

제3문.

X국과 Y국의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A는 과거 X국에서 고문을 받았다. 그 후 A는 Y국에 거주하면서 과거의 고문에 대한 손해배상을 X국에 요구하는 소송을 Y국 법원에 제기하였다. Y국 「국가면제법」은 국내법원이 타국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주권면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고문과 같은 인적 손해의 경우 면제를 제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A는 고문금지규칙이 국제법상의 강행규범으로서 주권면제규칙에 우선하므로 X국의 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Y국의 항소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X국에 면제를 부여하였으며, 대법원도 상소를 각하하였다. 이 사안에서 A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시오. (단, Y국은 'UN 주권면제협약' 당사국이다)

(40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독일/이탈리아 사건(2012)의 '충돌 부존재' 논리를 정확히 서술하는지가 핵심이다. **연결 개념** 절차 규칙과 실체 규칙의 구별, 국가면제협약 제12조의 영토 요건, 알라드사니·존스 사건, 형사 절차와의 구별. **합정** Y국 국내법이 '고문 같은 인적 손해'에 면제를 제한한다는 사실에 끌려 면제 부인을 결론으로 쓰기 쉽다. 고문 장소가 X국이라는 점을 반드시 짚어야 한다.

■ 답안 개요

단계	쟁점	근거 조문·판례	결론	분량
①	국가면제의 원칙과 예외	국가면제협약 제5조, 제10조~제12조	고문은 주권적 행위	약 300자
②	강행규범 우선론	조약법협약 제53조 · 독일/이탈리아(2012) · 알라드사니(2001) · 존스(2014) · 피노체트(1999)	충돌 없음 → 우선론 부정	약 900자
③	국내법과 제12조 예외	국가면제협약 제12조	영토 연결 없음 → 부적용	약 600자
④	이중국적과 다른 구제 수단	외교적 보호 초안 제7조 · 고문방지협약 제14조	다른 경로의 구제	약 400자

예시답안 — 2023 제3문

A의 주장은 강행규범이 면제 규칙보다 우선한다는 규범 위계론이다. ① 두 규칙이 실제로 충돌하는지, ② 영토 내 불법행위 예외가 적용되는지, ③ 다른 구제 가능성의 순서로 검토한다.

1) 국가면제의 원칙과 예외

국가면제는 주권평등에서 나온 관습국제법상 원칙으로, 국가는 다른 국가 법원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UN 국가면제협약 제5조). 협약은 제한적 면제론에 따라 상업적 거래(제10조), 고용계약(제11조), 인

적·재산 손해(제12조) 등의 예외를 둔다. 고문은 국가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전형적 주권적 행위이며, 상업적 거래 예외는 적용되지 않는다.

2) 강행규범 우선론의 검토

(1) A의 주장 구조. 고문 금지는 조약법협약 제53조의 의미에서 이탈이 허용되지 않는 강행규범이다. A는 강행규범이 하위 규범인 면제 규칙을 배제하므로, 고문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면제가 부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ICJ의 판단: 충돌의 부존재. ICJ는 독일/이탈리아 관할권 면제 사건(2012)에서 이 논리를 배척하였다. 국가면제 규칙은 절차적 성격을 가져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만 정할 뿐, 소송의 대상이 된 행위가 적법한지에 관한 실체 규칙과는 다른 차원에 있다. 따라서 면제를 인정하더라도 고문 금지라는 실체 규범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 아니며, 두 규범 사이에는 충돌이 없다. 마찬가지로 배상 의무가 강행규범 위반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서 그 배상을 받기 위한 절차 규칙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다. ‘최후 수단’ 논리도 배척되었다.

(3) 다른 재판소와 국가 관행. 유럽인권재판소는 알라드사니 사건(2001, 대재판부)에서 쿠웨이트에서 당한 고문에 대한 영국 법원의 면제 부여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존스 사건(2014)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공무원에 대한 면제를 인정한 영국 법원의 판단을 지지하였다. 이는 형사소송에서 고문을 공적 기능으로 보지 않아 공무원의 물적 면제를 부인한 영국 상원의 피노체트 사건(1999)과 구별된다. 민사소송에서 문제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 자체의 면제이기 때문이다.

(4) 소결. 현행 국제법상 고문 금지의 강행규범성만으로 국가면제가 배제되지는 않으므로 A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Y국 「국가면제법」과 협약 제12조의 적용

(1) 영토 내 불법행위 예외. 협약 제12조는 사망·신체 상해 또는 유형 재산 손해에 대한 금전 배상 소송에서, 그 작위·부작위가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지국 영역 안에서 발생하고 행위자가 그 당시 법정지국 영역에 있었던 경우 면제를 원용할 수 없다고 한다.

(2) 사안의 적용. A가 고문을 받은 곳은 X국이므로 Y국 영역과의 연결이 없다. Y국 국가면제법이 ‘고문과 같은 인적 손해’에 면제를 제한하더라도 그것이 협약 제12조와 같은 영토 요건을 전제로 한다면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Y국 법률이 영토 요건 없이 국외 고문에까지 면제를 부인한다면, 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Y국이 협약과 관습법상 X국에 부여해야 할 면제를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Y국 법원이 면제를 부여한 것은 국제법에 부합한다.

4) 이중국적과 그 밖의 구제 수단

A가 X국 국적도 가진다는 사실은 면제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Y국이 A를 위해 X국에 외교적 보호를 행사하려면, 다른 국적국에 대한 청구에서는 Y국 국적이 우세(predominant)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ILC 외교적 보호 초안 제7조). 고문방지협약 제14조는 피해자의 배상받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지만, 이것이 국외 고문에 대해 다른 국가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허용할 의무까지 포함하는지는 다투어진다. 결국 A는 X국 국내 구제, 인권기구 개인통보, 국가 간 교섭 등을 이용해야 한다.

결론. 강행규범인 고문 금지와 절차 규칙인 국가면제 규칙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이 ICJ와 유럽인권재판소의 확립된 입장이다. 고문이 Y국 밖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영토 내 불법행위 예외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X국의 면제가 부인되어야 한다는 A의 주장은 현행 국제법상 타당하지 않으며, Y국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다만 구제의 공백에 대한 비판이 있다.

근거: 조약법협약 제53조 · UN 국가면제협약(2004) 제5조, 제12조 · 독일/이탈리아 관할권 면제 사건(2012) · 알라드사니 사건(유럽인권재판소, 2001) · 존스 사건(유럽인권재판소, 2014) · 고문방지협약 제14조

2024 제1문

탈식민지 국경분쟁과 연방 해체의 승계

총 40점 · 소문 3개 · 현상유지 원칙, 국경조약의 승계, 재산·부채 승계

제1문.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40점)

〈글〉

(가) 중남미에 위치한 X국과 Y국은 1970년 Z국의 식민지배로부터 각각 독립하였다. 양국이 독립하기 전 X국과 Y국의 행정구역은 양국 사이를 관통하는 ‘하 나강’을 경계로 구분되어 있었다. X국과 Y국은 독립 후 국경선을 다시 획정하기 위해 교섭을 시도하고 우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에 양국은 특별합의를 통하여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에 분쟁을 회부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이후 연방국가로 운영된 Z국은 1990년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에 가입한 이래 다민족 국가로 내부 갈등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최근 Z국은 민족 간 갈등이 고조되어 결국 A국, B국, C국 총 세 개의 국가로 분열되었다. 한편 C국은 인접국인 D국과의 기존 국경선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국경조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Z국, A국, B국, C국, D국 모두 1978년 「조약에 관한 국가승계 협약」(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Treaties), 1983년 「국가재산·문서 및 부채에 관한 국가승계 협약」(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Property, Archives and Debts)의 당사국이다)

- 1) X국과 Y국 간 국경 분쟁에 적용 가능한 국제법 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 2) C국과 D국 간 국경선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쟁점을 논하시오. (10점)
- 3) Z국이 보유했던 국가재산과 부채의 A국, B국, C국으로의 승계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0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국경 안정성이라는 하나의 원리를 탈식민지(1문), 국가 해체(2문), 재산·부채(3문)의 세 장면에 적용하게 한다. **연결 개념** 부르키나파소/말리(1986), 하천 국경(탈베그), 1978년 협약 제11조·제34조, 조약법협약 제62조 제2항 (a), 리비아/차드(1994). **합정 1**에서 ICJ 관할 근거와 적용 법규(제36조 제1항, 제38조)를 빠뜨리기 쉽다. 3)은 ‘해체’라는 승계 유형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

■ 답안 개요

소문	쟁점	근거 조문·판례	결론	분량
1)	X·Y 국경분쟁의 적용 원칙	ICJ규정 제36조 제1항, 제38조 · 부르키나파소/말리(1986) · 카시 킬리/세두두(1999) · 프레아비헤 어(1962)	하나강이 국경, 구체적 선은 문서·탈베그	약 1,300자
2)	C국의 기존 국경 이의	1978년 협약 제11조, 제34조 · 조약법협약 제62조 제2항 (a) · 리비아/차드(1994) · 바덴테르 의견 제3호	기존 국경 승계, 합의 없이 변경 불가	약 800자
3)	재산·부채의 승계	1983년 협약(국가 해체 규정)	합의 우선, 소재지·형평 배분	약 600자

예시답안 — 2024 제1문

이 문제는 식민지에서 독립한 국가 사이의 국경(1문), 연방국가 해체 후 승계국과 인접국 사이의 국경(2문), 해체에 따른 재산·부채 승계(3문)를 묻는다. 세 물음을 관통하는 원리는 국경의 안정성과 계속성이다.

1) X국과 Y국 간 국경 분쟁에 적용 가능한 국제법 원칙

(1) 재판의 법적 기초. 양국은 특별합의로 ICJ에 분쟁을 회부하였으므로 ICJ규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관할권이 성립한다. ICJ는 제38조 제1항의 조약, 관습, 법의 일반원칙 등을 적용하며, 당사국이 합의하면 형평과 선에 따라 재판할 수 있다(제38조 제2항). 그런 합의가 없으면 법의 테두리 안의 형평(equity *infra legem*)만 고려할 수 있다.

(2) 현상유지(uti possidetis juris) 원칙. 이 원칙은 독립 시점의 식민지 행정경계를 새 국가 사이의 국제 국경으로 인정한다. 중남미 독립 과정에서 형성되어 아프리카로 확대되었고, ICJ는 부르키나파소/말리 국경분쟁 사건(1986)에서 이를 탈식민지화와 논리적으로 결합된 일반원칙으로 보고, 독립을 위한 투쟁 이후 국경을 둘러싼 형제간 분쟁으로 신생국의 안정이 위협받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이 원칙에 따르면 독립 당시(1970년)의 영토 상태가 기준이 되며, 이를 ‘사진’처럼 고정한다.

사안에서 독립 전 X·Y의 행정구역은 ‘하나강’을 경계로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이 강이 양국의 국경이 된다. 국경 재획정 교섭이 실패했다는 사정은 이 원칙의 적용에 영향이 없다.

(3) 하천 국경의 구체적 선. 강이 경계라 하더라도 강의 어느 선인지가 남는다. 식민 당시 행정 문서가 정한 선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관행상 항행 가능한 하천은 주항로의 가장 깊은 선(thalweg), 항행이 불가능한 하천은 중간선이 기준이 된다. ICJ는 카시킬리/세두두섬 사건(1999)에서 조약상 ‘주수로’를 해석하며 탈베그 기준을 사용하였다. 강의 흐름이 점진적으로 변하면(퇴적) 국경도 따라 변하지만, 급격한 변경(유로 변경)의 경우 국경은 옛 강바닥에 남는다는 것이 일반적 규칙이다.

(4) 권원과 실효적 지배의 관계. 부르키나파소/말리 사건은 ① 행위가 법적 권원과 일치하면 실효적 지배는 권원을 확인할 뿐이고, ② 권원 보유국이 아닌 국가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면 권원이 우선하며, ③ 권원이 불분명할 때 실효적 지배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정리하였다. 따라서 독립 후 어느 한쪽이 강 건너 지역을 관리했다는 사실만으로 행정경계를 뒤집을 수 없다.

(5) 묵인과 금반언. 일방이 장기간 상대국의 국경 주장이나 지도를 이의 없이 받아들였다면 그에 구속될 수 있다. ICJ는 프레아비헤어 사원 사건(1962)에서 태국이 지도에 대해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묵인으로 보았다.

2) C국과 D국 간 국경선 문제의 국제법적 쟁점

(1) 국가승계와 국경조약. 조약승계협약 제11조는 국가승계가 그 자체로 조약에 의해 확정된 국경과 국경 제도에 관한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는 승계의 유형을 가리지 않으므로 Z국 해체로 성립한 C국도 Z국과 D국 사이의 국경을 그대로 승계한다. 조약 일반에 관해서도 제34조는 국가 영역의 일부가 분리되어 하나 이상의 국가를 형성한 경우 선행국의 존속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조약이 각 승계국에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정한다.

(2) 국경조약의 특수성. 조약법협약 제62조 제2항 (a)는 국경을 확정하는 조약에 대해서는 근본적 사정변경을 원용할 수 없다고 한다. ICJ는 리비아/차드 영토분쟁 사건(1994)에서 조약으로 확정된 국경은 조약 자체가 갖지 못하는 영속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C국이 자국 독립이라는 사정 변화를 이유로 기존 국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3) 현상유지 원칙의 확대. 구유고 해체 시 바덴테르 중재위원회 의견 제3호(1992)는 내부 행정경계도 현상유지 원칙에 따라 국제법상 보호되는 국경이 된다고 보았다. 이 원칙은 식민지 맥락을 넘어 국가 해체에도 적용될 수 있다.

(4) 소결. C국은 D국과 합의하여 새 국경조약을 체결할 수는 있지만, 합의가 없으면 기존 국경에 구속된다. 일방적으로 국경을 부인하거나 힘으로 변경하려 하면 영토보전 원칙(UN헌장 제2조 제4항)에 반한다.

3) Z국 국가재산과 부채의 승계

(1) 승계 유형. Z국은 세 국가로 분열되어 소멸하였으므로 ‘국가의 해체’에 해당한다. 1983년 「국가재산·문서 및 부채에 관한 국가승계 협약」은 해체의 경우 승계국 간 합의를 우선하고, 합의가 없을 때 보충 규칙을 둔다.

(2) 국가재산. 부동산은 그것이 소재하는 영역의 승계국으로 이전한다. 해외 소재 부동산은 승계국들 사이에 형평한 비율로 이전한다. 동산은 특정 영역에 대한 선행국의 활동과 관련된 것은 그 영역의 승계국으로, 그 밖의 동산은 형평한 비율로 이전한다.

(3) 국가부채. 합의가 없으면 선행국의 국가부채는 각 승계국으로 이전하는 재산·권리·이익을 고려하여 형평한 비율로 승계국들에 이전한다. 부채가 재산과 함께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4) 평가. 1983년 협약은 비준국이 적어 실제 사례에서는 승계국 간 협상이 주된 해결 방식이었다. 사안에서는 모든 국가가 당사국이므로 A·B·C국은 먼저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없으면 위 형평 배분 규칙에 따른다.

결론. X·Y국 국경은 현상유지 원칙에 따라 ‘하나강’이 되고, 구체적 선은 식민 문서와 하천 국경 관행에 따른다. C국은 국가승계와 무관하게 기존 국경을 승계하며 사정변경을 이유로 부인할 수 없다. Z국 재산과 부채는 합의를 우선하되, 합의가 없으면 소재지와 형평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근거: ICJ규정 제36조 제1항, 제38조·조약승계협약(1978) 제11조, 제34조·조약법협약 제62조 제2항 (a)·국경분쟁(부르키나파소/말리, 1986)·카시킬리/세두두섬(1999)·영토분쟁(리비아/차드, 1994)·프레아비헤어 사원(1962)·바덴테르 중재위원회 의견 제3호(1992)

제3장

외교·영사관계

공관의 불가침·외교관 신체의 불가침과 면제·면제의 개시와 종료·접수국의 보호 의무 | 기출 2문항: 2016-2, 2022-2 (관련: 2017-1, 2026-2)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

3-1 핵심 개념	44
3-2 기출 풀이	46
2016 제2문 공관 화재와 소방 당국의 진입	46
2022 제2문 부임 외교관의 공항 폭행과 공사 직원의 보복	48

3-1 핵심 개념

외교관계법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1961)과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1963)이 거의 완전히 법전화하였다. 출제 포인트는 조문 문언의 차이(외교 공관과 영사 공관), 면제의 시간적 범위, 그리고 사인의 침해에 대한 접수국의 책임이다. 2026-2(테헤란형 대사관 점거)는 제6장에, 2017-1(대사의 보증)은 제2장에 실었다.

공관의 불가침

공관 지역은 불가침이며 접수국 관헌은 공관장의 동의 없이 들어갈 수 없다(외교관계협약 제22조 제1항). 접수국은 침입·손괴를 막고 안녕·품위를 보호할 특별한 의무를 지며(제2항), 공관 지역과 비품, 교통수단은 수색·징발·압류·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제3항). 공관 문서는 언제 어디서나 불가침이다(제24조). 영사관계협약 제31조 제2항은 화재 등 재난 시 영사기관장의 동의를 추정하지만, 외교관계협약에는 이러한 예외가 없다. 공관 지역은 공관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토지이므로(제1조 (i)), 사용이 끝나면 지위를 잃는다. 단 외교관계 단절·공관 철수 시에도 접수국은 공관과 재산·문서를 존중·보호해야 한다(제45조).

대립 구도

외교 공관(긴급 예외 없음) ↔ 영사 공관(재난 시 동의 추정)

쓰이는 기출 2016-2, 2026-2

답안 속 문장

“외교관계협약 제22조는 영사관계협약 제31조 제2항과 달리 화재 시 동의 추정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접수국은 공관장의 동의 없이 공관에 들어갈 수 없다.”

외교관의 신체 불가침과 재판권 면제

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이며 체포·구금되지 않고, 접수국은 신체·자유·품위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29조). 외교관은 형사재판권으로부터 예외 없이 면제되고, 민사·행정재판권으로부터는 ① 개인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소송, ② 개인 자격의 상속 소송, ③ 공무 외의 직업적·상업적 활동에 관한 소송을 제외하고 면제된다(제31조 제1항). 면제는 파견국만 명시적으로 포기할 수 있고(제32조), 파견국의 재판권은 면제되지 않는다(제31조 제4항).

대립 구도

인적 면제(재임 중 모든 행위) ↔ 이임 후 공무상 행위에 대한 면제의 존속(제39조 제2항)

쓰이는 기출 2022-2 (1), 2017-1 (2)

답안 속 문장

“외교관은 접수국 형사재판권으로부터 예외 없이 면제되므로, 접수국은 중대한 범죄라도 처벌할 수 없고 기피인물 선언이나 면제 포기 요청으로 대응해야 한다.”

면제의 개시와 종료

특권·면제는 부임을 위해 접수국 영역에 들어간 순간부터, 이미 영역 안에 있으면 임명이 외교부에 통고된 순간부터 누린다(제39조 제1항). 신임장 제정은 직무 개시와 서열의 기준(제13조)일 뿐 면제의 개시 요건이 아니다. 직무가 끝나면 출국 시나 출국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 면제가 소멸하지만, 공무 수행

중 행위에 대한 면제는 계속된다(제39조 제2항). 접수국은 언제든지 이유를 밝히지 않고 기피인물을 선언할 수 있다(제9조).

쓰이는 기출 2022-2 (1)

답안 속 문장

“신임장 제정 전이라도 부임을 위해 입국한 순간부터 면제가 개시되므로(제39조 제1항), 직무 미개시를 이유로 한 처벌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기완결적 체제와 긴급피난

ICJ는 테헤란 인질 사건(1980)에서 외교법이 남용에 대한 대응 수단(기피인물 선언, 외교관계 단절)을 스스로 갖춘 자기완결적 체제라고 하였다. 따라서 접수국은 공관이나 외교관의 남용을 이유로 불가침을 침해할 수 없으며, 대응조치로도 외교관·공관·문서의 불가침을 해칠 수 없다(국가책임초안 제50조 제2항 (b)). 다만 대규모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피난(제25조)이 공관 진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는 다투어진다.

대립 구도

불가침의 절대성 ↔ 생명 보호를 위한 긴급피난

쓰이는 기출 2016-2 (1)

답안 속 문장

“설령 긴급피난을 원용하더라도 진입은 인명 구조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 그쳐야 하며 공관 문서는 손대지 않아야 한다.”

사인의 침해와 접수국의 책임

시위대·폭도 같은 사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접수국은 공관과 외교관을 보호할 특별한 의무를 지므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로 책임진다. 국가가 사인의 행위를 자기 행위로 인정·채택하면 그 행위는 국가 행위가 된다(국가책임초안 제11조). 테헤란 인질 사건은 이 두 단계를 모두 보여 준다. 공기업 직원처럼 정부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행위는 ‘그 자격으로’ 행동한 경우에만 귀속된다(제5조, 제7조).

대립 구도

귀속(제4조~제11조) ↔ 보호 의무 위반(부작위)

쓰이는 기출 2022-2 (2), 2026-2 (1)

답안 속 문장

“사인의 공격은 접수국에 귀속되지 않더라도, 접수국이 이를 방지하거나 종식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 부작위로 협약 위반이 성립한다.”

3-2 기출 풀이

2016 제2문

공관 화재와 소방 당국의 진입

총 30점 · 소문 2개 · 공관 불가침, 긴급피난, 공관 지위의 소멸

제2문.

A국과 B국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당사국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 1) A국 소재 B국 공관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A국 소방당국이 출동하여 진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외교기밀 누설을 우려한 B국 공관측은 A국 소방 당국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고 자체 진화시설로만 대처하려고 하였다. 화재가 인구 밀집지역인 공관 인접 주택가로 번져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기 상황에서 A국 소방 당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국제법적으로 평가하시오. (20점)
- 2) 위 화재로 B국 공관 시설이 전소되어 더 이상 공관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B국 공관 시설의 잔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다시 발생하였다. 이 경우에 A국 소방 당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국제법적으로 평가하시오. (10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외교 공관 불가침의 절대성과 그 한계, 그리고 공관 지위가 ‘사용’에 결부된다는 점을 묻는다. **연결 개념** 제22조, 영사관계협약 제31조 제2항과의 대비, 자기완결적 체제, 긴급피난, 제1조 (i), 제24조, 제45조. **함정** 1)에서 곧바로 ‘긴급하므로 진입 가능’이라고 쓰면 감점된다. 동의 요청과 외부 진화라는 적법한 선택지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 2)에서 문서 불가침(제24조)이 공관 지위와 무관하게 남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 답안 개요

소문	쟁점	근거 조문·판례	결론	분량
1)	화재 시 공관 진입의 허용 여부와 선택지	외교관계협약 제22조, 제24조, 제41조, 제9조 · 영사관계협약 제31조 제2항 · 국가책임초안 제25조, 제27조, 제50조 제2항 (b) · 테헤란(1980)	동의 요청·외부 진화 우선, 무단 진입은 긴급피난 여부 다툼	약 1,500자
2)	사용이 끝난 공관의 재발화	제1조 (i), 제24조, 제45조	공관 지위 소멸 → 진입 가능, 문서는 불가침	약 600자

예시답안 — 2016 제2문

쟁점은 긴급상황에서도 공관 불가침이 절대적인지(1문), 사용이 끝난 시설에도 불가침이 남는지(2문)이다.

1) 화재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A국 소방 당국의 선택지

(1) 공관 불가침의 내용. 외교관계협약 제22조 제1항은 공관 지역은 불가침이며 접수국 관헌은 공관장의 동의 없이 공관 지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규정한다. 제2항은 접수국이 공관을 침입이나 손괴로부터 보호하고 공관의 안녕 교란이나 품위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를 진다고 한다.

(2) 긴급 예외의 부존재. 영사관계협약 제31조 제2항은 화재나 그 밖의 신속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재난의 경우 영사기관장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예외를 둔다. 반면 외교관계협약 제22조에는 그런 예외가 없다. 외교 공관의 불가침이 더 강하게 보장되는 것이다. ICJ는 테헤란 인질 사건(1980)에서 외교법을 남용에 대한 대응 수단(기피인물 선언, 외교관계 단절 등)까지 갖춘 자기완결적 체제로 보았다.

(3) A국 소방 당국이 취할 수 있는 방안. 첫째, 기밀 보호 조건(문서 구역 접근 금지, 공관원 동행 등)을 제시하여 공관장이나 외교 경로로 파견국 정부의 동의를 얻는 것이다. 둘째, 공관 외부에서의 진화, 인접 주택가의 방화선 구축과 주민 대피이다. 이는 공관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므로 허용되며, 오히려 제22조 제2항의 보호 의무 이행에 해당한다.

(4) 동의 없는 진입의 평가. 대규모 인명피해가 임박하였는데 위 방법으로 막을 수 없는 경우, A국이 동의 없이 진입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제22조 문언상 이는 협약 위반이다. A국은 국가책임초안 제25조의 긴급피난을 원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다. 긴급피난은 그 행위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본질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고, 의무 상대국이나 국제공동체 전체의 본질적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주민의 생명은 본질적 이익이고, 진화를 위한 일시적 진입은 문서 열람이나 압수를 수반하지 않는 한 파견국의 본질적 이익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외교법의 자기완결성에 비추어 이 주장은 다투어진다. 또한 공관 불가침은 대응조치로도 침해할 수 없는 의무이므로(국가책임초안 제50조 제2항 (b)), A국은 ‘공관측의 비협조’에 대한 대응으로 진입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진입은 인명 구조를 위해 불가피한 최소 범위로 한정하고, 문서와 통신 시설에는 손대지 않으며, 진입 사실을 즉시 파견국에 통보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5) B국의 의무. B국 공관도 접수국 법령을 존중할 의무를 지므로(제41조 제1항), 주민 생명이 위협받는 데도 협조를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날 수 있다. A국은 사후에 항의, 기피인물 선언(제9조),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할 수 있다.

2) 전소되어 공관으로 사용되지 않는 시설의 재발화

(1) 공관 지역의 정의. 제1조 (i)는 공관 지역을 공관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부속 토지로 정의하므로, 사용이 끝나면 공관 지역의 지위를 잃는다.

(2) 사안의 적용. 화재로 시설이 전소되어 더 이상 공관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 외교관계가 단절되었거나 공관이 철수한 경우에는 제45조에 따라 접수국이 공관과 재산·문서를 존중·보호해야 하지만, 사안은 그런 경우가 아니다. 따라서 남은 잔재는 공관 지역이 아니며, A국 소방 당국은 동의 없이 진입하여 진화할 수 있다.

(3) 남는 제한. 잔재 속 공관 문서는 제24조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불가침이므로 열람·압수해서는 안 되며, A국은 진화 사실을 B국에 통보하고 발견 물품을 인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 A국은 동의 요청과 외부 진화를 우선해야 하고, 동의 없는 진입은 긴급피난 여부가 다투어지므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사용이 끝난 잔재에는 진입할 수 있으나 문서의 불가침은 존중해야 한다.

근거: 외교관계협약 제1조 (i), 제22조, 제24조, 제41조, 제45조 · 영사관계협약 제31조 제2항 · 국가책임초안 제25조, 제50조 제2항 (b) · 테헤란 인질 사건(1980)

2022 제2문

부임 외교관의 공항 폭행과 공사 직원의 보복

총 30점 · 소문 3개 · 면제의 개시, 행위 귀속, 영토 내 불법행위 예외

제2문.

A국의 외교관 甲은 B국 정부로부터 아그레망(agrément)을 수여 받고 자국의 국가원수가 발부한 신임장을 소지하고 B국의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甲은 B국 공항에서 입국 수속 중 출입국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X공항공사(公社) 소속 직원 乙과 연쟁을 벌이게 되었다. 연쟁이 격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甲은 입국검사 업무를 수행하던 乙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그 과정에서 공항 시설물의 일부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甲의 폭력 행사를 지켜보던 공사 직원 丙은 乙이 甲에게 폭행당하는 모습에 격분하여 주변에 있던 물건으로 甲을 마구 때려 심하게 다치게 하였다. (단, A국과 B국 모두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회원국이다)

(총 30점)

- 1) 폭력을 행사한 외교관 甲에 대하여 B국은 아직 신임장이 국가 원수에게 제정(提呈)되기 이전이므로 직무가 개시되지 않았고, 형사재판관할권의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폭행죄로 처벌하고자 한다. B국 주장의 정당성 여부를 검토하시오. (10점)
- 2) A국은 丙의 폭행으로 인해 자국의 외교관 甲이 신체 여러 곳에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丙의 폭력행사에 대해 B국에게 국가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공사 직원인 丙의 행위가 B국의 행위로 귀속되는지 여부를 UN 국제법위원회(ILC)의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규정 초안'을 바탕으로 판단하시오. (10점)
- 3) 乙이 소속된 B국의 X공항공사는 직원 乙의 신체에 대한 피해 및 공항 시설물 파손에 따른 손해에 대해 외교관 甲의 파견국인 A국을 상대로 B국의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B국의 법원이 이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시오. (10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외교관계법(1문), 국가책임법의 귀속(2문), 국가면제법(3문)을 한 사안에서 교차시킨다. **연결 개념** 제39조 제1항, 제29조, 국가책임초안 제5조·제7조, 테헤란 사건의 부작위 책임, 국가면제협약 제12조. **함정** 2)에서 丙이 공기업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귀속을 인정하거나, 반대로 '공사는 국가기관이 아니다'로 끝내면 안 된다. 제5조의 '그 자격으로' 요건과 B국 자신의 보호 의무를 함께 써야 한다.

■ 답안 개요

소문	쟁점	근거 조문·판례	결론	분량
1)	신임장 제정 전 외교관의 형사면제	외교관계협약 제9조, 제13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39조 제1항	입국 시부터 면제 → B국 주장 부당	약 600자
2)	공사 직원 丙의 행위 귀속	국가책임초안 제4조, 제5조, 제7조 · 외교관계협약 제29조 · 테헤란(1980)	사적 행위로 귀속 부정, 보호 의무 위반 가능	약 800자
3)	공사의 A국 상대 손해배상 소송	국가면제협약 제12조 · 외교관계협약 제22조 제3항, 제31조	甲 행위가 A국에 귀속되면 관할권 행사 가능	약 800자

예시답안 — 2022 제2문

이 문제는 신임장 제정 전 외교관의 면제(1문), 공사(公社) 직원 행위의 국가 귀속(2문), 외교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파견국 상대 소송과 국가면제(3문)를 묻는다.

1) 신임장 제정 전이라는 이유로 한 B국의 처벌 주장

외교관계협약 제39조 제1항은 특권·면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부임하기 위해 접수국 영역에 들어간 순간부터, 이미 영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그의 임명이 외교부에 통고된 순간부터 특권·면제를 누린다고 규정한다. 신임장 제정은 대사가 직무를 개시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과 서열을 정하는 기준(제13조)일 뿐 면제의 개시 시점이 아니다.

甲은 아그레망을 받고 신임장을 소지한 채 부임을 위해 B국 공항에 도착하였으므로 입국 시점부터 면제를 누린다. 외교관은 접수국 형사재판권으로부터 예외 없이 면제되고(제31조 제1항), 신체는 불가침이어서 어떠한 형태의 체포·구금도 당하지 않는다(제29조). 따라서 폭행이 중대하더라도 B국은 甲을 처벌할 수 없으며, B국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

B국은 면제 포기를 요청하거나(제32조), 甲을 기피인물로 선언하거나(제9조), A국에 자국 법원에서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제31조 제4항).

2) 공사 직원 丙의 행위가 B국에 귀속되는지

(1) 귀속 기준. 국가책임초안 제4조는 국내법상 지위를 가진 국가기관의 행위를 국가 행위로 본다. 제5조는 국가기관이 아니더라도 국내법에 의해 정부권한의 요소를 행사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개인이나 단체의 행위를, 그가 그 자격으로 행동한 경우에 국가 행위로 본다. 제7조는 기관이나 그런 단체가 그 자격으로 행동하였다면 권한을 넘거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에도 국가 행위로 본다.

(2) 공사의 지위. X공항공사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공기업으로서 국내법상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제4조가 아니라 제5조가 문제된다. 출입국·입국검사는 전형적 정부권한이므로, 공사가 법령에 따라 이를 위임받아 수행한다면 그 업무 수행 중의 행위는 B국에 귀속된다.

(3) 丙의 행위. 그러나 제5조와 제7조 모두 ‘그 자격으로’ 행동하였을 것을 요구한다. 丙은 입국검사 업무를 수행하던 乙과 달리 폭행을 지켜보다가 격분하여 주변 물건으로 甲을 때렸다. 이는 정부권한의 행사와 무관한 사적 행위이며, 외관상 권한 행사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丙의 행위는 B국에 귀속되지 않는다.

(4) B국 자신의 책임 가능성. 다만 B국은 외교관 신체에 대한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제29조). ICJ는 테헤란 인질 사건(1980)에서 시위대의 행위는 이란에 귀속되지 않지만, 이란이 공관과 외교관을 보호하지 않은 부작위가 협약 위반이라고 하였다. 사안에서 공항 보안 인력이 폭

행을 방치하였거나 B국이 丙을 수사·처벌하지 않는다면, 丙의 행위가 아니라 B국 기관의 부작위를 근거로 B국의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3) X공항공사의 A국 상대 손해배상소송과 B국 법원의 관할권

甲 개인에 대한 민사소송은 제31조 제1항에 따라 면제되므로, A국을 피고로 한 소송은 국가면제의 문제이다. (1) 영토 내 불법행위 예외. UN 국가면제협약 제12조는 신체 상해와 유형 재산 손해에 대한 금전 배상 소송에서, 국가에 귀속되는 작위·부작위가 법정지국 영역 안에서 발생하고 행위자가 그 당시 법정지국 영역에 있었던 경우 면제를 원용할 수 없다고 한다. 이 예외는 행위가 주권적 성격이더라도 적용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2) 사안의 적용. 폭행과 시설 파손은 B국 공항에서 발생했고 甲도 B국에 있었으므로 영토적 요건은 충족된다. 남은 쟁점은 甲의 행위가 A국에 귀속되는지이다. 甲은 A국의 외교관으로서 부임 중이었으나, 입국 수속 중 언쟁 끝에 폭력을 휘두른 것은 직무 수행과 무관한 사적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 귀속되지 않는다면 A국을 상대로 한 청구는 면제 이전에 실체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반대로 甲이 외교관 자격으로 행동하던 중의 행위로 보아 A국에 귀속시킨다면(초안 제4조·제7조), 제12조 예외에 따라 B국 법원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 예외의 관습법적 범위는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

(3) 집행의 한계. 판결을 얻더라도 강제집행에는 별도의 집행면제가 적용되며, 공관 지역과 그 안의 재산은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제22조 제3항).

결론. 甲은 입국 순간부터 면제를 누리므로 B국은 그를 처벌할 수 없다. 丙의 폭행은 정부권한과 무관한 사적 행위이므로 B국에 귀속되지 않으나, B국은 보호 의무의 부작위로 책임질 수 있다. X공항공사의 A국 상대 소송은 甲의 행위가 A국에 귀속된다면 영토 내 불법행위 예외에 따라 B국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거: 외교관계협약 제9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39조 제1항 · 국가책임초안 제4조, 제5조, 제7조 · UN 국가면제협약 제12조 · 테헤란 인질 사건(1980)

제4장

국가책임 · 외교적 보호 · 대응조치

국제위법행위의 성립과 귀속 · 위법성 조각사유 · 책임의 내용 · 대응조치 · 외교적 보호 · 국제기구의 책임 | 기
출 4문항: 2017-2, 2018-2, 2019-1, 2026-1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

4-1 핵심 개념	52
4-2 기출 풀이	55
2017 제2문 평화유지군의 부주의로 인한 전염병 피해	55
2018 제2문 희토류 공급 불이행과 인도적 물자 제공 거부	57
2019 제1문 반란단체의 수용과 회사·주주의 외교적 보호	60
2026 제1문 자율무기통제협정 위반에 대한 대응	62

4-1 핵심 개념

국가책임법은 ILC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2001, 이하 ‘초안’)이 기본 틀이다. 답안은 언제나 **성립(귀속 + 위반) → 조각사유 → 책임의 내용(중지·배상) → 이행 확보(청구·대응조치)**의 순서를 따른다. 제3장의 공관 보호, 제7장의 비피해국 책임 추궁(2021-2)도 같은 틀을 쓴다.

국제위법행위의 성립과 귀속

국가의 모든 국제위법행위는 국가책임을 수반하며(제1조), 그 요소는 ① 국제법상 국가에 귀속되는 작위·부작위가 ② 국제의무 위반을 구성하는 것이다(제2조). 손해나 고의·과실은 1차 규범이 요구하는 경우에 만 요건이 된다. 귀속 규칙은 다음과 같다. 국가기관의 행위(제4조), 정부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그 자격으로 한 행위(제5조), 권한 초과 행위(제7조), 국가의 지시나 지휘·통제에 따른 사인의 행위(제8조), 새 정부가 된 반란단체의 행위(제10조), 국가가 인정·채택한 행위(제11조). 위반 여부는 의무의 연원과 무관하게 판단한다(제12조).

대립 구도

국가기관(제4조) ↔ 사인(원칙적 비귀속, 제8조·제11조의 예외)

쓰이는 기출 2020-1 (3), 2022-2 (2), 2019-1, 2026-2 (1)

답안 속 문장

“반란단체가 내전에서 승리하여 새 정부가 되면 그 운동 과정의 행위는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초안 제10조 제1항).”

위법성 조각사유

초안은 동의(제20조), 자위(제21조), 대응조치(제22조), 불가항력(제23조), 조난(제24조), 긴급피난(제25조)을 든다. 불가항력은 통제를 벗어난 저항할 수 없는 힘이나 예견 불가능한 사건으로 이행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야 하며, 상황이 원용국의 행위에 기인하거나 원용국이 위험을 떠안은 경우에는 원용할 수 없다. 긴급피난은 중대하고 급박한 위협에서 본질적 이익을 지키는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상대국의 본질적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지 않아야 한다. 어떤 사유도 강행규범 위반을 정당화하지 못하며(제26조), 사유가 소멸하면 이행을 재개하고 물질적 손실의 보상 문제는 남는다(제27조).

대립 구도

불가항력(비자발적 불이행) ↔ 긴급피난(의도적 선택) · 조약법상 이행불능(제61조) ↔ 책임법상 불가항력(제23조)

쓰이는 기출 2018-2 (1), 2016-2 (1)

답안 속 문장

“제3국의 폭격으로 조약상 공급원이 파괴된 것은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저항할 수 없는 힘이므로, 공급 불이행의 위법성은 불가항력으로 조각된다.”

책임의 내용 — 중지과 완전한 배상

책임국은 위반된 의무를 계속 이행할 의무를 지고(제29조), 계속 중인 위법행위를 중지하며 필요하면 재발방지의 약속·보장을 제공해야 한다(제30조). 또한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완전히 배상해야 한다(제31조).

조). 배상은 원상회복(제35조), 금전배상(제36조), 만족(제37조)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이자(제38조)와 피해국의 기여 과실(제39조)도 고려된다. 피해국은 개별적으로 의무를 지는 상대국 등이고(제42조), 비피해국은 대세적 의무나 집단 이익 의무 위반에 대해 중지와 수익자를 위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48조).

쓰이는 기출 2026-1 (2), 2020-1 (3), 2021-2 (2)

답안 속 문장

“금지된 무기의 폐기는 위법행위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는 원상회복에 해당하며, 생산 중단은 계속 중인 위법행위의 중지 의무의 이행이다.”

대응조치

대응조치는 피해국이 책임국의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자신의 의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제49조). 요건은 ① 선행 국제위법행위, ② 이행 유도 목적과 가역성, ③ 무력 금지·기본적 인권·보복 금지 인도적 의무·강행규범 존중(제50조 제1항), 분쟁해결 절차와 외교 불가침 존중(제2항), ④ 비례성(제51조), ⑤ 이행 요구와 결정 통고·교섭 제의(제52조)이다. 책임국이 이행하면 즉시 종료해야 한다(제53조). 가브치코보·나기마로스 사건(1997)은 비례성을 결여한 조치를 대응조치로 인정하지 않았다. 위법하지 않은 비우호적 조치(보복조치, 예: 원조 중단)는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대립 구도

대응조치(위법성 조각) ↔ 보복조치(본래 적법) ↔ 조약법상 정지(제60조)

쓰이는 기출 2018-2 (2), 2026-1 (2), 2016-1 (3)

답안 속 문장

“대응조치는 선행 위법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상대국의 불이행이 불가항력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이상 대응조치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외교적 보호

국적국이 자국민이 입은 국제위법행위 피해에 대해 자신의 권리로 상대국의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이다. 요건은 ① 국적 연결, ② 국내구제 완료이다. 자연인은 국적이 기준이고(노테봄 1955의 진정한 연관), 회사는 설립국이 원칙이다(바르셀로나 트랙션 1970). ILC 외교적 보호 초안(2006)은 회사 국적국(제9조), 주주 국적국의 예외적 보호(제11조: 회사 소멸, 가해국 설립 강제), 주주 고유 권리 침해(제12조), 국내구제 완료(제14조)와 그 예외(제15조: 실효적 구제의 합리적 가능성 부재 등)를 규정한다. 디알로 사건(2007)은 ‘대위에 의한 보호’를 관습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립 구도

회사의 국적국(설립국) ↔ 주주의 국적국(예외적) · 국내구제 완료 ↔ 무익성 예외

쓰이는 기출 2019-1, 2023-3(이중국적)

답안 속 문장

“회사 재산의 수용으로 주식 가치가 떨어진 것은 주주의 이익이 침해된 것일 뿐 권리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주주의 국적국은 외교적 보호를 할 수 없다.”

국제기구의 책임

UN은 국제법인격을 가지며(손해배상 권고적 의견 1949), 자신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진다. ILC 국제기구 책임 초안(2011)은 국가가 국제기구의 처분에 맡긴 기관의 행위를 기구가 **실효적 통제**를 행사하는 경우 기구에 귀속시킨다(제7조). 평화유지군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UN에 귀속되지만, 공여국이 실효적 통제를 행사한 행위는 공여국에 귀속될 수 있고 이중 귀속도 가능하다(네덜란드 대법원 누하노비치 판결 2013). 회원국은 책임을 수락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만 기구의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진다(제62조).

대립 구도

UN 귀속(작전 통제) ↔ 공여국 귀속(징계·형사관할, 국가 지휘 계통)

쓰이는 기출 2017-2

답안 속 문장

“국가가 UN의 처분에 맡긴 부대의 행위는 UN이 그 행위에 실효적 통제를 행사한 경우 UN에 귀속되고, 공여국이 실효적 통제를 행사한 부분은 공여국에 귀속된다.”

4-2 기출 풀이

2017 제2문

평화유지군의 부주의로 인한 전염병 피해

총 30점 · 소문 2개 · 국제기구의 책임, 귀속, 회원국의 책임

제2문.

대규모의 재난이 발생한 A국에 B국 군인들로 구성된 유엔평화유지군이 파병되었다. 위의 유엔평화유지군이 파병된 기간 동안 A국에 심각한 전염병이 발생하여 A국 국민 수천 명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앓았다. 사실조사 결과 B국 유엔평화유지군의 업무상 부주의로 인하여 전염병이 발생했음이 밝혀졌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 1) A국이 유엔을 상대로 국제법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하시오. (15점)
- 2) A국이 B국과 유엔 회원국을 상대로 국제법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하시오. (15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책임 주체를 UN, 병력 공여국, 회원국 전체로 나누어 각각의 귀속 기준을 서술하게 한다. **연결 개념** 국제기구의 법인격, 국제기구 책임 초안 제7조(실효적 통제), UN의 소송면제와 청구위원회, 회원국의 2차 책임 부정. **함정** ‘UN 회원국’을 B국과 묶어 같은 논리로 처리하면 안 된다. B국은 실효적 통제의 문제이고, 회원국은 법인격 분리의 문제이다.

■ 답안 개요

소문	쟁점	근거 조문·판례	결론	분량
1)	UN에 대한 책임 추궁	손해배상 권고적 의견(1949) · 국제기구 책임 초안 제3조, 제4조, 제7조 · UN 특권면제협약 제2절, 제29절 · ICJ규정 제34조 제1항	UN 책임 인정, 실현은 청구 절차·교섭	약 1,000자
2)	B국과 회원국에 대한 책임 추궁	국가책임초안 제4조 · 국제기구 책임 초안 제62조 · 베라미(2007) · 누하노비치(2013) · 국제주석이 사회 사건(1989)	B국은 실효적 통제 시 책임, 회원국은 부정	약 900자

예시답안 — 2017 제2문

평화유지군의 위법행위로 피해가 생겼을 때 책임 주체는 UN인지, 병력 공여국인지, 회원국 전체인지가 문제된다. 기준은 해당 행위에 대한 ‘실효적 통제’이다.

1) A국의 UN 상대 책임 추궁

(1) UN의 국제법 주체성과 책임. ICJ는 손해배상 권고적 의견(1949)에서 UN이 국제법인격을 가지고 국제적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권리 주체는 의무 주체이기도 하므로, UN도 자신의 국제위법행위

에 대해 책임을 진다. ILC 국제기구 책임 초안(2011, 이하 'ARIO') 제3조는 국제기구의 모든 국제위법행위가 그 기구의 책임을 수반한다고 하고, 제4조는 그 요소로 귀속과 국제의무 위반을 든다.

(2) 귀속. 평화유지군은 안전보장이사회가 설치한 UN의 보조기관이며, 각국 병력은 UN 지휘 아래 배치된다. ARIO 제7조에 따르면 국가가 국제기구의 처분에 맡긴 기관의 행위는 국제기구가 그 행위에 실효적 통제를 행사하는 경우 그 기구의 행위로 본다. 평화유지 작전의 운용과 부대의 위생 관리가 UN 작전 지휘 아래 이루어졌다면 B국 부대의 부주의는 UN에 귀속된다. UN도 실무상 평화유지군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해 왔다.

(3) 의무 위반. UN은 일반국제법과 주둔국협정(SOFA) 등에 구속된다. 업무상 부주의로 전염병을 퍼뜨려 수천 명의 피해를 낳은 것은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다할 의무의 위반으로 볼 수 있다.

(4) 청구 방법과 한계. UN은 UN 특권면제협약(1946) 제2절에 따라 회원국 법원에서 소송면제를 누리므로 피해자가 국내 법원에서 UN을 상대로 소송하기 어렵다. 대신 협약 제29절은 UN이 사법적 성격의 분쟁에 대해 적절한 해결 방식을 마련하도록 하고, 주둔국협정은 청구위원회를 두는 경우가 많다. ICJ 정송 절차의 당사자는 국가에 한정되므로(ICJ규정 제34조 제1항) A국은 UN을 ICJ에 제소할 수 없고, 교섭이나 총회를 통한 권고적 의견 요청이 가능하다. 아이티 콜레라 사례처럼 UN이 법적 책임을 부인하면서 도의적 차원의 대응에 그친 경우도 있어 구제 공백이 지적된다.

결국 A국은 국제법상 UN의 책임을 주장할 수 있으나, 그 실현은 UN 내부의 청구 절차와 교섭에 의존한다.

2) A국의 B국과 UN 회원국 상대 책임 추궁

(1) 병력 공여국 B국. 공여국은 파견 부대에 대한 징계권과 형사관할권을 보유한다. 따라서 문제된 행위가 UN이 아니라 B국의 실효적 통제 아래 있었다면 B국에 귀속된다(국가책임초안 제4조). 예컨대 파병 전 장병의 검역·보건 관리 소홀이나 국가별 지휘 계통에서 이루어진 위생 관리 결정은 B국의 통제 영역이다. 귀속 기준에 관해 유럽인권재판소는 베라미·사라마티 결정(2007)에서 안보리의 '궁극적 권한과 통제'를 기준으로 UN에 귀속시켰으나, 네덜란드 대법원은 누하노비치 판결(2013)에서 실효적 통제를 기준으로 네덜란드 부대의 행위를 네덜란드에 귀속시켰고, 같은 행위가 UN과 국가 모두에 귀속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B국의 실효적 통제가 입증되면 A국은 B국에 국가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 경우 B국은 국가면제를 이유로 국가 간 책임까지 피할 수는 없다.

(2) UN 회원국. 국제기구는 회원국과 구별되는 법인격을 가지므로 회원국은 회원국이라는 사실만으로 기구의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영국 법원도 국제주석이사회 사건(1989)에서 회원국의 2차적 책임을 부인하였다. ARIO 제62조는 회원국이 책임을 수락하였거나 피해 당사자가 그 책임에 의존하도록 유도한 경우에만 회원국이 책임을 진다고 한다. 사안에서는 그런 사정이 없으므로 A국은 UN 회원국 전체에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결론. 평화유지군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UN에 귀속되므로 A국은 UN에 책임을 주장할 수 있으나, UN의 면제와 ICJ 제소 불가로 인해 청구위원회와 교섭이 현실적 수단이다. 문제된 부주의가 B국의 실효적 통제 아래 있었다면 B국도 책임을 진다. UN 회원국은 책임 수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는다.

근거: 손해배상 권고적 의견(1949) · ILC 국제기구 책임 초안(2011)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62조 · UN 특권면제협약(1946) 제2절, 제29절 · 베라미·사라마티 결정(유럽인권재판소, 2007) · 누하노비치 판결(네덜란드 대법원, 2013)

2018 제2문

희토류 공급 불이행과 인도적 물자 제공 거부

총 40점 · 소문 2개 · 불가항력, 대응조치의 요건과 한계

제2문.

A국과 B국은 2007년 A국의 X지역 개발에 관한 Y조약을 체결하였다. Y조약에 따르면, A국은 B국에게 X지역의 희귀광물인 희토류를 매년 5만톤씩 공급하기로 하였고, B국은 A국에게 매년 전력 1백만kw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X지역 선주민인 알바스족의 거주와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 50만톤과 응급의료용품을 인도적 차원에서 매년 제공하기로 하였다. Y조약은 발효 이후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 그러나 2010년 C국이 A국의 우발적인 국경 충돌을 구실로 A국의 희토류 매장지를 공중 폭격하여 채굴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하였다. 이후 2011년에 이르러 A국이 B국에게 희토류를 공급하지 않았고, B국은 이에 대응하여 A국에게 전력 외에도 식량 및 응급의료용품을 제공하지 않았다.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에 의거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40점)

- 1) A국은 희토류 미공급에 대한 국가책임을 지는지를 검토하시오. (20점)
- 2) A국의 희토류 미공급에 대응하여 B국의 전력, 식량, 응급의료용품의 제공 거부가 허용되는지를 검토하시오. (20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1문의 결론(불가항력으로 위법성 조각)이 2문의 결론(대응조치 전제 부존재)을 결정하는 연쇄 구조이다. **연결 개념** 초안 제23조·제27조, 제49조~제52조, 특히 제50조 제1항 (b)·(c), 조약법협약 제60조 제5항과 제61조. **합정 2)**를 ‘대응조치 불가’로만 끝내면 배점의 절반을 놓친다. 가정적으로 A국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전력(가능)과 식량·의료용품(불가)을 구별해야 한다.

■ 답안 개요

소문	쟁점	근거 조문·판례	결론	분량
1)	희토류 미공급과 불가항력	초안 제1조, 제2조, 제12조, 제23조, 제27조 · 조약법협약 제61조, 제65조	불가항력으로 위법성 조각	약 1,100자
2)	전력·식량·의료용품 제공 거부	초안 제22조, 제49조~제52조 · 조약법협약 제60조 제5항 · 가브치코보(1997)	선행 위법행위 없음 → 불허, 가정적으로도 인도적 물자는 불허	약 1,200자

예시답안 — 2018 제2문

A국의 희토류 미공급은 제3국 C국의 폭격으로 매장지가 파괴된 결과이다. 1문은 불가항력에 의한 위법성 조각을, 2문은 B국의 대응이 대응조치로서 허용되는지를 묻는다. 2문의 결론은 1문의 결론에 좌우된다.

1) A국의 희토류 미공급에 대한 국가책임

- (1) 국가책임의 성립. 국가의 모든 국제위법행위는 국가책임을 수반하며(제1조), 그 요소는 국가에 귀속되는 행위가 국제의무 위반을 구성하는 것이다(제2조). A국 정부의 미공급은 A국에 귀속되고, Y조약상 매년 5만 톤 공급 의무와 합치하지 않으므로 일단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제12조). 따라서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지가 관건이다.
- (2) 불가항력의 요건.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저항할 수 없는 힘이나 예견할 수 없는 사건으로 그 상황에서 의무 이행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만 제2항은 ① 불가항력 상황이 이를 원용하는 국가의 행위에 단독으로 또는 다른 요인과 결합하여 기인한 경우, ② 그 국가가 그 상황 발생의 위험을 떠안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3) 사안의 포섭. 첫째, 제3국의 공중 폭격은 A국의 통제를 벗어난 저항할 수 없는 힘이다. 둘째, 조약은 'X지역의' 희토류 공급을 정하고 있으므로 매장지가 채굴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되면 이행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단순히 이행이 어렵거나 비용이 늘어난 경우와 다르다. 셋째, C국이 A국의 우발적 국경 총격을 '구실'로 삼았다는 점이 제2항 (a)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ILC 주석은 원용국의 기여가 상황 발생에 실질적이어야 한다고 본다. 우발적 총격은 대규모 폭격과 균형이 맞지 않는 구실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기여로 보기 어렵다. 넷째, Y조약이 전쟁이나 폭격 위험을 A국이 부담한다고 정한 사정도 없다.
- (4) 효과와 한계. 따라서 A국의 미공급은 불가항력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나 제27조에 따라 조각사유가 사라지면 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하고, 그 행위로 인한 물질적 손실에 대한 보상 문제는 별도로 남는다. A국은 B국에 사유를 통보하고 복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매장지 파괴가 영구적이라면 A국은 조약법협약 제61조의 후발적 이행불능을 원용하여 조약의 종료나 시행정지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제65조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편 C국은 무력행사로 A국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A국에 대해 국가책임을 진다.

2) B국의 전력·식량·응급의료용품 제공 거부의 허용 여부

- (1) 대응조치의 전제. 대응조치는 국제위법행위에 책임 있는 국가로 하여금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국이 취하는 조치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제22조, 제49조 제1항). 선행 위법행위가 대응조치의 필수 전제이다. 가브치코보·나기마로스 사건(1997)도 대응조치는 다른 국가의 선행 국제위법행위에 대응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1)에서 본 것처럼 A국의 미공급은 불가항력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B국은 대응조치를 취할 전제가 없다. 따라서 B국의 제공 거부는 대응조치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 (2) 조약법상 정지 가능성. 다만 조약법의 측면에서 보면, A국이 이행불능으로 조약을 정지하거나 쌍무적 반대급부 관계가 사라진 경우 B국도 상응하는 전력 제공 의무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다. 이는 대응조치가 아니라 조약법상 정지의 문제이며,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한다.
- (3) 설령 A국에 위법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적으로 불가항력 요건이 부정되어 A국이 책임을 진다고 보자. 이 경우에도 대응조치는 다음 제한을 지켜야 한다. ① 제50조 제1항 (b)는 대응조치가 기본적인 권을 보호할 의무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c)는 보복을 금지하는 인도적 성격의 의무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② 제51조는 입은 피해에 비례할 것을 요구한다. ③ 제52조는 이행 요구, 대응조치 결정의 통고와 교섭 제의를 요구한다.
- 전력 제공은 희토류 공급과 대가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의무이므로, 절차와 비례성을 지키면 대응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식량과 응급의료용품은 X지역 선주민 알바스족의 '거주와 생존에 필수적인' 물자로서 '인도적 차원에서'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끊는 것은 제3자인 주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권리를 직접 침해하므로 제50조 제1항 (b)에 따라 대응조치로 허용되지 않는다. 조약법협약 제60조 제5항

도 인도적 성격의 조약에 포함된 인간 보호 규정은 상대방의 위반을 이유로 정지할 수 없다고 하여 같은 취지를 보여 준다.

결론. A국의 미공급은 제3국 폭격으로 인한 불가항력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A국은 국가책임을 지지 않는다(다만 사유 소멸 후 이행 재개와 보상 문제는 남는다). 따라서 선행 위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B국의 제공 거부는 대응조치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설령 A국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전력 제공 거부는 비례성과 절차 요건을 갖추어야 허용되고, 알바스족의 생존을 위한 식량·의료용품 거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국가책임초안 제1조, 제2조, 제12조, 제23조, 제27조, 제49조~제52조 · 조약법협약 제60조 제5항, 제61조 · 가브리코보·나기마로스 사건(1997)

2019 제1문

반란단체의 수용과 회사·주주의 외교적 보호

40점 · 단일 문항 · 반란단체 행위의 귀속, 법인의 국적, 국내구제 완료

제1문.

A국의 국민인 甲은 B국에서 B국의 회사법에 따라 X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주주가 되었다. X주식회사는 주로 C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다. 한편, C국에서는 정부군과 반란군 사이에 내전이 발생하였는데, 내전 과정에서 반란군은 점령지 내에 위치한 X주식회사의 재산을 보상 없이 수용하였다. 이후 반란단체는 내전에서 승리하여 신정부 수립에 성공하였다. 위 수용행위와 관련하여 A국 또는 X주식회사가 C국 법원에서 C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는 없다. 다만, C국의 대법원은 유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전례가 있다. 반란단체가 X주식회사를 수용한 행위와 관련하여 A국 또는 B국이 각각 C국에 대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40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외교적 보호의 세 요건(위법행위, 국적, 국내구제)을 빠짐없이 검토하게 한다. **연결 개념** 초안 제10조, 바르셀로나 트랙션, 외교적 보호 초안 제9조·제11조·제12조·제15조, 인터한델, ELSI. **합정** ‘제소한 바 없다’와 ‘대법원 기각 전례’는 국내구제 완료와 그 무익성 예외를 쓰라는 신호이다. 반란단체 행위의 귀속(제10조)을 생략하면 논리의 출발점이 빠진다.

■ 답안 개요

단계	쟁점	근거 조문·판례	결론	분량
①	반란단체 수용의 귀속과 위법성	국가책임초안 제10조 제1항	C국에 귀속, 무보상 수용은 위법	약 400자
②	회사 국적국 B국의 보호권	외교적 보호 초안 제9조 · 바르셀로나 트랙션(1970) · 노테봄(1955)	B국에 보호권	약 500자
③	주주 국적국 A국의 보호권	초안 제11조, 제12조 · 디알로(2007)	예외 불해당 → 부정	약 600자
④	국내구제 완료와 무익성	초안 제14조, 제15조 (a) · 인터한델(1959) · ELSI(1989)	확립된 판례로 무익하면 면제	약 600자

예시답안 — 2019 제1문

외교적 보호는 자국민이 다른 국가의 국제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국적국이 자신의 권리로서 그 국가의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이다. 그 요건은 ① 상대국의 국제위법행위, ② 피해자와 보호국 사이의 국적 연결, ③ 국내구제 완료이다. 사안에서는 반란단체의 행위가 C국에 귀속되는지, 회사 X의 피해에 대해 설립국 B와 주주 국적국 A 중 누가 보호권을 가지는지, 국내구제를 거치지 않은 점이 문제된다.

1) C국의 국제위법행위: 반란단체 행위의 귀속

국가책임초안 제10조 제1항은 새 정부가 된 반란단체의 행위는 그 국가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한다. 반란 단체는 내전 중에는 국가기관이 아니지만, 승리하여 정부가 되면 그 운동 과정의 행위까지 국가가 책임진다. 반란단체가 내전에서 승리하여 신정부를 수립하였으므로, X회사 재산의 수용은 C국의 행위로 귀속된다. 외국인 재산의 수용은 공공 목적, 비차별, 보상을 요건으로 하며, 보상 없는 수용은 국제법 위반이다 (보상 기준에 관하여는 충분·실효·신속 보상과 ‘적절한 보상’의 대립이 있으나, 무보상은 어느 기준에서도 위법이다).

2) 회사의 국적국 B국의 외교적 보호

(1) 법인의 국적. ICJ는 바르셀로나 트렉션 사건(1970)에서 회사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설립되고 등록사무소를 둔 국가에 있다고 하였다. ILC 외교적 보호 초안 제9조도 회사가 설립된 국가를 국적국으로 하되, 회사가 다른 국가 국민에 의해 지배되고 설립국에서 실질적 영업활동이 없으며 경영 본거지와 재정적 통제가 모두 다른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를 국적국으로 본다.

(2) 사안의 적용. X회사는 B국 회사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사업은 주로 C국에서 하지만, 경영 본거지와 재정적 통제가 모두 A국에 있다는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B국이 X회사의 국적국으로서 외교적 보호권을 가진다. 노테봄 사건(1955)의 ‘진정한 연관’은 회사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3) 주주의 국적국 A국의 외교적 보호

(1) 원칙.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회사가 입은 피해에 대해 주주의 국적국은 외교적 보호를 할 수 없다(바르셀로나 트렉션). 회사 재산이 수용되어 주식 가치가 떨어진 것은 주주의 ‘이익’이 침해된 것일 뿐 ‘권리’가 침해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 예외. 초안 제11조는 ① 회사가 피해와 무관한 이유로 설립국 법상 소멸한 경우, ② 회사가 피해 당사자해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 국가에서의 설립이 영업의 전제조건으로 요구된 경우에 주주 국적국의 보호를 인정한다. 사안의 X회사는 B국 회사로서 존속하며 C국 회사도 아니므로 어느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ICJ도 디알로 사건(선결적 항변, 2007)에서 ‘대위에 의한 보호’를 관습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3) 주주 고유 권리의 침해. 초안 제12조는 배당청구권, 주주총회 참석·의결권 등 주주 자신의 권리가 직접 침해된 경우에는 주주 국적국의 보호를 인정한다. 사안에서는 회사 재산이 수용되었을 뿐 甲의 주주권 자체가 직접 침해된 사정은 없다. 따라서 A국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국내구제 완료 원칙

(1) 원칙. 외교적 보호는 피해자가 가해국에서 이용 가능한 국내구제를 완료한 후에 행사할 수 있다(초안 제14조). 인터한델 사건(1959)은 이 원칙이 관습법이라고 하였고,

(2) 예외. 초안 제15조 (a)는 실효적 구제를 제공할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국내구제가 없거나 국내구제가 그러한 구제의 합리적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완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단순히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동일 쟁점에 관한 최고법원의 확립된 판례로 인해 청구가 명백히 무익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사안에서는 C국 대법원이 유사 사안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전례가 있으므로, 그 전례가 같은 쟁점(혁명 정부의 수용에 대한 배상)에 관한 것이라면 국내구제는 무익하여 완료 요건이 면제된다.

결론. 반란단체의 수용은 신정부 수립으로 C국에 귀속되는 국제위법행위이다. 외교적 보호권은 X회사의 설립국인 B국에 있으며, C국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로 국내구제가 무익하다면 B국은 국내구제 완료 없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주주 甲의 국적국인 A국은 회사 소멸 등 예외나 주주 고유 권리의 침해가 없으므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근거: 국가책임초안 제10조 · ILC 외교적 보호 초안(2006)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 바르셀로나 트렉션(1970) · 디알로 사건(2007, 2010) · 인터한델(1959) · ELSI(1989) · 노테봄(1955)

2026 제1문

자율무기통제협정 위반에 대한 대응

총 35점 · 소문 2개 · 중대한 위반과 종료·정지, 책임의 내용, 대응조치

제1문.

서로 인접하여 오랜 적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A국과 B국은 신흥 군비 분야에서 경쟁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A-B 자율무기통제협정'을 체결하였다. 본 협정은 발효된 상태이다. 본 협정은 치명적인 자율무기의 생산, 시험, 배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또한 협정 이행 여부는 두 국가에서 선정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위원회가 연 1회 이상의 현장 사찰을 실시하여 검증하기로 하였다.

최근 현장 사찰 결과, A국은 B국이 위 협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공중형 자율살상드론과 지상형 자율전투로봇 등 여러 기체를 지속적으로 생산·시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A국은 B국에 해당 기체들을 모두 폐기하고 치명적인 자율무기의 생산·시험을 중지함으로써 본 협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청했으나, B국은 이러한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총 35점)

- 1) A국이 B국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대응방법과 그 요건 및 근거에 관하여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단, A국과 B국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당사국임) (15점)
- 2) A국이 B국으로 하여금 위 협정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방법과 그 요건 및 근거에 관하여 UN국제법위원회(ILC)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규정 초안」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20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같은 위반에 대해 조약법(1문)과 국가책임법(2문)의 대응 수단을 나란히 정리하게 한다. **연결 개념** 조약법협약 제60조·제65조, 초안 제29조~제31조·제35조·제43조·제49조~제53조, 가브치코보 사건의 두 법체계 구별. **합정** 1)에서 제65조의 절차를 빠뜨리거나, 2)에서 대응조치의 절차 요건(제52조)과 무력 금지(제50조 제1항 (a))를 생략하기 쉽다. '이행을 유도하는 방법'이라는 문구는 대응조치의 목적(제49조)을 직접 가리킨다.

■ 답안 개요

소문	쟁점	근거 조문·판례	결론	분량
1)	중대한 위반에 따른 종료·정지	조약법협약 제26조, 제60조 제1항·제3항·제4항, 제65조~제67조, 제72조	종료 또는 전부·일부 정지 가능, 절차 준수	약 1,000자
2)	책임의 내용과 대응조치	초안 제2조, 제4조, 제12조, 제29조~제31조, 제35조~제37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제53조 · 가브치코보(1997)	중지·원상회복 청구, 비례적·비무력 대응조치	약 1,500자

예시답안 — 2026 제1문

B국은 협정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자율무기를 생산·시험하고 폐기 요청까지 거부하고 있다. A국의 대응은 두 갈래이다. 조약법은 조약 자체를 종료·정지할 수 있는지를, 국가책임법은 위반국에 어떤 의무가 생기고 피해국이 이행을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지를 다룬다.

1) 조약법협약에 따른 대응

(1) 위반의 확인. 유효한 조약은 당사국을 구속하고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제26조). B국의 생산·시험은 협정의 핵심 금지 의무 위반이다.

(2) 중대한 위반을 이유로 한 종료·정지.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양자조약의 일방 당사국이 중대한 위반을 하면 타방 당사국은 이를 조약 종료 또는 전부·일부 시행정지의 사유로 원용할 수 있다. 제3항은 중대한 위반을 ① 협약이 허용하지 않는 이행 거부, ② 조약 대상과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규정의 위반으로 정의한다. 치명적 자율무기의 생산·시험 금지는 이 협정의 ‘핵심 내용’이므로 그 위반은 ②에 해당하고, A국의 이행 요구를 거부한 것은 ①의 성격도 가진다. 따라서 A국은 협정을 종료하거나 시행을 정지할 수 있다. 협정 자체에 위반 시 처리 규정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한다(제60조 제4항). 공동위원회의 사찰·검증 절차가 위반 처리 절차까지 정하고 있다면 이를 먼저 거쳐야 한다.

(3) 선택의 폭. A국은 전부 종료 대신 일부 정지를 택할 수 있다. 군비통제 협정에서 전부 종료는 군비경쟁을 재개시킬 수 있으므로, 사찰 체계를 유지한 채 일부 의무만 정지하는 방식이 정책적으로 적절할 수 있다.

(4) 절차. 제65조에 따라 A국은 상대국에 주장과 조치·이유를 서면 통고해야 하고(제67조), 특별히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통고 후 3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조치를 실행할 수 없다. B국이 이의를 제기하면 UN헌장 제33조의 수단으로 해결을 모색해야 하며, 12개월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제66조에 따라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시행정지의 효과는 그 기간 동안 당사국을 이행 의무에서 해제하는 것이다(제72조).

2) 국가책임초안에 따른 이행 유도

(1) 국제위법행위의 성립. B국의 생산·시험은 국가기관의 행위로 B국에 귀속되고(제4조) 협정상 의무와 합치하지 않으므로(제12조) 국제위법행위이다(제2조). 협정은 양자조약이므로 A국은 피해국이다(제42조 (a)).

(2) 위반국의 의무. 첫째, 국제위법행위의 결과는 위반된 의무를 이행할 계속적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제29조). 둘째, 위법행위가 계속 중이면 이를 중지하고, 사정상 필요하면 재발방지의 확약과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제30조). 생산·시험의 중단이 이에 해당하며, 사찰 강화는 재발방지 보장이 될 수 있다. 셋째, 완전한 배상 의무를 진다(제31조). 배상은 원상회복(제35조), 금전배상(제36조), 만족(제37조)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금지된 기체의 폐기는 위법행위 이전 상태를 회복하는 원상회복에 해당한다.

(3) 책임의 추궁. A국은 B국에 청구를 통고하면서 중지와 배상의 형태를 특정할 수 있다(제43조).

(4) 대응조치. B국이 계속 거부하면 A국은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응조치는 위반국이 중지와 배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허용되고(제49조 제1항), 일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한정되며(제2항), 가능한 한 원래 의무의 이행 재개가 가능한 방식이어야 한다(제3항). 제한은 다음과 같다. ① 무력의 위협이나 행사 금지, 기본적 인권 보호 의무, 보복을 금지하는 인도적 의무, 강행규범상 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제50조 제1항). 따라서 B국의 무기 시설을 공격하는 무력 대응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당사국 간 분쟁해결 절차와 외교관·공관 불가침은 존중해야 한다(제50조 제2항). ③ 피해에 비례해야 한다(제51조). 가브치코보·나기마로스 사건(1997)은 비례성을 결여한 조치를 적법한 대응조치로 인정하지 않았다. ④ 절차적으로 먼저 이행을 요구하고, 대응조치 결정을 통고하며 교섭을 제의해야 한다

(제52조 제1항). 다만 권리 보전을 위한 긴급한 대응조치는 가능하다(제2항). 위법행위가 중지되고 분쟁이 구속력 있는 재판소에 계속 중이면 대응조치를 정지해야 하며(제3항), 위반국이 의무를 이행하면 즉시 종료해야 한다(제53조). 예컨대 B국과의 다른 조약상 통상 혜택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위법하지 않은 비우호적 조치(보복조치, 예: 원조 중단)는 이러한 제한 없이 가능하다.

(5) 조약법과의 관계. 가브치코보·나기마로스 사건에서 ICJ는 조약의 존속은 조약법이, 조약 불이행의 위법성과 결과는 국가책임법이 판단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A국은 조약을 유지하면서 대응조치로 이행을 압박할 수도 있고, 조약을 종료·정지하는 동시에 이미 발생한 위반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결론. A국은 조약법협약상 중대한 위반을 이유로 협정 전부 또는 일부의 종료·정지를 원용할 수 있으나 제65조의 통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가책임초안상 B국은 생산·시험을 중지하고 재발방지를 보장하며 금지 기체를 폐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를 지고, A국은 이행 요구와 통고 등 절차를 갖추어 비례적·가역적인 비무력 대응조치로 이행을 유도할 수 있다.

근거: 조약법협약 제26조, 제60조, 제65조~제67조, 제72조 · 국가책임초안 제2조, 제4조, 제12조, 제29조~제31조, 제35조~제37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제53조 · 가브치코보·나기마로스 사건(1997)

제5장

해양법

영해의 무해통항과 형사관할권 · 국제해협 통항 · EEZ의 연안국 권한 · 선박 충돌 · 추적권 · 섬과 저조
고지 | 기출 4문항: 2017-3, 2018-3, 2023-1, 2025-1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

5-1 핵심 개념	66
5-2 기출 풀이	69
2017 제3문 군함과 잠수함의 국제해협 통항	69
2018 제3문 영해 통항 상선 내 살인과 인도·관할권	71
2023 제1문 EEZ 급유와 선박 충돌, 공해상 추적·나포	73
2025 제1문 영해 통항 선박 수사, 저조고지 위 인공기지, EEZ 충돌	75

5-1 핵심 개념

해양법 문항은 ‘어느 수역에서, 누구의 선박이, 무엇을 했는가’를 먼저 정리하면 적용 조문이 정해진다. UN해양법협약(UNCLOS)의 조문 번호를 수역별로 묶어 기억하자. 영해 제2조~제32조, 국제해협 제34조~제45조, EEZ 제55조~제75조, 공해 제86조~제120조이다.

영해와 무해통항

연안국의 주권은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내)에 미친다(제2조, 제3조). 모든 국가의 선박은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가진다(제17조). 통항은 계속적이고 신속해야 하며(제18조), 연안국의 평화·공공질서·안전을 해치지 않아야 무해하다(제19조 제1항). 제19조 제2항은 무력 위협, 무기 훈련, 정보 수집, 고의적이고 중대한 오염, 어로 등을 유해 행위로 열거한다. 잠수함은 해면 위로 항행하고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제20조). 연안국은 무해하지 않은 통항을 방지할 수 있고(제25조),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군함에 즉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제30조).

대립 구도

무해통항(잠수함 부상, 정지 가능) ↔ 통과통항(잠항 가능, 정지 불가)

쓰이는 기출 2017-3, 2018-3, 2025-1 (1)

답안 속 문장

“군함의 영해 통항 시 사전통고를 요구하는 국가 관행이 있으나 협약에 명시적 근거는 없으며, 그 허용 여부는 다투어진다.”

영해 통항 선박에 대한 형사관할권

연안국은 영해를 통항하는 외국 선박 내에서 통항 중 발생한 범죄에 대해 체포·수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 예외는 ① 결과가 연안국에 미치는 경우, ② 연안국 평화나 영해 질서를 교란하는 경우, ③ 선장이나 기국 외교관·영사의 요청, ④ 마약 불법거래 진압이다(제27조 제1항). 그러나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 중인 선박에 대해서는 자국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제2항). 선장이 요청하면 기국 외교관·영사에게 통보해야 하고(제3항), 항행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제4항). 영해 진입 전 범죄로 외국 항구에서 와서 통과만 하는 선박에는 원칙적으로 조치할 수 없다(제5항).

쓰이는 기출 2018-3 (2), 2025-1 (1)

답안 속 문장

“X호는 연안국 항구를 떠나 영해를 통항 중이므로 제27조 제1항의 제한이 아니라 제2항이 적용되어, 연안국은 자국 법령에 따라 선박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국제해협과 통과통항

공해나 EEZ의 한 부분과 다른 부분 사이의 국제항행용 해협에서 모든 선박과 항공기는 방해받지 않는 통과통항권을 가진다(제37조, 제38조 제1항). 통과통항은 계속적이고 신속한 통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이며(제38조 제2항), 해협연안국은 이를 방해하거나 정지할 수 없다(제44조). 통과 중인 선박은 무력 위협을 삼가고 통상적 방식에 부수되지 않는 활동을 삼가야 한다(제39조 제1항). 해협 안에 비슷한 편의의 공해·EEZ 항로가 있거나(제36조), 섬과 본토로 형성되고 섬 바다 쪽에 비슷한 항로가 있거

나(제38조 제1항 단서), 공해·EEZ와 외국 영해를 잇는 해협(제45조)에는 정지할 수 없는 무해통항이 적용된다. 코르푸 해협 사건(1949)은 평시 군함의 국제해협 무해통항권을 인정하였다.

대립 구도

해협연안국의 주권 ↔ 국제항행의 자유

쓰이는 기출 2017-3

답안 속 문장

“잠수함의 통상적 항행 방식은 잠항이므로 통과통항 중인 잠수함은 해면 위로 부상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EEZ에서의 연안국 권한

연안국은 EEZ(200해리 이내)에서 자원의 탐사·개발·보존·관리를 위한 주권적 권리와 인공섬·해양과학조사·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관할권을 가진다(제56조 제1항). 다른 국가는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누리며 공해 규정이 양립하는 한 적용된다(제58조). 연안국은 조업 외국인에 대한 조건을 정할 수 있고(제62조 제4항), 어업 법령 집행을 위해 승선·검색·나포·사법절차를 할 수 있으나, 보석금 예치 시 신속 석방해야 하고, 합의가 없으면 구금형을 부과할 수 없으며, 기국에 통고해야 한다(제73조). ITLOS는 M/V 버지니아 G호 사건(2014)에서 조업 어선에 대한 급유 규제를 연안국 권한으로 인정하였다. 인공섬·시설은 섬의 지위가 없고 경계획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제60조 제8항, 대륙붕은 제80조).

대립 구도

자원 관련 사항(연안국 관할) ↔ 항행 관련 사항(기국 관할)

쓰이는 기출 2023-1, 2025-1 (2)(3)

답안 속 문장

“EEZ에서 연안국의 권한은 영역 주권이 아니라 자원·환경과 관련된 기능적 권리이므로, 항행 중의 선박 충돌은 연안국 관할 사항이 아니다.”

선박 충돌과 형사관할권

공해(제58조 제2항에 따라 EEZ 포함)에서 선박 충돌 등 항행사고로 선장·선원의 형사·징계 책임이 문제 되면 기국이나 그 사람의 국적국만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제97조 제1항). 기국 이외의 당국은 수사 목적으로도 선박을 나포·억류할 수 없다(제3항). 이는 피해 선박 기국(터키)의 관할권을 인정한 로터스호 사건(PCIJ, 1927)의 결론을 1952년 브뤼셀 협약과 1958년 공해협약을 거쳐 뒤집은 것이다.

쓰이는 기출 2023-1 (1), 2025-1 (3)

답안 속 문장

“피해자가 연안국 국민이라도, EEZ에서의 선박 충돌에 대한 형사 절차는 제97조에 따라 기국 또는 가해자 국적국만 개시할 수 있다.”

추적권

연안국은 외국 선박이 자국 법령을 위반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추적할 수 있다. 추적은 선박이 내수·영해·접속수역(EEZ 법령 위반이면 EEZ) 안에 있을 때 시작되어야 하고,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공해에서도 계속할 수 있다(제111조 제1항, 제2항). 선박이 자국이나 제3국 영해에 들어가면 종료한다(제3항). 시각·청각 정지신호가 선행되어야 하며(제4항), 군함·군용항공기나 표시된 정부 선박·항공기만 할 수 있다(제5항). 항공기는 선박 등이 인수할 때까지 스스로 추적해야 한다(제6항). 요건은 누적적이며(M/V 사이가호(제2호) 사건, ITLOS 1999), 정당하지 않은 나포에는 손해배상 의무가 생긴다(제8항).

쓰이는 기출 2023-1 (2), 2025-1 (3)

답안 속 문장

“공해에서 처음 발견하여 정선명령을 한 것은 추적의 ‘개시’가 연안국 관할수역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추적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섬·저조고지·인공구조물

섬은 만조 시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이며(제121조 제1항), 영해·EEZ·대륙붕을 가진다. 다만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EEZ와 대륙붕을 가지지 않는다(제3항). 저조고지는 간조 시에는 드러나고 만조 시에는 잠기는 자연 지형으로, 영해 안에 있으면 기선으로 쓸 수 있으나 독자적 영해는 없다(제13조). 저조고지는 전유될 수 없다(니카라과/콜롬비아 2012, 남중국해 중재 2016). 인공 구조물은 섬의 지위를 갖지 않으며(제60조 제8항), 인위적 변경으로 지형의 법적 지위를 바꿀 수 없다(남중국해 중재).

대립 구도

자연적 형성(섬) ↔ 인위적 구조물(지위 없음) · 섬 ↔ 암석 ↔ 저조고지 ↔ 수중 지형

쓰이는 기출 2025-1 (2)

답안 속 문장

“만조 시 잠기는 암초 위에 수면 위로 솟은 구조물을 세워도 그것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가 아니므로 섬이 되지 않는다.”

5-2 기출 풀이

2017 제3문

군함과 잠수함의 국제해협 통항

총 30점 · 소문 2개 · 무해통항과 통과통항의 대비

제3문.

X해협은 A국 영해로 구성된 국제항행용 수로이다. A국 인근 공해상에서 훈련 중이던 B국의 해군 함대는 C국과의 연합훈련을 위해 X해협을 통과하여 C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진출하고자 하였다. B국의 함대는 군함과 해수면 아래로 항해중인 잠수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 1) A국은 B국 함대가 사전통고 없이 자국 영해에 진입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A국이 B국 함대에 대하여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 2) B국이 A국의 퇴거 요구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같은 해협을 두고 연안국은 무해통항 체제로, 통항국은 통과통항 체제로 논증하게 하는 ‘양측 변론형’ 문제이다. **연결 개념** 제17조~제20조, 제25조, 제30조, 제36조~제39조, 제44조, 제45조, 코르푸 해협. **합정** 두 소문의 결론이 달라야 한다는 강박으로 양쪽을 모두 ‘타당’하다고 쓰면 안 된다. 1)은 A국이 원용할 수 있는 ‘근거’를, 2)는 B국의 ‘반박 근거’를 쓰되,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는지 결론에서 정리한다.

■ 답안 개요

소문	쟁점	근거 조문·판례	결론	분량
1)	A국의 퇴거 요구 근거	UNCLOS 제2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5조, 제30조, 제36조, 제38조 제1항 단서, 제45조	무해통항 해협이면 잠항·훈련은 퇴거 사유	약 1,000자
2)	B국의 반박 근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4조 · 코르푸 해협(1949)	공해-EEZ 해협이면 통과통항 → 사전통고·부상 불요	약 1,000자

예시답안 — 2017 제3문

X해협은 A국 영해로만 구성된 국제항행용 해협이다. A국은 영해에 대한 주권과 무해통항 제도를, B국은 국제해협의 통과통항 제도를 근거로 삼게 된다. 어느 제도가 적용되는지가 결론을 가른다.

1) A국이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1) 영해 주권. 연안국의 주권은 영해에 미친다(UNCLOS 제2조). 해협이 A국 영해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A국의 주권 아래 있다.

(2) 무해통항 제도의 적용 주장. 외국 선박은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가지지만(제17조), 통항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아야 하며, 제19조 제2항은 무기를 사용하는 훈련이나 연습 등을 유해한 행위로 열거한다. 또한 잠수함과 그 밖의 잠수 항행기기는 영해에서 해면 위로 항행하고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제20조). A국은 X해협이 다음 경우에 해당하여 통과통항이 아니라 무해통항이 적용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① 해협 안에 항행상·수로상 특성에서 비슷한 편의가 있는 공해나 EEZ 통과 항로가 있는 경우(제36조), ② 해협이 연안국의 섬과 본토로 형성되고 섬 바다 쪽에 비슷한 편의의 항로가 있는 경우(제38조 제1항 단서), ③ 공해·EEZ의 일부와 외국 영해 사이의 해협인 경우(제45조 제1항)이다. 이 경우 해협의 무해통항은 정지할 수 없지만(제45조 제2항), 잠수함은 부상 항행해야 한다.

(3) 퇴거 요구의 근거. 군함이 영해 통항에 관한 연안국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준수 요구를 무시하면 연안국은 즉시 영해를 떠나도록 요구할 수 있다(제30조). 연안국은 무해하지 않은 통항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25조 제1항). 잠수 항행은 제20조 위반이고, 연합훈련 목적의 함대 이동이 영해 안에서 훈련 활동을 수반한다면 제19조 제2항에 따라 유해하다. 또한 일부 국가는 군함의 영해 통항에 사전통고나 허가를 요구하는데, A국이 그런 국내법을 두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전통고 요구가 협약상 허용되는지는 국가 간에 다툼이 있다.

2) B국이 반박할 수 있는 근거

(1) 통과통항 제도의 적용. 제37조는 공해나 EEZ의 일부와 공해나 EEZ의 다른 부분 사이의 국제항행용 해협에 통과통항 제도를 적용한다. B국 함대는 A국 인근 공해에서 C국 EEZ로 이동하므로 X해협은 공해와 EEZ를 연결하는 해협이다. 제38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선박과 항공기는 방해받지 않는 통과통항권을 가지며, 통과통항은 해협의 계속적이고 신속한 통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항행의 자유의 행사이다(제38조 제2항). 이 권리는 군함에도 인정된다.

(2) 사전통고 불요. 통과통항에는 연안국의 사전통고나 허가 요구를 붙일 근거가 없다. 해협연안국은 통과통항을 방해할 수 없고 정지할 수도 없다(제44조). ICJ도 코르푸 해협 사건(1949)에서 공해의 두 부분을 연결하고 국제항행에 사용되는 해협에서 국가는 평시에 연안국의 사전 허가 없이 군함을 통항시킬 권리가 있다고 하였다. 이 사건은 해협의 지리적 위치와 국제항행 사용 사실을 기준으로 삼았다.

(3) 잠수 항행. 제39조 제1항 (c)는 통과 중인 선박에 계속적이고 신속한 통과와 '통상적 방식'에 부수되는 활동 이외의 활동을 삼가도록 한다. 잠수함의 통상적 항행 방식은 잠항이므로, 통과통항에서는 잠수함이 잠항한 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영해의 무해통항에 관한 제20조는 통과통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4) B국의 의무. 다만 B국 함대는 해협연안국의 주권·영토보전·정치적 독립에 대한 무력의 위협이나 행사를 삼가야 하고(제39조 제1항 (b)), 해협 안에서 훈련을 해서는 안 되며, 지체 없이 통과해야 한다. 이를 지키는 한 A국은 퇴거를 요구할 수 없다.

결론. X해협이 공해와 EEZ를 연결하는 국제항행용 해협이라면 통과통항 제도가 적용되어, B국 함대는 사전통고 없이, 잠수함은 잠항한 채 통과할 수 있고 A국의 퇴거 요구는 근거가 없다. A국의 주장은 해협이 제36조, 제38조 제1항 단서, 제45조의 예외에 해당하거나 B국 함대가 해협 안에서 훈련 등 통과와 무관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설득력을 가진다.

근거: UNCLOS 제2조, 제17조~제20조, 제25조, 제30조, 제36조~제39조, 제44조, 제45조 · 코르푸 해협 사건(1949)

2018 제3문

영해 통항 상선 내 살인과 인도·관할권

총 20점 · 소문 2개 · 범죄인인도, 제27조

제3문.

A국의 상선 X가 B국 영해를 항행하던 중 선내에서 C국 선장 甲이 D국 항해사 乙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C국과 B국 간에는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며, 양국 모두 범죄인인도와 관련된 다자조약의 당사국이 아니다. (A, B, C, D국은 모두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당사국임)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 1) B국이 甲을 C국에 인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10점)
- 2) B국이 甲에 대한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10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조약 없는 범죄인인도의 법적 성격(1문)과 영해 통항 선박에 대한 연안국 형사관할권의 한계(2문)를 묻는다. **연결 개념** 인도의 재량성, 쌍방가벌성·특정성·정치범 불인도, 인권상 인도 금지, 제27조 제1항의 예외. **합정** 제27조의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should not)’를 관할권 ‘부존재’로 서술하면 틀린다. 관할권은 있으나 선박 내 집행을 자제하라는 규정이다.

■ 답안 개요

소문	쟁점	근거 조문·판례	결론	분량
1)	조약 없는 인도의 가능성	일반국제법 · 죄령(1989)	의무 없음, 재량 인도 가능	약 500자
2)	통항 중 선박 내 범죄에 대한 관할권	UNCLOS 제2조, 제27조 제1항·제3항	관할권 있으나 선박 내 집행은 예외에 한정	약 800자

예시답안 — 2018 제3문

A국 상선이 B국 영해를 항행하던 중 C국 국민이 D국 국민을 살해하였다. 1문은 조약이 없는 상태의 범죄인인도를, 2문은 영해 통항 중 외국 선박 내 범죄에 대한 연안국 형사관할권을 묻는다.

1) B국이 甲을 C국에 인도할 수 있는지

- (1) 인도 의무의 부존재. 범죄인인도 의무는 조약에서 나오며 일반국제법상 인도 의무는 없다. B·C국 간에는 어떤 조약도 없으므로 B국은 인도 의무가 없다.
- (2) 인도의 재량. 그러나 의무가 없다는 것이 인도가 금지된다는 뜻은 아니다. B국은 국내법이 허용하면 상호주의나 국제예양에 따라 인도할 수 있다. 이때 일반적으로 쌍방가벌성(양국 모두에서 범죄일 것), 특정성(인도 사유가 된 범죄로만 처벌할 것), 정치범 불인도 원칙 등이 고려된다. 살인은 쌍방가벌성을 충족하고 정치범죄도 아니다. C국은 甲의 국적국으로서 속인주의에 따른 관할권을 가지므로 인도 청구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
- (3) 한계. 다만 인도 후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의 실질적 위험이 있으면 인권 의무상 인도할 수 없다(죄령 사건, 유럽인권재판소 1989).

2) B국이 甲에 대해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1) 영해 주권과 속지주의. 연안국의 주권은 영해에 미치므로(제2조) 영해를 항행하는 외국 선박 안의 범죄도 B국 영역 안의 범죄로서 B국의 입법·사법관할권 대상이 된다. 기국 A국도 기국주의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므로 관할권이 경합한다.

(2) 제27조의 제한. 그러나 제27조 제1항은 연안국이 영해를 통항하는 외국 선박 안에서 통항 중 발생한 범죄와 관련하여 사람을 체포하거나 수사하기 위해 선박 내에서 형사관할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의 예외를 둔다. ① 범죄의 결과가 연안국에 미치는 경우, ② 범죄가 연안국의 평화나 영해의 질서를 교란하는 종류인 경우, ③ 선장이나 기국의 외교관·영사가 연안국 당국에 지원을 요청한 경우, ④ 마약이나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 진압에 필요한 경우이다. 이는 관할권 자체가 아니라 선박 내 집행을 자제하도록 한 것이다.

(3) 사안의 적용. 선원 사이의 살인은 원칙적으로 선박 내부 질서의 문제이므로 결과가 B국에 미치지 않는다. 다만 살인은 중대한 범죄여서 연안국의 평화를 교란하는 종류로 볼 여지가 있고, 범인이 선박에 계속 있으면 승선자의 안전도 위협된다. 선장이 B국에 지원을 요청한다면 ③에 따라 B국은 승선하여 체포·수사할 수 있다. 또한 선박이 B국 항구에 들어오면 내수의 선박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 없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연안국이 조치할 때에는 선장의 요청이 있으면 기국 외교관·영사에게 통보해야 한다(제27조 제3항).

결론. B국은 조약이 없어 인도 의무는 없으나 국내법상 재량으로 인도할 수 있다. 또한 B국은 영해에서 발생한 범죄로서 관할권을 가지지만, 통항 중 선박 내 집행은 제27조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로 자제해야 한다.

근거: UNCLOS 제2조, 제27조 · 죄령 사건(유럽인권재판소, 1989)

2023 제1문

EEZ 급유와 선박 충돌, 공해상 추적·나포

총 30점 · 소문 2개 · EEZ 관할권, 제97조, 추적권

제1문.

A국 국적의 X선박은 B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 중이던 C국 국적의 Y어선에 연료를 판매한 후 자국으로 항해를 시작하려다 B국 국적의 Z어선과 충돌하였다. 충돌사고로 Z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2명이 사망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통보받은 B국 해양경찰은 항공기를 출동시켜 공해상에서 도주하고 있던 X선박을 발견하고 무선으로 정선명령을 하였다. X선박이 이에 응하지 않자 B국 해양경찰은 고속정을 출동시켜 공해상에서 X선박을 추적 및 나포하고 선장 등 관련자를 B국의 국내법에 따라 법원에 기소하였다. 선장 등 관련자에 대한 공소장에는 X선박이 B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료를 판매한 사실과 선박충돌로 선원이 사망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A국은 B국의 기소가 국제법 위반이라 주장하면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 1) B국 법원이 X선박의 행위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UN해양법협약상 적법한지 검토하시오. (20점)
- 2) B국 해양경찰이 X선박을 추적 및 나포한 것이 UN해양법협약상 적법한지 검토하시오. (10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공소장의 두 사실(급유, 충돌)을 분리하여 각각의 관할 근거를 판단하고, 추적권의 누적적 요건을 사실관계에 하나씩 대입하게 한다. **연결 개념** 제56조, 제58조, 제62조 제4항, 제73조, 제97조, 제111조, 버지니아 G호, 사이가호. **합정** 급유와 충돌을 묶어 '전부 적법' 또는 '전부 위법'으로 쓰면 감점이다. '공해상에서 발견'과 '무선 정선명령'은 추적 개시 장소와 신호 방식 요건을 검토하라는 신호이다.

■ 답안 개요

소문	쟁점	근거 조문·판례	결론	분량
1)	급유·충돌에 대한 B국 법원의 관할권	UNCLOS 제56조, 제58조, 제62조 제4항, 제73조, 제97조 · 버지니아 G호(2014) · 로터스호(1927)	급유는 관할(구금형 불가), 충돌은 관할 없음	약 1,300자
2)	추적·나포의 적법성	제92조, 제111조 제1항~제6항·제8항 · 사이가호(제2호)(1999)	공해에서 개시 → 위법, 배상 의무	약 900자

예시답안 — 2023 제1문

공소장의 두 사실(EEZ에서의 급유, 선박 충돌로 인한 사망)은 관할권 근거가 다르므로 나누어 본 뒤 추적·나포를 검토한다.

1) B국 법원의 관할권 행사의 적법성

(1) EEZ 관할권의 성격. EEZ에서 연안국은 자원의 탐사·개발·보존·관리를 위한 주권적 권리 등 기능적 권리만 가진다(제56조 제1항). 다른 국가는 항행의 자유를 누리며, 공해 규정(제88조~제115조)은 EEZ와 양립하는 한 EEZ에 적용된다(제58조 제1항, 제2항).

(2) 연료 판매(급유) 부분. 제62조 제4항은 EEZ에서 조업하는 외국 국민이 연안국의 보존 조치와 법령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규율 대상을 예시한다.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는 M/V 버지니아 G 호 사건(2014)에서 EEZ에서 조업 중인 외국 어선에 대한 급유를 규제하는 것은 제56조와 제62조 제4항에 따른 연안국의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B국 법령이 EEZ 내 조업 어선에 대한 급유를 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면, X선박의 무허가 급유에 대해 B국은 관할권을 가진다.

다만 제73조의 제한이 따른다. 연안국은 법령 준수를 위해 승선·검색·나포·사법절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제1항), 적정한 보석금이나 보증금을 예치하면 선박과 선원을 신속히 석방해야 하고(제2항), 다른 합의가 없으면 어업 법령 위반에 대한 처벌에 구금을 포함할 수 없으며(제3항), 나포 시 기국에 신속히 통고해야 한다(제4항). 따라서 B국은 급유 위반에 대해 벌금형만 부과할 수 있다.

(3) 선박 충돌 부분. 제97조 제1항은 공해에서 선박의 충돌이나 그 밖의 항행사고로 선장이나 선원의 형사·징계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기국이나 그 사람의 국적국의 사법·행정 당국에서만 형사·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한다. 제3항은 기국 외의 당국은 수사 목적으로도 선박을 나포하거나 억류할 수 없다고 한다. 이 규정은 제58조 제2항에 따라 EEZ에서의 충돌에도 적용된다. 이는 피해 선박 기국의 관할권을 인정한 로터스호 사건(1927)의 결론을 뒤집은 것이다. 충돌은 B국의 자원 관할권과 무관한 항행사고이므로 B국은 피해자가 자국민이라는 이유로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한 형사관할권은 기국 A국(또는 선장 등의 국적국)에 있다.

(4) 소결. B국 법원의 관할권은 급유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나 구금형을 부과할 수 없고, 충돌로 인한 사망 부분에 대해서는 제97조 위반으로 위법하다.

2) 추적 및 나포의 적법성

(1) 추적권의 요건. 제111조에 따르면 ① 연안국 당국이 외국 선박이 자국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제1항), ② 추적은 외국 선박이 내수·영해·접속수역, 또는 EEZ 관련 법령 위반의 경우에는 EEZ 안에 있을 때 시작되어야 하며(제1항, 제2항), ③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공해에서도 계속할 수 있다. ④ 외국 선박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시각·청각 정지신호를 한 후에만 추적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제4항). ⑤ 군함·군용항공기 또는 정부 업무에 사용되는 것으로 명확히 표시된 선박·항공기만 추적할 수 있고(제5항), 항공기가 정선명령을 한 경우 선박이나 다른 항공기가 이어받을 때까지 항공기 스스로 적극적으로 추적해야 한다(제6항). 이 요건들은 누적적이다(사이가호(제2호) 사건, 1999).

(2) 사안의 적용. 첫째, 추적의 근거가 된 위반은 무엇보다 충돌 사고인데, 이는 EEZ에 적용되는 B국 법령(자원 관련 법령) 위반이 아니므로 추적권의 대상이 아니다. 둘째, B국 항공기가 X선박을 발견하고 정선명령을 한 곳은 이미 공해였다. 추적은 위반 선박이 EEZ 안에 있을 때 시작되어야 하므로, 공해에서 처음 시작된 추적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셋째, 무선 명령이 제4항의 신호에 해당하는지도 다투어진다.

(3) 효과. 추적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해상 나포는 기국의 배타적 관할권(제92조)을 침해하며, 제111조 제8항에 따라 B국은 그로 인한 손실이나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결론. B국은 EEZ 내 조업 어선 급유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가지나 구금형을 과할 수 없고, 충돌 사고에 대해서는 제97조에 따라 관할권이 없다. 또한 추적이 공해에서 시작되었고 충돌은 추적권의 대상이 아니므로 추적·나포는 위법하며, A국은 이를 근거로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다룰 수 있다.

근거: UNCLOS 제56조, 제58조, 제62조 제4항, 제73조, 제97조, 제111조 · 로터스호 사건(PCIJ, 1927) · M/V 버지니아 G 호 사건(ITLOS, 2014) · M/V 사이가호(제2호) 사건(ITLOS, 1999)

2025 제1문

영해 통항 선박 수사, 저조고지 위 인공기지, EEZ 충돌

총 40점 · 소문 3개 · 제27조 제2항, 섬의 요건, 제97조

제1문.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40점)

〈글〉

(가) A국 항구를 떠나 그 영해를 통과 중인 B국 상선 X호 내에서 범죄가 발생하였다. 해당 범죄와 관련하여 A국은 상선 내에서 수사를 수행하고자 한다. 그러나 B국은 자국의 선박 내에서 발생한 범죄이고 X호 선장이 A국의 원조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국주의에 따라 처리해야 할 문제라며, A국의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

(나) C국과 D국 간의 분쟁 해역 내에 있는 밤섬(Chestnut Island)에 대해서 두 국가 간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밤섬은 만조 시 바다 속에 완전히 잠기는 암초이다. 그런데 밤섬에 지리적으로 보다 가까이 위치한 C국은 밤섬 위에 만조 시에서도 항상 수면 위에 노출되는 150 m 높이의 인공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여 이를 자국의 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F국 선박 甲호는 E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항해하던 중 E국 화물선 乙호와 충돌하여 乙호 선원 10명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E국 해양경찰은 F국 선박 甲호를 추적하여 E국 관할지역으로 예인하였다.

※ A, B, C, D, E, F국 모두 UN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의 당사국들이다.

- 1) (가)에서, A국이 해당 범죄에 대해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판단하시오. (10점)
- 2) (나)에서, 밤섬에 대한 C국과 D국의 영유권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C국이 밤섬 위에 설치한 인공 해양과학기지의 건설이 밤섬의 국제법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논하시오. (15점)
- 3) (다)에서, E국은 자국 법원에서 해당 사고의 책임자인 甲호 선장(F국 국적자)을 형사 소추할 수 있는지 판단하시오. (15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해양법의 세 쟁점을 독립된 사례로 묻는다. 각 사례에 숨어 있는 결정적 사실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연결 개념** 제27조 제2항, 제13조·제121조, 제60조 제8항·제80조, 제74조 제3항·제83조 제3항, 제97조. **합정** (가)는 ‘A국 항구를 떠나’라는 사실이 제2항을 끌어내는 열쇠이다. (나)는 ‘만조 시 잠긴다’는 사실로 섬이 아님을, ‘인공’이라는 사실로 지위 변경 불가를 이끌어야 한다. (다)는 2023-1과 같은 제97조 문제이다.

■ 답안 개요

소문	쟁점	근거 조문·판례	결론	분량
1)	내수를 떠난 통항 선박 내 수사	UNCLOS 제2조, 제27조 제1항~제4항	제2항 적용 → 수사 가능	약 600자
2)	밤섬의 영유권과 인공기지의 효과	제13조, 제121조 제1항, 제60조 제8항, 제80조, 제74조 제3항, 제83조 제3항 · 니카라과/콜롬비아(2012) · 남중국해(2016) · 가이아나/수리남(2007)	영유권 대상 아님, 기지는 지위에 영향 없음	약 1,200자
3)	EEZ 충돌 선장의 형사소추	제58조 제2항, 제97조, 제111조 · 로터스호(1927)	소추 불가, 예인도 위법	약 600자

예시답안 — 2025 제1문

세 사례는 영해·도서·EEZ라는 해양법의 세 영역에서 연안국 관할권의 한계를 묻는다.

1) (가) A국의 형사관할권 행사 가능 여부

연안국의 주권은 영해에 미친다(제2조). 제27조 제1항은 영해를 ‘통항하는’ 외국 선박 안에서 통항 중 발생한 범죄에 대해 연안국이 선박 내 체포·수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면서, 범죄 결과가 연안국에 미치는 경우, 연안국의 평화나 영해 질서를 교란하는 경우, 선장이나 기국 외교관·영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마약 불법거래 진압에 필요한 경우를 예외로 든다. 그러나 제27조 제2항은 제1항이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 선박 내에서 체포나 수사를 위해 자국 법령이 허용하는 조치를 취할 연안국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X호는 A국 항구(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과 중이다. 따라서 제27조 제2항이 적용되어, 제1항의 예외 사유나 선장의 요청이 없더라도 A국은 자국 법령에 따라 선박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다만 선장이 요청하면 조치 전에 기국 외교관·영사에게 통보하고 연락을 용이하게 해야 하며(제3항), 체포 여부와 방식을 정할 때 항행의 이익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제4항). B국의 주장은 제27조 제1항만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

2) (나) 밤섬의 영유권과 인공 해양과학기지의 영향

(1) 밤섬의 법적 성격. 섬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만조 시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 지역이다(제121조 제1항). 밤섬은 만조 시 완전히 잠기므로 섬이 아니다. 간조 시에 수면 위에 드러난다면 저조고지(제13조 제1항)이고, 간조 시에도 잠겨 있다면 해저의 일부인 수중 지형이다.

(2) 영유권 주장의 타당성. 저조고지는 육지 영토와 달리 독자적 영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ICJ는 니카라과/콜롬비아 영토·해양분쟁 사건(2012)에서 저조고지는 전유(appropriation)될 수 없다고 하였고, 남중국해 중재판정(2016)도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 저조고지가 본토나 섬으로부터 영해 폭 이내에 있으면 그 연안국 영해의 일부로서 연안국 주권에 속하고 영해 기선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제13조 제1항), 영해 밖에 있으면 자체 영해를 가지지 못한다(제13조 제2항). 수중 지형이라면 EEZ나 대륙붕의 해저로서 연안국은 주권이 아니라 주권적 권리만 가진다.

따라서 C국과 D국 모두 밤섬 자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밤섬의 귀속은 그것이 어느 국가의 영해 안에 있는지, 또는 양국 EEZ·대륙붕 경계획정 결과 어느 쪽 수역에 속하는지에 따라 정해진다. C국이 지리적으로 더 가깝다는 사실은 경계획정에서 고려될 수 있을 뿐 그 자체로 권원이 되지 않는다.

(3) 인공 해양과학기지의 영향. 첫째, 섬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여야 하므로 인공 구조물은 섬이 될 수 없다. 제60조 제8항은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은 섬의 지위를 가지지 않고 자체 영해를 가지지 못하며 영해·EEZ·대륙붕 경계획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80조는 이를 대륙붕에 준용한다. 남중국해 중재판정도 인위적 변경으로 저조고지나 수중 지형의 법적 지위를 바꿀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150 m 높이의 기지가 만조 시에도 수면 위에 있다는 사실은 밤섬의 지위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

둘째, 분쟁 수역에서의 일방적 건설 자체가 문제된다. 경계획정 합의 전까지 관련 국가는 실질적 잠정약정을 위해 노력하고 최종 합의를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제74조 제3항, 제83조 제3항). 가이아나/수리남 중재판정(2007)은 분쟁 수역에서 해양 환경에 영구적 물리적 변화를 가져오는 일방적 활동이 이 의무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대규모 고정 기지 건설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3) (다) E국의 甲호 선장 형사소추 가능 여부

제97조 제1항은 공해에서 선박의 충돌 등 항행사고로 선장의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기국이나 그 사람의 국적국에서만 형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은 기국 외의 당국은 수사 목적으로도 선박을 나포·억류할 수 없다고 한다. 이 규정은 제58조 제2항에 따라 EEZ에도 적용된다. 피해 선박 기국의 관할권을 인정한 로터스호 사건(1927)의 결론은 이로써 조약상 배제되었다.

사안의 충돌은 E국 EEZ에서 발생한 항행사고이고, 선장은 F국 국적이며 선박도 F국 선박이다. 피해자가 E국 선원이라도 E국은 형사소추할 수 없으며, 관할권은 F국에 있다. 또한 충돌은 EEZ의 자원 관련 법령 위반이 아니므로 제111조의 추적권 대상도 아니어서, E국이 甲호를 추적하여 예인한 것 자체가 위법이다. E국은 F국에 형사절차를 요청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해야 한다.

결론. A국은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 중인 X호에 대해 제27조 제2항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 밤섬은 섬이 아니어서 독자적 영유권의 대상이 아니고, 인공 기지는 그 지위를 바꾸지 못하며 분쟁 수역에서의 일방적 건설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 E국은 제97조에 따라 F국 선장을 형사소추할 수 없다.

근거: UNCLOS 제2조, 제13조, 제27조, 제58조, 제60조 제8항, 제74조 제3항, 제80조, 제83조 제3항, 제97조, 제111조, 제121조 · 니카라과/콜롬비아 영토·해양분쟁(2012) · 남중국해 중재(2016) · 가이아나/수리남 중재(2007) · 로터스호 사건(PCIJ, 1927)

제6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ICJ

평화적 해결 의무 · ICJ의 관할권 · 선결적 항변 · 잠정조치 · 판결의 효력과 집행 · 권고적 의견 | 기출 2문항:
2021-3, 2026-2 (관련: 2024-1, 2025-3)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

6-1 핵심 개념	79
6-2 기출 풀이	81
2021 제3문 차별철폐협정에 근거한 잠정조치와 관할권 항변	81
2026 제2문 대사관 점거, 잠정조치 불이행과 판결 집행	84

6-1 핵심 개념

ICJ 문항은 ‘재판소가 무엇을 심사하는가’를 단계별로 묻는다. 잠정조치 단계(일견 관할권과 긴급성) → 선결적 항변 단계(확정적 관할권과 수리가능성) → 본안 → 판결 집행(헌장 제94조)의 흐름을 기억하자. 권고적 의견의 요청 자격은 2025-3(제9장)에서 다룬다.

분쟁의 평화적 해결 의무

회원국은 국제분쟁을 국제평화와 안전,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헌장 제2조 제3항). 분쟁 당사자는 교섭, 심사, 중개, 조정, 중재, 사법적 해결, 지역기관·지역적 약정의 이용 등 스스로 선택하는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을 구해야 한다(제33조 제1항). 수단 선택의 자유가 원칙이므로 사법적 해결은 당사국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쓰이는 기출 2021-3, 2024-1, 2026-2

답안 속 문장

“평화적 해결 의무는 수단 선택의 자유를 전제로 하므로, ICJ의 관할권은 언제나 분쟁 당사국의 동의에 기초한다.”

ICJ의 관할권

쟁송 사건의 당사자는 국가에 한정된다(ICJ규정 제34조 제1항). 관할권은 ① 당사자가 회부하는 모든 사건(특별합의, 확대관할), ② 헌장이나 현행 조약에 특별히 규정된 모든 사항(분쟁회부 조항, 제36조 제1항), ③ 선택조항 수락선언(제36조 제2항)으로 성립한다. 관할권 다툼은 재판소가 결정한다(제36조 제6항). 분쟁회부 조항이 교섭 등 전치 요건을 두면 그 충족이 관할권 행사의 전제조건이다. ICJ는 조지아/러시아 사건(2011)에서 교섭이란 단순한 항의와 구별되는 진정한 해결 시도로서 조약의 대상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분쟁의 주제는 재판소가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하나의 사태가 여러 규범에 걸쳐 있어도 해당 조약의 해석·적용에 관한 부분에 관할권이 성립할 수 있다(석유시추시설 선결적 항변 1996).

대립 구도

일견 관할권(잠정조치 단계) ↔ 확정적 관할권(선결적 항변 단계)

쓰이는 기출 2021-3, 2024-1 (특별합의)

답안 속 문장

“분쟁회부 조항의 교섭 요건은 단순한 항의나 비난으로 충족되지 않으며, 조약의 대상 사항에 관한 진정한 해결 시도가 있어야 한다.”

잠정조치

재판소는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각 당사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잠정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제41조). 요건은 ① 일견 관할권, ② 주장된 권리의 개연성과 조치와의 연관성, ③ 회복 불가능한 손해의 위험, ④ 긴급성이다. 재판소는 신청과 다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ICJ규칙 제75조). 라그랑 사건(2001)은 규정의 대상과 목적, 두 정본의 조화로운 해석 등을 근거로 잠정조치 명령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확인하였고, 불이행은 그 자체로 국제의무 위반이다.

쓰이는 기출 2021-3 (1), 2026-2 (2)

답안 속 문장

“잠정조치 명령은 판결이 아니지만, 재판소가 구속력 있는 판결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규정의 목적에 비추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라그랑 사건, 2001).”

판결의 효력과 집행

판결은 당사자 사이에서 그 사건에 관하여만 구속력을 가지며(제59조), 종국적이고 상소할 수 없다(제60조). 회원국은 자국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ICJ의 결정에 따를 것을 약속한다(헌장 제94조 제1항). 당사자가 판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할 수 있고,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권고하거나 판결 집행을 위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제94조 제2항). 이 결정은 비절차사항으로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된다(제27조 제3항). 니카라과 사건(1986) 판결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미국의 거부권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대립 구도

판결의 법적 구속력 ↔ 집行的 정치적 재량

쓰이는 기출 2026-2 (3)

답안 속 문장

“판결 불이행에 대한 안보리의 개입은 재량이며, 분쟁 당사국이 상임이사국이면 거부권으로 집행이 저지될 수 있다.”

테헤란 인질 사건(1980)

1979년 이란 학생 시위대가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을 점거하고 외교관을 인질로 잡은 사건이다. ICJ는 ① 점거 초기 시위대의 행위는 이란에 귀속되지 않지만 이란이 공관과 외교관을 보호하지 않은 부작위가 외교·영사관계협약 위반이며, ② 이후 이란 지도자가 점거와 억류를 승인하고 유지하도록 한 결정으로 그 행위가 이란의 행위로 바뀌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외교법을 자기완결적 체제로 보았다. 재판소는 잠정조치 명령(1979)도 내렸으나 이란은 따르지 않았다.

쓰이는 기출 2026-2, 2022-2, 2016-2

답안 속 문장

“국가원수가 사인의 대사관 점거를 공개적으로 승인하고 그 상태를 유지시키면, 그 시점부터 점거는 국가의 행위가 된다(국가책임초안 제11조, 테헤란 사건).”

6-2 기출 풀이

2021 제3문

차별철폐협정에 근거한 잠정조치와 관할권 항변

총 40점 · 소문 2개 · 잠정조치 요건, 물적 관할, 교섭 전치 요건

제3문.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40점)

〈제시문〉

(가) A국과 B국은 국경을 접하고 있다. A국의 가르타 지역은 B국과 근접한 국경지역에 있다. 가르타 지역의 주민 대다수는 B국의 다수를 차지하는 주민과 종교 및 역사적 전통을 공유하고 있기에 B국에 편입되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가르타 지역 주민들이 A국 중앙정부에 대항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하자 B국은 이들의 활동을 지지하였다. A국은 가르타 지역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게 되자, 그 배후에는 B국이 있으며, B국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A국 중앙정부에 무장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가르타 지역 분리주의자들이 A국에 우호적인 주민을 조직적으로 확대 및 추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 A국과 B국간에는 1970년에 ‘양국간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를 위한 협정’(이하 ‘1970년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 A국은 1970년 협정을 근거로 A국에 우호적인 가르타 주민에 대한 학대 및 추방을 지원하는 B국의 행위를 금지하는 잠정조치 명령을 내려줄 것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신청하였다.

(라) A국은 B국을 상대로 1970년 협정의 위반을 이유로 ICJ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B국은 ICJ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B국의 이러한 항변에 따르면, A국이 주장하는 바는 무력사용금지 의무 위반, 국내문제 불간섭 의무 위반, 국제인도법 위반 여부일 뿐이며, 인종차별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B국은 A국이 제소하기 전에 양국 사이에 어떠한 교섭도 없었으므로, A국이 근거로 삼는 1970년 협정 제16조를 원용할 수 없기에 ICJ의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마) 1970년 협정 제1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우선 양국 간 교섭에 의하여 해결한다. 단 6개월 이내에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ICJ에 해당 분쟁을 회부한다.”

2) ICJ의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B국의 항변에 대해 ICJ가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시오. (20점)

1) A국의 신청에 대해 ICJ가 잠정조치 명령을 내릴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시오. (20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조지아/러시아 사건(인종차별철폐협약, 2008·2011)을 모델로, 잠정조치 단계와 선결적 항변 단계에서 관할권 심사의 강도가 다르다는 점을 묻는다. **연결 개념** 제41조, 잠정조치 4요건, 제36조 제1항·제6항, 분쟁 주제의 객관적 판단, 교섭 요건. **합정** 1)에서 관할권을 확정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2)의 ‘어떠한 교섭도 없었다’는 사실은 교섭 요건 불충족으로 관할권이 부정될 가능성을 정면으로 쓰라는 신호이다.

■ 답안 개요

소문	쟁점	근거 조문·판례	결론	분량
1)	잠정조치 결정 시 고려 사항	ICJ규정 제36조 제1항, 제41조 · ICJ규칙 제75조 · 라그랑(2001) · 조지아/러시아 잠정조치(2008)	일견 관할권·개연성·회복 불가능 손해·긴급성 → 명령 가능성 큼	약 1,200자
2)	관할권 항변(주제, 교섭 요건)	제36조 제6항 · 석유시추시설(1996) · 조지아/러시아(2011)	협정 관련 부분은 주제 충족, 교섭 없으면 관할권 부정	약 1,200자

예시답안 — 2021 제3문

A국은 ‘1970년 협정’의 분쟁회부 조항(제16조)을 근거로 ICJ에 제소하고 잠정조치를 신청하였다. 잠정조치 단계에서는 관할권이 ‘일견’ 인정되는지가, 선결적 항변 단계에서는 관할권이 ‘확정적으로’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두 단계의 심사 강도가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1) 잠정조치 명령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

ICJ규정 제41조는 재판소가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각 당사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잠정조치를 지시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ICJ는 라그랑 사건(2001)에서 잠정조치 명령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확인하였다. 판례상 확립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1) 일견 관할권(*prima facie jurisdiction*). 재판소는 본안 관할권을 확정할 필요는 없지만, 원고가 원용하는 조항이 일견 관할권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는 확인해야 한다. 1970년 협정 제16조는 협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을 ICJ에 회부하도록 하므로 ICJ규정 제36조 제1항의 ‘조약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에 해당한다. 협정 위반 여부에 관한 의견 대립이 있으면 분쟁이 일견 존재한다. 교섭 전치 요건은 이 단계에서 엄격히 심사되지 않는다. ICJ는 조지아/러시아 사건의 잠정조치 명령(2008)에서 같은 구조의 조항을 근거로 일견 관할권을 인정하였다.
- (2) 권리의 개연성(*plausibility*)과 연관성. 원고가 보호를 구하는 권리가 적어도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 권리와 신청한 조치 사이에 연관이 있어야 한다. A국에 우호적인 가르타 주민이 종교·역사적 배경을 이유로 학대·추방당하고 있다면 ‘모든 형태의 차별 금지’에 따른 권리가 침해될 개연성이 있다. 신청한 조치(학대·추방 지원 금지)는 이 권리 보전과 직접 관련된다.
- (3) 회복 불가능한 손해의 위험. 본안 판결 전에 권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실질적 위험이 있어야 한다. 조직적 학대와 추방은 생명·신체의 위해, 강제 이주로 인한 공동체 파괴를 수반하므로 금전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이다.
- (4) 긴급성. 본안 판결 전에 그 손해가 발생할 실제적이고 임박한 위험이 있어야 한다. 무장투쟁과 학대·추방이 진행 중이므로 긴급성이 인정된다.
- (5) 그 밖의 사항. 재판소는 신청된 것과 다른 조치나 당사자 쌍방에 대한 조치(예컨대 분쟁 악화 방지 의무)를 명할 수 있다(ICJ규칙 제75조). 잠정조치 결정은 본안 관할권이나 본안 판단을 예단하지 않는다. 또

한 B국 행위의 귀속(B국이 분리주의자를 실제로 지원하였는지)은 본안 문제이므로 이 단계에서 확정할 필요가 없다.

이상을 종합하면 ICJ는 잠정조치를 명할 가능성이 크다.

2) B국의 관할권 항변에 대해 고려할 사항

ICJ는 자신의 관할권에 관한 분쟁을 스스로 결정한다(ICJ규정 제36조 제6항). B국의 항변은 두 갈래이다.

(1) 분쟁의 주제(물적 관할). B국은 A국의 주장이 무력사용금지·불간섭·국제인도법 위반에 관한 것이지 차별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재판소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분쟁의 실제 주제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석유시추시설 사건(선결적 항변, 1996)에서 ICJ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반이 조약 규정의 범위에 속하는지, 즉 조약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인지를 심사하였다. 하나의 사태가 여러 국제법 규칙과 관련된다는 사실이 특정 조약에 관한 분쟁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다. 학대·추방이 종교·역사적 정체성에 따른 구별에 근거하고 B국이 이를 지원했다는 주장이라면 그 부분은 1970년 협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이다. 다만 재판소는 무력사용이나 인도법 위반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고, 협정과 관련된 범위에서만 관할권을 가진다.

(2) 교섭 전치 요건. 제16조는 분쟁을 ‘우선’ 교섭으로 해결하고 ‘6개월 이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ICJ에 회부한다고 한다. 이는 관할권 행사의 전제조건이다. ICJ는 조지아/러시아 사건의 선결적 항변 판결(2011)에서 인종차별철폐협약 제22조의 교섭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교섭이란 단순한 항의나 비난과 구별되는 분쟁 해결을 위한 진정한 시도여야 하고 그 대상이 협약상 의무와 관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재판소는 조지아가 제소 전에 협약에 관한 교섭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보아 관할권을 부인하였다.

사안에서 B국 주장대로 제소 전 양국 간 아무런 교섭이 없었다면, 교섭 시도와 6개월 경과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관할권이 부인될 가능성이 크다. 재판소는 ① 외교 경로나 국제기구에서 협정상 차별 문제에 관한 실질적 교섭 시도가 있었는지, ② 교섭이 명백히 무익하거나 결렬된 상태였는지, ③ 6개월 기간의 기산점과 충족 여부를 살핀다. 관할권이 부인되면 잠정조치도 효력을 잃지만, A국은 교섭을 시도한 뒤 다시 제소할 수 있다.

결론. 잠정조치 단계에서 ICJ는 일견 관할권, 권리의 개연성과 연관성, 회복 불가능한 손해의 위험, 긴급성을 고려하며 사안에서는 잠정조치가 명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선결적 항변 단계에서는 분쟁이 협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제16조의 교섭 전치 요건을 엄격히 심사하므로 교섭이 전혀 없었다면 관할권이 부인될 가능성이 크다.

근거: ICJ규정 제36조 제1항·제6항, 제41조 · ICJ규칙 제75조 · 라그랑 사건(2001) · 인종차별철폐협약 적용 사건(조지아/러시아, 잠정조치 2008, 선결적 항변 2011) · 석유시추시설 사건(선결적 항변, 1996)

2026 제2문

대사관 점거, 잠정조치 불이행과 판결 집행

총 35점 · 소문 3개 · 외교관계협약, 잠정조치의 구속력, 헌장 제94조

제2문.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35점)

〈글〉

(가) A국과 B국은 정치적·종교적 갈등으로 인해 오랫동안 대립 관계에 있다. A국의 청년들은 A국에 소재하는 B국의 대사관에 진입하여 점거하고, B국 외교관을 인질로 잡으며 신체의 위협을 가하였다. 이에 B국은 즉각적으로 A국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항의하면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A국의 대통령은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심지어 점거행위를 하는 자국의 청년들에 대해 애국적 행위라고 평가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하였다.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나도 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이 전혀 진척이 없자, B국은 더 이상 협상을 통해서 는 사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즉시 A국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면서 자국 외교관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를 신청하였다.

(나) 이후 ICJ는 A국에게 B국 외교관을 즉각 석방하라는 잠정조치 명령(order)을 내렸으나, A국은 ICJ의 잠정조치 명령은 판결이 아니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따르지 않았다. ICJ는 본안에 대한 심리를 마친 후 A국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최종 판결(judgement)하였다. 이 판결에는 위법한 대사관 점거 상태를 멈추고 외교관을 석방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A국에서는 대사관 점거가 계속되었고 외교관도 석방되지 않았다. (단, A국과 B국은 UN회원국이며 ICJ의 관할권을 모두 수락함)

- 1) A국이 위반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내용을 설명하시오. (15점)
- 2) (나)와 관련하여, ICJ의 잠정조치 명령(order)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A국의 주장에 대해서 판단하시오. (10점)
- 3) (나)와 관련하여, UN안전보장이사회가 A국에 대한 ICJ 판결을 집행하고자 한다면, 이에 필요한 UN헌장의 절차와 요건을 설명하시오. (10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테헤란 인질 사건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옮겨, 협약 위반(1문), 라그랑 사건의 잠정조치 구속력(2문), 헌

장 제94조 제2항의 집행 절차(3문)를 묻는다. **연결 개념** 제22조·제29조, 국가책임초안 제11조, 제41조, 제59조·제60조, 제25조·제27조 제3항·제39조. **함정** 1)에서 청년들의 행위를 곧바로 A국 행위로 보면 논리가 생략된다. 보호 의무의 부작위 → 대통령 발언에 의한 채택의 두 단계를 써야 한다. 3)에서 거부권 문제를 빠뜨리기 쉽다.

■ 답안 개요

소문	쟁점	근거 조문·판례	결론	분량
1)	A국이 위반한 외교관계협약	외교관계협약 제22조, 제24조, 제29조 · 국가책임초안 제11조 · 테헤란(1980)	보호 의무 부작위 위반, 발언·방치로 채택 가능	약 1,000자
2)	잠정조치의 구속력	ICJ규정 제41조 · 라그랑(2001)	구속력 있음 → A국 주장 부당	약 600자
3)	안보리를 통한 판결 집행	ICJ규정 제59조, 제60조 · 헌장 제25조, 제27조 제3항, 제39조~제42조, 제94조 · 니카라과(1986)	B국 회부 → 이사회 재량·거부권 적용	약 900자

예시답안 — 2026 제2문

사안은 사인의 대사관 점거에 대한 영역국의 책임(1문), 잠정조치의 구속력(2문), 판결 불이행 시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집행(3문)을 차례로 묻는다.

1) A국이 위반한 외교관계협약의 내용

(1) 공관의 불가침과 특별 보호 의무. 공관 지역은 불가침이며(제22조 제1항), 접수국은 공관을 침입이나 손괴로부터 보호하고 공관의 안녕 교란이나 품위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를 진다(제22조 제2항). 공관 문서는 언제 어디서나 불가침이다(제24조).

(2) 외교관 신체의 불가침. 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이며 어떠한 형태의 체포·구금도 당하지 않는다. 접수국은 외교관을 상당한 경의로 대우하고 신체·자유·품위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29조).

(3) 사인의 행위와 A국의 책임. 점거한 청년들은 A국 기관이 아니므로 그 행위가 처음부터 A국에 귀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A국은 점거를 막거나 끝내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제22조 제2항과 제29조의 보호 의무를 부작위로 위반하였다. ICJ는 테헤란 인질 사건(1980)에서 시위대의 대사관 점거가 처음에는 이란에 귀속되지 않지만 이란 당국이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협약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4) 추인에 의한 귀속. 나아가 국가가 사인의 행위를 자기 행위로 인정하고 채택하면 그 범위에서 국가 행위가 된다(국가책임초안 제11조). 테헤란 사건에서 ICJ는 최고지도자가 점거와 인질 억류를 승인하고 이를 유지하라고 지시한 시점부터 점거가 이란의 행위로 바뀌었다고 하였다. 사안에서 A국 대통령은 점거를 ‘애국적 행위’라고 평가하며 해결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단순한 지지 표명만으로는 채택에 이르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국가원수의 공개적 평가와 3개월 이상의 방치가 결합되면 점거 상태의 유지를 국가가 떠맡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보면 A국은 보호 의무 위반을 넘어 공관 불가침과 외교관 신체 불가침을 직접 침해한 것이 된다.

2) 잠정조치 명령의 구속력

ICJ규정 제41조는 잠정조치를 ‘지시할(indicate)’ 권한이라고만 하여 구속력에 논란이 있었다. ICJ는 라그랑 사건(2001)에서 ① 규정의 대상과 목적은 재판소가 구속력 있는 판결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며 잠정조치는 당사자의 권리를 보전하여 그 판결이 무의미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 ② 정본인 영어·

프랑스어 문언을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조화롭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 ③ 판결 전 분쟁을 악화시키는 조치를 삼가야 한다는 원칙 등을 근거로 잠정조치 명령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재판소는 일관되게 잠정조치 불이행을 별도의 국제의무 위반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판결이 아니므로 구속력이 없다’는 A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A국은 석방 명령을 따르지 않아 협약 위반과 별도로 잠정조치 명령 위반의 국제책임을 진다.

3)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판결 집행의 절차와 요건

(1) 판결의 구속력. 판결은 당사자 사이에서 그 사건에 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ICJ규정 제59조) 종국적이고 상소할 수 없다(제60조). UN 회원국은 자국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ICJ 결정에 따를 것을 약속한다(UN헌장 제94조 제1항).

(2) 제94조 제2항의 절차. 당사자 일방이 판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타방 당사자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할 수 있고,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판결을 집행하기 위하여 권고하거나 취할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① B국의 회부, ② 이사회의 필요성 판단, ③ 권고 또는 조치 결정이라는 단계를 거친다. 이사회의 개입은 재량이며, 판결이 있다고 자동으로 집행되지는 않는다.

(3) 표결 요건. 이는 절차사항이 아니므로 제27조 제3항에 따라 상임이사국의 동의 투표를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이 필요하다. 같은 항 단서는 제6장과 제52조 제3항에 따른 결정에서 분쟁 당사국의 기권을 요구하지만, 제94조 제2항에 따른 결정은 제6장의 결정이 아니므로 이 기권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따라서 당사국이 상임이사국이면 거부권으로 집행이 막힐 수 있다. 실제로 니카라과 사건(1986) 판결 후 니카라과가 이사회에 회부하였으나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가 채택되지 못하였다.

(4) 조치의 내용. 이사회는 이행을 촉구하는 권고를 할 수 있고,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하면 회원국은 제25조에 따라 이를 수락·이행할 의무를 진다. 판결 불이행과 외교관 억류가 평화에 대한 위협에 해당한다고 결정하면(제39조) 제7장에 따라 비군사적 조치(제41조)나 군사적 조치(제42조)도 취할 수 있다. 다만 제94조 제2항이 판결(judgment)만 언급하므로 잠정조치 명령의 집행에도 적용되는지는 다툼이 있다.

결론. A국은 공판과 외교관 보호 의무를 부작위로 위반하였고, 대통령의 평가와 방치로 점거를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잠정조치 명령은 라그랑 사건 이래 구속력이 확립되어 A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판결 불이행에 대해서는 B국이 헌장 제94조 제2항에 따라 안보리에 회부할 수 있으나, 집행은 이사회의 재량과 상임이사국의 동의에 달려 있다.

근거: 외교관계협약 제22조, 제24조, 제29조 · 국가책임초안 제11조 · ICJ규정 제41조, 제59조, 제60조 · UN헌장 제25조, 제27조 제3항, 제39조~제42조, 제94조 · 테헤란 인질 사건(1980) · 라그랑 사건(2001) · 니카라과 사건(1986)

제7장

무력사용금지 · 자위권 · UN 집단안보

불간섭 원칙 · 무력사용금지 · 무력공격과 자위권 · 집단적 자위 · 자국민 구출 · 안보리 강제조치 | 기출 5문항:
2016-1, 2019-3, 2021-2, 2022-1, 2023-2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

7-1 핵심 개념	88
7-2 기출 풀이	90
2016 제1문 반란단체 지원과 유전지대 폭격·기뢰 설치	90
2019 제3문 내전 중 인질이 된 자국민과 외국인의 군사적 구출	93
2021 제2문 국경 총격에 대한 대규모 진격·점령과 제3국의 항의	95
2022 제1문 비회원국의 소수민족 탄압과 안보리·ICC	98
2023 제2문 반군 지원과 지역 방위기구 다국적군의 선박 격침	101

7-1 핵심 개념

이 장의 문항 다섯 개 가운데 셋(2016-1, 2021-2, 2023-2)이 니카라과 사건(1986)의 단계적 구별을 묻는다. **경제적 압력(적법) → 자금 제공(간섭) → 무장·훈련(무력 행사) → 파견·실질적 관여(무력공격)**의 사다리를 머릿속에 그려 두면, 어떤 사실관계든 해당 칸에 넣어 결론을 낼 수 있다.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

헌장 제2조 제7항은 UN의 회원국 국내문제 간섭을 금지하며, 단서에서 제7장 강제조치의 적용을 해하지 않는다고 한다. 국가 간 불간섭 원칙은 주권평등에서 나온 관습법이다(우호관계원칙 선언 1970). 니카라과 사건은 금지되는 간섭을 ① 국가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정치·경제·사회·문화 체제, 대외정책)에 관하여 ② **강제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정부 전복을 위한 무장 활동 지원을 전형으로 보았다. 경제원조 중단이나 무역 금지는 간섭이 아니라고 하였다.

대립 구도

강제(간섭) ↔ 설득·비우호적 조치(적법한 보복조치)

쓰이는 기출 2016-1 (1), 2021-2 (2), 2023-2 (1)

답안 속 문장

“경제원조의 중단은 의무 없는 혜택을 거두는 것으로서 강제의 요소를 갖추지 못하므로 불간섭 원칙 위반이 아니다.”

무력사용금지 원칙

회원국은 국제관계에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UN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방식으로 무력의 위협이나 행사를 삼가야 한다(헌장 제2조 제4항). 관습법이자 강행규범이며, 무장집단을 통한 간접 무력 행사도 포함한다. 니카라과 사건은 반군을 **무장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은** 무력 행사에 해당하지만 **자금 제공**만으로는 간섭일 뿐이라고 구별하였다. 예외는 안보리의 강제조치(제42조)와 자위권(제51조)뿐이며, 영역국의 유효한 동의가 있으면 애초에 금지 대상이 아니다(콩고/우간다 2005).

쓰이는 기출 2016-1 (2), 2019-3, 2023-2 (1)

답안 속 문장

“반란단체에 대한 무기 공급과 군사훈련은 간접적 무력 행사로서 헌장 제2조 제4항 위반이지만, 그 자체로 자위권을 발동시키는 무력공격에는 이르지 않는다.”

무력공격과 자위권

헌장 제51조는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고, 자위 조치를 즉시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한다. 무력공격은 무력 행사 중 ‘가장 중대한 형태’로서 **규모와 효과**에 따라 단순한 국경 사건과 구별된다(니카라과 1986). 무장집단의 ‘파견’이나 ‘실질적 관여’는 무력공격이 될 수 있으나(침략의 정의 결의 1974 제3조 (g)), 무기·병참 지원은 그렇지 않다. 자위 조치는 **필요성**과 **비례성**을 갖추어야 하며, 목표는 정당한 군사 목표여야 한다(석유시추시설 2003). 깊숙한 진격과 점령은 자위의 범위를 넘는다(콩고/우간다 2005).

대립 구도

무력공격(자위권 발동) ↔ 그 밖의 무력 행사(대응조치·안보리 회부만 가능)

쓰이는 기출 2016-1 (3), 2021-2 (1), 2023-2 (2)

답안 속 문장

“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무력 행사의 피해국은 무력으로 대응할 수 없으며, 비무력적 대응조치나 안보리 회부 등 평화적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집단적 자위권의 요건

니카라과 사건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① 피해국에 대한 무력공격, ② 피해국 스스로의 피습 선언, ③ 피해국의 원조 요청, ④ 필요성·비례성, ⑤ 안보리 보고를 요구하였다. 제3국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대신’ 자위할 수는 없다. 지역기구는 헌장 제8장에 따라 지역적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나, 지역기관에 의한 강제조치는 안보리의 허가 없이 취할 수 없다(제53조 제1항).

쓰이는 기출 2023-2 (2)

답안 속 문장

“지역 방위기구의 다수결 결의는 피해국의 원조 요청을 대신하지 못하며, 안보리 허가 없는 지역기관의 강제조치는 헌장 제53조 제1항에 반한다.”

자국민 구출과 인도적 간섭

국의 자국민에 대한 임박한 위협, 영역국의 보호 불능 또는 의사 부재, 자국민 보호에 엄격히 한정된 조치를 요건으로 무력에 의한 구출을 자위권으로 정당화하는 견해가 있다(엔테베 구출작전 1976 등). 그러나 무력공격 요건과 맞지 않아 확립된 관습법으로 보기 어렵다. 다른 국가 국민까지 구출하거나 인권 보호를 위해 무력을 쓰는 인도적 간섭은 헌장상 근거가 없으며, 보호책임(R2P, 2005년 세계정상회의 결과문서)도 안보리를 통한 집단적 조치를 전제로 한다.

쓰이는 기출 2019-3

답안 속 문장

“영역국의 동의를 얻으면 구출작전의 정당성 문제는 대부분 해소되므로, 구출국은 무엇보다 먼저 영역국 정부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안보리의 집단안보 체제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의 1차적 책임을 지며(헌장 제24조), 회원국은 그 결정을 수락·이행할 의무를 진다(제25조). 안보리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제39조) 잠정조치(제40조), 비군사적 조치(제41조: 경제관계·교통·통신 중단, 외교관계 단절 등), 군사적 조치(제42조)를 취한다. 실행상 제42조는 회원국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비절차사항 결정에는 상임이사국의 동의 투표를 포함한 9개국의 찬성이 필요하다(제27조 제3항). UN은 비회원국도 평화 유지에 필요한 한 헌장 원칙에 따르도록 확보한다(제2조 제6항).

대립 구도

제6장(평화적 해결, 권고) ↔ 제7장(강제조치, 구속력)

쓰이는 기출 2022-1 (1), 2026-2 (3)**답안 속 문장**

“대규모 국내 인권 침해도 그 규모와 국경을 넘는 영향에 따라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결정될 수 있으며, 그 경우 헌장 제2조 제7항의 국내문제 항변은 통하지 않는다.”

7-2 기출 풀이**2016 제1문****반란단체 지원과 유전지대 폭격·기뢰 설치**

총 50점 · 소문 3개 · 불간섭, 무력사용금지, 자위권

제1문.

A국의 X정권은 B국에 대하여 비우호적인 정책기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대다수 국민과 국제사회로부터 독재정권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었다. A국 내에 결성된 반란단체 Y는 독재정권의 타도와 민주정부 수립을 명분으로 무장투쟁을 통한 X정권의 전복을 선언하였다. 이 상황에서 B국은 A국을 반인권 독재국가로 비난하면서 반란단체 Y를 우회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A국과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그 동안 지속되었던 경제원조를 중단하였다. 또한, B국은 A국의 반란단체 Y에게 대규모의 무기와 군수품을 제공하는 한편 재정적 지원도 병행하였다. 이에 맞서 A국은 자국 내 반란단체 Y에 대한 B국의 군사적 지원을 이유로 B국의 유전지대를 폭격하고 B국의 항구에 기뢰를 설치하였다. (단, A국과 B국은 국제연합회원국이다)

(총 50점)

- 1) B국의 행위가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논하시오. (15점)
- 2) B국의 행위가 무력사용금지 원칙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논하시오. (15점)
- 3) A국의 행위가 자위권의 적법한 행사라고 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20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니카라과 사건의 판시를 행위별로 정확히 구별하는지 본다. 외교관계 단절·원조 중단, 무기·군수품 제공, 재정 지원의 법적 평가가 모두 다르다. **연결 개념** 불간섭의 ‘강제’ 요소, 간접 무력 행사, 무력공격의 문턱, 필요요성·비례성, 비무력적 대응조치. **합정** B국의 행위를 한 덩어리로 묶어 ‘모두 위반’이라 쓰면 고득점이 어렵다. 3)에서 무력공격이 없다는 결론 뒤에도 필요성·비례성을 가정적으로 검토하면 완성도가 높아진다.

■ 답안 개요

소문	쟁점	근거 조문·판례	결론	분량
1)	B국 행위의 불간섭 원칙 위반	헌장 제2조 제7항·우호관계원칙 선언·니카라과(1986)	단절·원조 중단 적법, 무기·자금 지원 위반	약 900자
2)	B국 행위의 무력사용금지 위반	헌장 제2조 제4항·니카라과(1986)	무기 제공은 위반, 자금은 간섭에 그침	약 600자
3)	A국 폭격·기뢰 설치와 자위권	헌장 제51조·침략의 정의 제3조(g)·니카라과(1986)·석유시추 시설(2003)·콩고/우간다(2005)·초안 제50조 제1항(a)	무력공격 없음, 필요성·비례성도 결여 → 위법	약 1,400자

예시답안 — 2016 제1문

이 사안은 니카라과 사건(1986)의 구조를 그대로 옮겨 놓았다. B국의 행위는 외교관계 단절·경제원조 중단, 반란단체에 대한 무기·군수품 제공, 재정 지원으로 나뉘며, 각 행위가 불간섭 원칙과 무력사용금지 원칙 중 어디에 걸리는지를 구별해야 한다. 이어서 A국의 폭격·기뢰 설치가 자위권으로 정당화되는지를 검토한다.

1) B국 행위의 불간섭 원칙 위반 여부

(1) 원칙의 근거와 내용. UN헌장 제2조 제7항은 UN이 회원국의 국내관할 사항에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국가 간 관계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국가 간 불간섭 원칙은 주권평등에서 나오는 관습 국제법이며, 우호관계원칙 선언(1970)이 이를 확인한다. ICJ는 니카라과 사건에서 금지되는 간섭이란 ① 국가가 주권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정치·경제·사회·문화 체제의 선택, 대외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② 강제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강제는 간섭의 본질적 요소이며, 다른 국가 정부의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무장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그 전형이다.

(2) 외교관계 단절과 경제원조 중단. 외교관계의 수립과 유지는 각국의 재량이므로 단절은 적법하다. 경제원조도 법적 의무가 아닌 한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다. ICJ는 니카라과 사건에서 미국의 경제원조 중단과 무역 금지가 관습법상 불간섭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하였다. B국이 반란단체를 ‘우회적으로’ 지원할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이 조치는 위법하지 않은 비우호적 조치(보복조치)로서 강제의 요소를 갖추지 못한다.

(3) 무기·군수품 제공과 재정 지원. 반면 X정권 전복을 선언한 반란단체 Y에게 대규모 무기·군수품을 제공하고 재정 지원을 한 것은 A국이 자유롭게 결정할 정부 형태에 관하여 무력이라는 강제적 방법으로 개입한 것이다. 니카라과 사건에서 ICJ는 콘트라 반군에 대한 재정 지원, 훈련, 무기 공급 등이 불간섭 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4) 인권·민주주의 명분. B국은 A국이 반인권 독재국가라는 점을 내세운다. 그러나 ICJ는 니카라과 사건에서 특정 이념의 채택은 국제법 위반이 아니며, 다른 국가의 반정부 세력을 지원할 일반적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인권 존중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무력 지원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5) 소결. 외교관계 단절과 원조 중단은 적법하지만, 무기 제공과 재정 지원은 불간섭 원칙 위반이다.

2) B국 행위의 무력사용금지 원칙 위반 여부

(1) 원칙. 헌장 제2조 제4항은 회원국이 국제관계에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UN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방식으로 무력의 위협이나 행사를 삼가도록 한다. 이 원칙은 관습법이자 강행규범으로 인정된다. 무력은 직접 행사뿐 아니라 무장단체를 통한 간접 행사도 포함한다. 우호관계원

칙 선언은 다른 국가 영역에서 내란·테러 행위를 조직·교사·원조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것이 무력의 위협이나 행사를 수반하면 금지된다고 한다.

(2) 니카라과 사건의 구별. ICJ는 반군을 무장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은 무력의 위협이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반면 단순한 자금 제공은 불간섭 원칙 위반이지만 그 자체로 무력 행사는 아니라고 하였다.

(3) 사안의 적용. B국이 A국 정부 전복을 위해 무장투쟁 중인 반란단체에 대규모 무기와 군수품을 공급한 것은 간접적 무력 행사로서 제2조 제4항 위반이다. 재정 지원은 불간섭 원칙 위반에 해당할 뿐 그 자체로는 무력 행사가 아니다. 외교관계 단절과 원조 중단은 무력과 무관하다.

3) A국 행위가 자위권의 적법한 행사인지

(1) 자위권의 요건. 헌장 제51조는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인정한다. 요건은 ① 무력공격의 발생, ② 관습법상 필요성과 비례성, ③ 안보리 보고이다.

(2) 무력공격의 존재. 무력공격은 무력 행사 중 가장 중대한 형태이다. 침략의 정의 결의(1974) 제3조 (g)는 정규군에 의한 무력공격에 상당하는 중대한 무력 행위를 수행하는 무장 집단을 국가가 ‘파견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침략으로 본다. ICJ는 니카라과 사건에서 이 규정이 관습법을 반영한다고 하면서도, 반군에 대한 무기나 병참 등의 지원은 무력공격에 해당하지 않으며 무력의 위협·행사나 내정간섭이 될 뿐이라고 하였다. 콩고/우간다 무력활동 사건(2005)도 같은 기준을 유지하였다. 사안에서 B국은 무기·군수품과 자금을 제공하였을 뿐 무장집단을 파견하거나 그 작전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정은 없다. 따라서 A국에 대한 무력공격은 없으며, 자위권 발동의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다.

(3) 필요성과 비례성. 무력공격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자위 조치는 공격을 격퇴하는 데 필요하고 그에 비례해야 한다. ICJ는 석유시추시설 사건(2003)에서 자위 조치의 목표가 정당한 군사 목표여야 하며 필요성이 엄격히 평가된다고 하였다. B국 유전지대는 반란단체 지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제 시설이고, 항구에 기뢰를 설치하는 것은 제3국 선박의 항행까지 위협한다. 반란단체 지원을 막는다는 목적과 비교할 때 필요성도 비례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니카라과 사건에서도 ICJ는 미국의 니카라과 항구 기뢰 설치가 무력 사용금지와 해상 통상의 자유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4) 안보리 보고. A국이 안보리에 보고하였다는 사정도 없다. 보고 누락 자체가 자위권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니카라과 사건에서 ICJ는 이를 국가가 스스로 자위라고 확신하지 않았다는 정황으로 고려하였다.

(5) A국이 취할 수 있었던 대응. 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간접적 무력 행사의 피해국은 무력에 의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응조치도 무력을 수반할 수 없다(국가책임초안 제50조 제1항 (a)). A국은 비무력적 대응조치, 안보리 회부, ICJ 제소 등 평화적 수단을 사용해야 했다.

결론. B국의 외교관계 단절과 원조 중단은 적법하지만, 반란단체에 대한 무기·군수품 제공은 불간섭 원칙과 무력사용금지 원칙을 모두 위반하고, 재정 지원은 불간섭 원칙을 위반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무력공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국의 유전지대 폭격과 기뢰 설치의 자위권 행사로 정당화되지 않으며, 그 자체로 헌장 제2조 제4항 위반이다.

근거: UN헌장 제2조 제4항·제7항, 제51조 · 우호관계원칙 선언(1970) · 침략의 정의 결의(1974) 제3조 (g) · 국가책임초안 제50조 제1항 (a) · 니카라과 사건(1986) · 석유시추시설 사건(2003) · 콩고/우간다 무력활동 사건(2005)

2019 제3문

내전 중 인질이 된 자국민과 외국인의 군사적 구출

30점 · 단일 문항 · 무력사용금지의 예외, 자국민 보호, 인도적 간섭

제3문.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A국에서는 정부군과 반란군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반란군은 A국 수도에 소재하는 종합병원에서 B국 국적의 민간인 30여 명을 포함한 다수의 외국인들을 인질로 억류하고 있다. B국은 헬리콥터와 특수부대를 동원하여 병원 내 자국민과 외국인들을 구출하려고 한다. B국의 군사적 구출작전의 국제법적 정당성에 대해 논하시오. (단, A국과 B국은 UN 회원국이다)

(30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무력사용금지의 예외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논쟁적인 자국민 구출 이론의 근거와 한계를 균형 있게 서술하는지 본다. **연결 개념** 영역국 동의, 안보리 승인, 제51조, 엔테베, 테헤란 사건의 판시, 인도적 간섭, R2P. **합정** ‘자국민 30여 명을 포함한 다수의 외국인’이라는 표현은 자국민과 외국인 구출의 근거를 나누어 쓰라는 신호이다. 동의라는 가장 확실한 정당화 근거를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 답안 개요

단계	쟁점	근거 조문·판례	결론	분량
①	무력사용금지의 적용	헌장 제2조 제4항, 제42조, 제51조	동의 없는 군사력 사용은 원칙적 금지	약 300자
②③	영역국 동의, 안보리 승인	콩고/우간다(2005)	동의 있으면 적법	약 400자
④	자국민 보호를 위한 자위권	제51조 · 엔테베(1976) · 테헤란(1980)	논쟁적, 요건 갖추도 자국민에 한정	약 800자
⑤⑥	외국인 구출, 작전상 제한	니카라과(1986) · R2P	인도적 간섭은 정당화 곤란	약 500자

예시답안 — 2019 제3문

B국의 구출작전은 A국 영역에서 A국의 동의 없이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일단 헌장 제2조 제4항의 무력 행사에 해당한다. 그 정당성은 ① 영역국의 동의, ② 안보리 승인, ③ 자위권, ④ 그 밖의 독자적 정당화 사유의 순서로 검토한다.

1) 무력사용금지 원칙의 적용

헌장 제2조 제4항은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UN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방식의 무력 행사를 금지한다. 구출작전이 A국 영토를 점령하거나 정부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토보전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다수설은 다른 국가 영역에서 동의 없이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고 본다. 명시적 예외는 안보리의 강제조치(제42조)와 자위권(제51조)뿐이다.

2) 영역국의 동의

A국 정부가 구출작전에 동의하면 B국의 군사 활동은 A국에 대한 무력 행사가 아니게 된다. ICJ는 콩고/우간다 무력활동 사건(2005)에서 영역국의 동의가 있었던 기간의 외국군 주둔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동의는 정부가 유효하게 표시해야 하며 범위와 기간을 넘으면 효력이 없다. A국은 내전 중이지만 정부군이 수도를 통제하는 정부로서 동의 능력이 있다. 따라서 B국은 먼저 A국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동의를 얻으면 정당성 문제는 대부분 해소된다.

3) 안보리 승인

안보리가 제7장에 따라 인질 구출을 위한 무력 사용을 승인하면 적법하다. 사안에는 그런 승인이 없다.

4) 자국민 보호를 위한 자위권

(1) 주장의 근거. 일부 국가와 학자는 국외 자국민에 대한 공격을 국가에 대한 공격으로 보아 제51조의 자위권으로 구출작전을 정당화한다. 이스라엘의 엔테베 구출작전(1976)이 대표적 사례이며, 미국도 1980년 이란 인질 구출 시도를 자위권으로 설명하였다. 이 견해는 ① 자국민에 대한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 ② 영역국이 보호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것, ③ 조치가 자국민 보호에 엄격히 한정될 것을 요건으로 든다.

(2) 비판. 그러나 제51조는 ‘무력공격’을 요건으로 하며, 비국가행위자인 반란군의 인질 억류를 A국에 대한 B국의 자위권 발동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A국 자신이 공격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엔테베 작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평가는 갈렸고, ICJ는 테헤란 인질 사건(1980)에서 미국의 구출 시도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면서도 재판 계속 중의 그러한 행동이 국제관계에서 사법 절차에 대한 존중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자국민 구출을 위한 자위권은 확립된 관습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허용 여부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3) 사안의 적용. 그 견해를 따르더라도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히 따져야 한다. 반란군이 인질을 억류하고 있으므로 위협은 실재하고, A국 정부가 내전으로 반란군 통제 지역의 인질을 구출할 능력이 없다면 ②도 충족될 수 있다. 그러나 B국은 자국민 30여 명뿐 아니라 ‘다수의 외국인’까지 구출하려 한다. 자국민 보호 논리는 다른 국적의 외국인 구출을 정당화하지 못하며, 이 부분은 인도적 간섭의 문제가 된다.

5) 인도적 간섭

중대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영역국 동의 없이 무력을 사용하는 인도적 간섭은 현장상 근거가 없고, 니카라과 사건(1986)에서 ICJ는 무력 사용이 인권 존중을 보장하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하였다. 보호책임(R2P) 개념도 안보리를 통한 집단적 조치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외국인 구출은 이 근거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6) 작전 수행상의 제한

어떤 근거를 택하든 무력 사용은 구출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목적을 달성하면 즉시 철수해야 한다. 작전 장소가 종합병원이라는 점에서 국제인도법상 의료시설 보호와 민간인 피해 방지 의무도 준수해야 한다.

결론. A국 정부의 동의나 안보리 승인이 있으면 B국의 구출작전은 적법하다. 둘 다 없으면 자국민 보호를 위한 자위권 주장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는 무력공격 요건과 맞지 않아 확립된 법이라 보기 어렵고, 요건을 갖추더라도 자국민 구출에 한정된다. 다른 외국인의 구출은 인도적 간섭에 해당하여 정당화되기 어렵다. 따라서 B국은 먼저 A국의 동의를 얻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근거: UN헌장 제2조 제4항, 제42조, 제51조 · 콩고/우간다 무력활동 사건(2005) · 니카라과 사건(1986) · 엔테베 구출작전(1976) · 테헤란 인질 사건(1980)

2021 제2문

국경 총격에 대한 대규모 진격·점령과 제3국의 항의

총 40점 · 소문 2개 · 무력공격의 문턱, 비례성, 비피해국의 책임 추궁

제2문.

아타카 지역에 위치한 A국과 B국은 국경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던 중, A국 국경수비대가 B국 국경수비대를 향해 소총을 발사하자, B국 정부는 이를 자국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규정하였다. 이후 B국은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하여 A국 영토 내로 100여 km 진격한 후 A국 국경지역을 점령하였다. 아타카 지역의 C국은 B국의 군사 조치에 강력히 항의하며 B국 군대가 A국 영토로부터 철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B국 정부는 C국의 항의 및 요구에 대하여는 A국과 B국간의 문제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며 강력히 비난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40점)

- 1) B국이 취한 군사 조치가 UN헌장상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20점)
- 2) B국의 행위에 대한 C국의 조치를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규정 초안을 토대로 검토하시오. (20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소규모 국경 사건과 무력공격의 구별(1문), 그리고 대세적 의무 위반에 대한 비피해국의 책임 추궁(2문)을 묻는다. **연결 개념** ‘규모와 효과’, 필요성·비례성, 침략의 정의 제3조 (a), 국가책임초안 제42조·제48조·제40조·제41조·제54조. **함정** 2)를 불간섭 원칙만으로 쓰면 ‘국가책임규정 초안을 토대로’라는 요구를 놓친다. 제48조 제1항 (b)와 제2항이 중심이다.

■ 답안 개요

소문	쟁점	근거 조문·판례	결론	분량
1)	B국 군사 조치의 자위권 해당 여부	헌장 제2조 제4항, 제51조 · 침략의 정의 제3조 (a) · 니카라과 (1986) · 석유시추시설(2003) · 콩고/우간다(2005)	무력공격 아님, 비례성 결여 → 헌장 위반	약 1,000자
2)	C국 항의·철수 요구의 정당성	국가책임초안 제30조, 제40조~제42조, 제48조, 제54조 · 바르셀로나 트랙션(1970)	대세적 의무 위반 → 비피해국으로서 중지 청구 가능	약 1,400자

예시답안 — 2021 제2문

B국은 국경수비대 간 소총 발사를 무력공격으로 규정하고 A국 영토 100여 km를 진격·점령하였다. 1문은 이 조치가 자위권으로 정당화되는지를, 2문은 직접 피해국이 아닌 C국의 항의·철수 요구가 국가책임법상 정당한지를 묻는다.

1) B국 군사 조치의 UN헌장상 정당화 가능성

- (1) 무력사용금지와 예외. 현장 제2조 제4항은 무력의 위협·행사를 금지하며, 예외는 안보리의 강제조치와 제51조의 자위권뿐이다. 안보리 승인은 없으므로 자위권 요건을 검토한다.
- (2) 무력공격의 존재. 제51조의 자위권은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ICJ는 니카라과 사건(1986)에서 무력공격을 무력 행사 중 가장 중대한 형태로 보고, 그 ‘규모와 효과’를 기준으로 단순한 국경 사건과 구별하였다. 사안에서 A국 국경수비대가 B국 국경수비대를 향해 소총을 발사한 것은 국경 대립 중의 소규모 충돌로서 사상자 규모나 지속성도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무력 행사로서 위법할 수 있으나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무력공격의 규모에는 이르지 않는다. B국이 이를 무력공격으로 ‘규정’하였다고 해서 법적 평가가 달라지지 않는다.
- (3) 필요성과 비례성. 무력공격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자위 조치는 공격을 격퇴하는 데 필요하고 비례적이어야 한다(니카라과 사건, 석유시추시설 사건 2003). 소총 발사에 대응하여 대규모 병력으로 100여 km를 진격하고 국경지역을 점령하는 것은 공격 격퇴의 필요 범위를 명백히 넘는다. ICJ는 콩고/우간다 무력활동 사건(2005)에서 우간다가 자국 안보를 이유로 콩고 영토 깊숙이 진격하여 점령한 것이 자위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4) 안보리 보고. B국이 안보리에 보고하였다는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 (5) 소결. B국의 조치는 자위권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현장 제2조 제4항 위반이다. 다른 국가 영토에 대한 군대의 침입과 점령은 침략의 정의 결의(1974) 제3조 (a)가 열거하는 침략행위에도 해당한다.

2) B국의 행위에 대한 C국의 조치

- (1) 문제의 소재. C국은 B국 행위의 직접 피해국이 아니다. 비피해국이 다른 국가의 위법행위에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것이 B국 주장처럼 ‘부당한 개입’인지가 쟁점이다.
- (2) 피해국과 비피해국의 책임 추궁. 국가책임초안 제42조는 의무가 개별적으로 그 국가에 대해 지는 것이거나, 국가들의 집단 또는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해 지는 것으로서 그 국가에 특별히 영향을 주는 경우에 피해국으로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한다. 제48조 제1항은 피해국이 아닌 국가도 ① 위반된 의무가 그 국가를 포함한 국가 집단에 대해 지는 것으로 집단의 이익 보호를 위해 설정된 경우(대세적 당사국 간 의무), 또는 ②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해 지는 의무인 경우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한다.
- (3) 무력사용금지의 대세적 성격. ICJ는 바르셀로나 트래션 사건(1970)에서 침략행위의 불법화를 대세적 의무의 예로 들었다. 무력사용금지는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한 의무이자 강행규범이다. 또한 A·B·C국이 UN 회원국이라면 현장상 의무는 회원국 상호 간에 지는 의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C국은 제48조 제1항에 따라 B국의 책임을 추궁할 자격이 있다.
- (4) C국이 청구할 수 있는 내용.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비피해국은 ① 위법행위의 중지와 재발방지의 협약·보장(제30조), ② 피해국이나 위반된 의무의 수익자를 위한 배상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C국의 ‘철수 요구’는 위법한 점령의 중지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제48조 제2항 (a)가 허용하는 바로 그 내용이다. 항의 역시 외교적 의사 표시로서 적법하다.
- (5)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과 제3국의 의무. 나아가 제40조는 강행규범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에 대해 규정하고, 제41조는 모든 국가가 적법한 수단으로 그 위반을 종식시키기 위해 협력하고, 그로 인한 상황을 적법한 것으로 승인하거나 유지에 원조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고 한다. 대규모 침공과 점령은 중대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C국의 항의는 권리일 뿐 아니라 협력 의무의 이행이기도 하다.
- (6) 불간섭 원칙과의 관계. 불간섭 원칙이 금지하는 것은 강제적 방법에 의한 개입이다. 외교적 항의와 국제법 준수 요구는 강제가 아니며, 다른 국가의 무력 행사는 그 국가의 국내문제도 아니다. 따라서 B국의 비난은 근거가 없다.

(7) 한계. C국이 항의를 넘어 경제제재 같은 대응조치를 취하는 경우, 제54조는 비피해국이 ‘적법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해하지 않는다고만 하여 비피해국 대응조치의 허용 여부를 열어 두었다. 또한 C국이 직접 무력으로 B국을 몰아내려면 A국의 요청에 따른 집단적 자위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결론. 소총 발사는 무력공격의 규모에 이르지 않고, 100여 km 진격과 점령은 필요성·비례성을 넘으므로 B국의 군사 조치는 자위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헌장 위반이다. 무력사용금지는 대세적 의무이므로 C국은 비피해국으로서 제48조에 따라 B국에 위법행위의 중지(철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부당한 개입이 아니다.

근거: UN헌장 제2조 제4항, 제51조·침략의 정의 결의(1974) 제3조 (a)·국가책임초안 제30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54조·니카라과 사건(1986)·석유시추시설 사건(2003)·콩고/우간다 무력활동 사건(2005)·바르셀로나 트랙션(1970)

2022 제1문

비회원국의 소수민족 탄압과 안보리·ICC

총 40점 · 소문 3개 · 제7장 강제조치, ICC 관할범죄, 비당사국에 대한 관할

제1문.

A국은 수십 년 동안 부자(父子)에 걸친 세습통치를 이어 오고 있다. A국의 X지역에는 A국의 다른 지역과는 인종과 언어가 다른 소수민족이 주로 거주하는데, 이들은 특히 위 세습통치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A국은 이 지역의 소수민족 지도자와 그 추종자들을 극단적으로 억압하고 이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2021년 11월 X지역에서 발생한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세습통치를 반대하는 소수민족 수백 명이 정부군에 의하여 살해되었으며, 수천 명이 체포되었다. (단, A국은 UN 회원국이 아니다)

(총 40점)

- 1) 위 사안과 관련하여 UN 안전보장이사회가 A국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강제조치 종류를 논하시오. (20점)
- 2) 위 사안과 관련하여 국제형사재판소(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관할범죄 및 그 요건을 검토하시오. (10점)
- 3) A국이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미가입국이라고 가정할 때,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여부를 논하시오. (10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집단안보(1문)와 국제형사재판(2·3문)을 연결한다. 비회원국·비당사국이라는 조건이 각각 어떤 제약을 낳고 어떻게 극복되는지가 핵심이다. **연결 개념** 헌장 제2조 제6항·제7항, 제39조~제42조, 로마규정 제5조~제8조·제11조~제17조, 안보리 회부(제13조 (b)). **함정** 2)에서 제노사이드를 쉽게 인정하면 안 된다. 정치적 반대를 이유로 한 살해는 특별한 의도의 입증이 어려우므로 인도에 반한 죄가 중심이다.

■ 답안 개요

소문	쟁점	근거 조문·판례	결론	분량
1)	비회원국에 대한 구속력 있는 강제조치	헌장 제2조 제6항·제7항, 제25조, 제27조 제3항, 제39조~제42조 · 결의 418(1977), 1970·1973(2011)	평화에 대한 위협 결정 시 가능, 제40조~제42조 조치	약 1,300자
2)	ICC 관할범죄와 요건	로마규정 제5조~제8조, 제11조~제15조, 제17조	인도에 반한 죄 중심, 전제 조건·보충성	약 900자
3)	비당사국에 대한 관할권	제12조 제2항·제3항, 제13조 (b) · 결의 1593(2005), 1970(2011)	원칙적 불가, 수락 선언·안보리 회부 시 가능	약 500자

예시답안 — 2022 제1문

A국은 UN 비회원국이며, 소수민족 시위대를 진압하면서 수백 명을 살해하고 수천 명을 체포하였다. 1문은 비회원국에 대한 안보리 강제조치를, 2·3문은 ICC 관할범죄와 관할권 행사 요건을 묻는다.

1) 안보리의 A국에 대한 구속력 있는 강제조치

(1) 비회원국에 대한 적용. 헌장 제2조 제6항은 UN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필요한 한 비회원국도 헌장 원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확보한다고 규정한다. 조약의 제3국 효력 원칙(조약법협약 제34조)과의 관계에서 논란은 있으나, 안보리는 비회원국의 행위가 평화에 대한 위협이 되면 그 국가를 대상으로 제7장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이해이며, 비군사적 조치는 회원국들이 이행하므로 실효성도 있다.

(2) 평화에 대한 위협의 결정. 제39조에 따라 안보리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권고하거나 제41조·제42조의 조치를 결정한다. 국내의 인권 침해도 그 규모와 성격, 난민 유출 등 국경을 넘는 영향에 따라 평화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안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무기금수(결의 418, 1977), 리비아 사태(결의 1970과 1973, 2011) 등에서 국내 상황을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결정한 바 있다. 소수민족 수백 명의 살해와 수천 명의 체포는 이러한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3) 국내문제 불간섭과의 관계. 헌장 제2조 제7항은 국내관할 사항에 대한 UN의 간섭을 금지하지만, 단서에서 제7장에 따른 강제조치의 적용을 해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평화에 대한 위협이 결정되면 국내문제라는 항변은 통하지 않는다.

(4) 표결 요건. 이 결정은 비절차사항이므로 상임이사국의 동의 투표를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이 필요하다(제27조 제3항). 회원국은 안보리 결정을 수락·이행할 의무를 진다(제25조).

(5) 강제조치의 종류. ① 잠정조치(제40조):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폭력 중단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비군사적 조치(제41조): 경제관계와 철도·항해·항공·우편·전신·무선 등 통신 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 중단, 외교관계 단절이 열거되어 있으며, 실행상 무기 금수, 책임자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같은 표적 제재, 임시 국제형사재판소 설치, ICC 회부도 이 조항에 근거한다. ③ 군사적 조치(제42조): 비군사적 조치가 불충분하거나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되면 육·해·공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3조의 특별협정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실행상으로는 회원국들에게 ‘필요한 모든 수단’의 사용을 승인하는 방식이 쓰인다.

2) ICC 관할범죄와 그 요건

(1) 관할범죄. 로마규정 제5조는 제노사이드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를 관할범죄로 한다.

(2) 인도에 반한 죄. 제7조는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그 공격을 인지하고 범한 살해, 구금 등 신체적 자유의 심각한 박탈, 정치적·인종적·민족적 이유 등에 의한 박해 등을 인도에 반한 죄로 규정한다. ‘공격’은 국가나 조직의 정책에 따른 행위의 반복을 말한다. 세습통치 반대 소수민족에 대한 극단적 억압 정책 아래 정부군이 수백 명을 살해하고 수천 명을 체포하였으므로 광범위·체계적 공격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다. 살해, 구금, 인종·정치적 이유의 박해가 성립할 수 있다.

(3) 제노사이드죄와 전쟁범죄. 제노사이드죄(제6조)는 민족·인종 등 집단 자체를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하려는 특별한 의도가 필요하다. 살해의 동기가 세습통치 반대라는 정치적 이유라면 이 의도를 입증하기 어렵다. 전쟁범죄(제8조)는 무력충돌을 전제로 하는데, 시위 진압은 무력충돌로 보기 어렵다.

(4) 관할권 행사 요건. ① 시간적 관할: 규정 발효 후, 그리고 그 국가가 당사국이 된 후의 범죄에 한한다(제11조). ② 전제조건: 범죄 발생지국이나 피의자 국적국이 당사국이어야 한다(제12조 제2항). ③ 개시 경로: 당사국 회부(제14조), 안보리 회부(제13조 (b)), 소추관의 독자적 수사 개시(제15조)이다. ④ 재판 적격성: 관할권 있는 국가가 진정으로 수사·기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야 하고(보충성, 제17조), 사건이 충분히 중대해야 한다.

3) A국이 로마규정 비당사국인 경우

(1) 원칙. 범죄는 A국 영역에서 A국 국민에 의해 행해졌으므로, A국이 비당사국이면 제12조 제2항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당사국 회부나 소추관의 독자적 수사로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예외 ① 관할권 수락 선언. A국이 제12조 제3항에 따라 ICC의 관할권 행사를 수락하는 선언을 하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해 정권이 이를 할 가능성은 낮다.

(3) 예외 ② 안보리 회부. 제13조 (b)에 따라 안보리가 제7장에 따라 사태를 회부하면 제12조 제2항의 전제조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안보리는 비당사국인 수단, 다르푸르 사태(결의 1593, 2005)와 리비아 사태(결의 1970, 2011)를 회부한 바 있다. A국이 UN 비회원국이라는 점은 ICC의 관할권 근거가 로마규정 제13조 (b)이므로 관할권 성립을 막지 않는다. 다만 A국의 협력 의무와 실제 신병 확보는 별개의 문제이다.

결론. 안보리는 A국이 비회원국이라도 제2조 제6항과 제39조에 따라 평화에 대한 위협을 결정하고 제41조·제42조의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안의 행위는 ICC 관할범죄 중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A국이 비당사국이면 원칙적으로 관할권이 없지만, 관할권 수락 선언이나 안보리 회부가 있으면 ICC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거: UN헌장 제2조 제6항·제7항, 제25조, 제27조 제3항, 제39조~제42조 · 로마규정 제5조~제8조, 제11조~제17조 · 안보리 결의 1593(2005), 1970(2011)

2023 제2문

반군 지원과 지역 방위기구 다국적군의 선박 격침

총 30점 · 소문 2개 · 간접 무력 행사, 집단적 자위권, 지역기구의 강제조치

제2문.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UN 회원국인 A국, B국, C국, D국, E국 등 5개국은 UN헌장에 의거하여 군사동맹을 목적으로 하는 ‘태평양 공동방위기구’(이하 ‘방위기구’) 설립조약을 체결하였다. 방위기구 설립조약이 발효된 후 K국은 방위기구의 회원국인 E국에 친(親)K국 정권을 수립할 것을 목적으로 E국 내의 반군세력에게 무기와 자금 그리고 병력에 대한 체계적 군사훈련을 제공하였다. 이에 대해 방위기구는 다수결로 K국의 행위를 침략행위로 결의하였다. 이 결의에 따라 B국, C국, D국은 ‘BCD 다국적군’을 구성하였다. 이후 방위기구의 군사참모위원회 지휘에 따라 작전을 수행하던 ‘BCD 다국적군’은 A국의 항구에 정박하고 있던 K국 국적의 민간선박에서 E국의 반군세력을 지원하기 위한 무기와 탄약을 발견하고 그 선박을 포격하여 격침시켰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 1) K국의 군사적 행위가 UN헌장상 금지된 무력사용행위인지 논하시오. (10점)
- 2) ‘BCD 다국적군’의 K국 국적 민간선박 격침행위가 국제법상 적법한 자위권의 행사인지 논하시오. (20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2016-1과 같은 니카라과 구도에 지역기구와 제3국 항구라는 요소를 더했다. **연결 개념** 무장·훈련의 무력 행사성, 집단적 자위의 5요건, 헌장 제39조·제53조 제1항, 석유시추시설의 목표 기준, 제3국 영역 주권. **합정** 방위기구의 ‘침략행위 결의’를 법적 근거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격침 장소가 A국 항구(제3국 내수)라는 점, 대상이 민간선박이라는 점도 독립된 위법 요소이다.

■ 답안 개요

소문	쟁점	근거 조문·판례	결론	분량
1)	K국의 반군 지원과 무력사용금지	헌장 제2조 제4항 · 니카라과 (1986)	무장·훈련은 무력 행사, 자금은 간접	약 500자
2)	다국적군 격침의 집단적 자위권 해당 여부	헌장 제39조, 제51조, 제53조 제1항 · 침략의 정의 제3조 (g) · 니카라과(1986) · 석유시추시설 (2003) · 콩고/우간다(2005)	무력공격·요청 없음, 지역기구 근거 부족, 비례성 결여 → 위법	약 1,500자

예시답안 — 2023 제2문

K국은 E국 반군에 무기·자금·군사훈련을 제공하였고, 지역 방위기구의 결의에 따라 구성된 다국적군은 제3국 A국의 항구에 정박한 K국 민간선박을 격침하였다. 1문은 간접적 무력 행사의 성립을, 2문은 집단적 자위권의 요건과 지역기구의 권한을 묻는다.

1) K국의 군사적 행위가 현장상 금지된 무력사용인지

헌장 제2조 제4항은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반하는 무력의 위협·행사를 금지한다. 무력 행사는 정규군의 직접 공격뿐 아니라 무장집단을 통한 간접적 행사도 포함한다. ICJ는 니카라과 사건(1986)에서 반군을 ‘무장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은 무력의 위협이나 행사에 해당하지만, 자금 제공만으로는 불간섭 원칙 위반일 뿐 무력 행사는 아니라고 구별하였다.

K국은 E국에 친K국 정권을 세우려는 목적으로 반군에 무기와 자금, 병력에 대한 체계적 군사훈련을 제공하였다. 무기 제공과 군사훈련은 간접적 무력 행사로서 제2조 제4항 위반이며, 정부 전복 목적의 지원은 불간섭 원칙 위반이기도 하다. 자금 제공은 불간섭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

2) BCD 다국적군의 민간선박 격침이 적법한 자위권 행사인지

(1) 집단적 자위권의 요건. 헌장 제51조는 회원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한다. ICJ는 니카라과 사건에서 집단적 자위권의 요건으로 ① 피해국에 대한 무력공격, ② 피해국이 무력공격을 받았다고 선언할 것, ③ 피해국의 원조 요청, ④ 필요성과 비례성, ⑤ 안보리 보고를 들었다.

(2) 무력공격의 존부. 무력공격은 무력 행사 중 가장 중대한 형태이다. 침략의 정의 결의(1974) 제3조 (g)는 무장집단을 국가가 ‘파견’하거나 그 행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경우를 침략으로 보는데, ICJ는 니카라과 사건과 콩고/우간다 무력활동 사건(2005)에서 반군에 대한 무기·병참 지원만으로는 무력공격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K국은 무기·자금·훈련을 제공하였을 뿐 반군을 파견하거나 작전을 지휘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E국에 대한 무력공격은 인정되기 어렵고, 자위권 발동의 전제가 없다.

(3) 피해국의 선언과 요청. 집단적 자위는 제3국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행사할 수 없고 피해국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사안에서는 방위기구가 ‘다수결로’ 침략을 결의하였을 뿐 E국이 무력공격을 받았다고 선언하고 원조를 요청하였는지 나타나 있지 않다. 다수결 결의는 피해국 요청을 대신하지 못한다.

(4) 지역기구의 권한. 방위기구의 결의가 독자적 근거가 되는지 문제된다.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는 권한은 안보리에 있다(제39조). 헌장 제53조 제1항은 지역적 약정이나 지역기관에 의한 강제조치는 안보리의 허가 없이 취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방위기구가 K국 행위를 침략으로 결의하고 그에 따라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안보리 허가 없이는 강제조치로 정당화되지 않으며, 자위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법하다.

(5) 필요성과 비례성. 격침된 선박은 K국 국적의 ‘민간선박’으로서 A국 항구에 정박 중이었다. 무기와 탄약을 싣고 있었다 하더라도 정박 중이어서 임박한 위협이 아니었고, 압수나 A국을 통한 억류 같은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었다. ICJ는 석유시추시설 사건(2003)에서 자위 조치의 대상은 정당한 군사 목표여야 하고 필요성이 엄격히 평가된다고 하였다. 포격·격침은 필요성과 비례성을 결여한다.

(6) 제3국 A국의 주권. 격침은 A국 항구, 즉 A국 내수에서 이루어졌다. A국이 방위기구 회원국이라 하더라도 구체적 동의를 없었다면 A국 영역 안에서의 무력 행사로서 A국 주권을 침해한다. 또한 민간선박과 승선자에 대한 공격은 국제인도법상 구별 원칙과도 충돌할 수 있다.

(7) 안보리 보고. 다국적군 참가국이 안보리에 보고하였는지도 드러나지 않는다.

결론. K국의 무기 제공과 군사훈련은 헌장 제2조 제4항이 금지하는 간접적 무력 행사이다. 그러나 이는 무력공격에 이르지 않으므로 집단적 자위권의 전제가 없고, E국의 요청도 확인되지 않으며, 지역기구의 결의는 안보리 허가 없이는 강제조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정박 중인 민간선박의 격침은 필요성·비례성도 결여하므로 BCD 다국적군의 행위는 적법한 자위권 행사가 아니다.

근거: UN헌장 제2조 제4항, 제39조, 제51조, 제53조 제1항·침략의 정의 결의(1974) 제3조 (g)·니카라과 사건(1986)·석유시추시설 사건(2003)·콩고/우간다 무력활동 사건(2005)

제8장

국제인권법 · 국제인도법 · 국제형사법

인권조약기구의 견해와 세계인권선언 · 고문 위험국 인도 금지 · 인도 아니면 소추 · 민족해방전쟁과 포로 지위 · 상급자 명령과 지휘관 책임 | 기출 4문항: 2020-3, 2021-1, 2024-2, 2024-3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

8-1 핵심 개념	104
8-2 기출 풀이	107
2020 제3문 내전 중 항복자·가족 살해와 상급자 명령·지휘관 책임	107
2021 제1문 원어민 교사 HIV 검사와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	109
2024 제2문 항공기 납치범의 인도 요청과 고문 위험	111
2024 제3문 인종차별 정권에 대한 해방기구의 무력투쟁	114

8-1 핵심 개념

이 장은 개인을 보호하거나 처벌하는 세 분야를 묶었다. 인권법은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인도법은 무력충돌 상황의 보호와 전투 수행 방법을, 국제형사법은 개인의 형사책임을 다룬다. 2022-1(ICC 관할)은 안보리 문제와 함께 제7장에 실었다.

인권조약기구의 견해

자유권규약위원회(규약 제28조)는 선택의정서 당사국에 대해 개인통보를 심리하고 ‘견해’를 당사국과 개인에게 송부한다(선택의정서 제5조 제4항). 통보는 규약상 권리 침해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제1조), 이용 가능한 모든 국내구제를 완료해야 한다(제2조, 제5조 제2항 (b)). 견해는 판결처럼 구속력은 없지만, 위원회는 일반논평 제33호(2008)에서 사법적 결정의 중요한 특징을 가진다고 하였고, ICJ는 디알로 사건(2010)에서 위원회의 규약 해석에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대립 구도

형식적 비구속성 ↔ 성실한 고려 의무(조약법협약 제26조)

쓰이는 기출 2021-1 (1)

답안 속 문장

“위원회 견해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규약 당사국은 이를 성실히 고려할 의무를 지므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배척할 수 없다.”

세계인권선언의 법적 지위

세계인권선언(1948)은 총회 결의로서 그 자체로는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상당 부분이 관습국제법을 반영하고(고문·노예제·인종차별 금지, 자의적 구금 금지 등), 헌장 제55조·제56조의 인권 조항을 구체화한 권위 있는 해석으로 받아들여지며, 이후 인권조약의 기초가 되었다. ICJ는 테헤란 인질 사건(1980)에서 자유의 부당한 박탈이 세계인권선언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고 하였다. 효력은 조항별로 판단해야 한다.

쓰이는 기출 2021-1 (2)

답안 속 문장

“세계인권선언 자체는 권고적 결의이지만, 관습법을 반영한 조항은 모든 국가를 구속하므로 ‘국제법적 효력이 없다’는 주장은 지나치다.”

고문방지협약 — 송환금지와 인도 아니면 소추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상당한 근거가 있는 국가로 사람을 추방·송환·인도해서는 안 되며, 그 판단에서 일관된 형태의 중대하고 대규모적인 인권 침해의 존재를 고려한다(고문방지협약 제3조). 이 의무는 절대적이다. 협약은 속지·속인·수동적 속인주의 관할권(제5조 제1항)과, 혐의자 소재국의 관할권(제5조 제2항)을 규정하고, 인도하지 않으면 소추에 회부할 의무(제7조)를 부과한다. 벨기에/세네갈 사건(2012)은 인도는 선택지, 소추는 의무라고 하였다. 같은 구조의 ‘인도 아니면 소추’ 조항은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1970) 제7조에도 있다.

대립 구도

인도 의무(조약에 근거) ↔ 송환금지(절대적) → 조화 수단: 자국 소추

쓰이는 기출 2024-2, 2019-2

답안 속 문장

“범죄인인도와 고문 위험국 송환금지가 충돌하면, 인도를 거부하고 자국에서 소추에 회부함으로써 두 조약상 의무를 동시에 이행할 수 있다.”

무력충돌의 분류와 민족해방전쟁

국가 간 무력충돌에는 제네바협약 전체가(공통 제2조), 비국제적 무력충돌에는 공통 제3조와 일정 요건 아래 제2추가의정서(제1조 제1항: 책임 있는 지휘, 영토 일부 지배, 지속적·협동적 작전)가 적용된다. 제1추가의정서 제1조 제4항은 인민이 자결권을 행사하여 식민지배, 외국 점령, **인종차별 정권**에 대항하는 무력충돌을 국제적 무력충돌에 포함시킨다. 그 인민을 대표하는 당국은 수탁국(스위스)에 일방적 선언을 하여 협약과 의정서를 적용할 수 있고, 그 경우 체결국과 같은 권리·의무를 가진다(제96조 제3항).

대립 구도

국제적 무력충돌(포로 지위·전투원 면책) ↔ 비국제적 무력충돌(국내법 처벌 가능, 공통 제3조 보호)

쓰이는 기출 2024-3, 2020-3

답안 속 문장

“인종차별 정권에 대한 인민의 무력 투쟁은 제1추가의정서 제1조 제4항에 따라 국제적 무력충돌이며, 제96조 제3항의 선언으로 협약 전체가 그 당국에도 적용된다.”

전투원과 포로 지위

충돌 당사자의 군대는 책임 있는 지휘 아래 있고 국제인도법 준수를 강제하는 내부 규율을 갖춘 조직된 무장 병력이며, 그 구성원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할 권리가 있는 전투원이다(제1추가의정서 제43조). 적의 권력 아래 들어간 전투원은 포로이고(제44조 제1항), 국제인도법 위반만으로 그 지위를 잃지 않는다(제44조 제2항). 포로는 포획 전 행위로 소추되어도 제3협약상 보호를 유지하며(제3협약 제85조), 지위가 의심스러우면 권한 있는 법원의 결정 때까지 포로로 대우한다(제3협약 제5조). 적대행위가 끝나면 지체 없이 석방·송환해야 한다(제3협약 제118조). 비국제적 무력충돌에서는 포로 지위가 없으나, 종료 시 가능한 한 폭넓은 사면을 부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제2추가의정서 제6조 제5항).

쓰이는 기출 2024-3 (2)

답안 속 문장

“전투원은 적법한 전투 행위로 처벌받지 않으므로, 참전 자체를 내란죄로 처벌하는 것은 포로 지위를 부정하는 국제인도법 위반이다.”

구별 원칙과 무차별 공격 금지

충돌 당사자는 민간인과 전투원, 민간물자와 군사목표물을 항상 구별해야 한다(제1추가의정서 제48조). 민간인은 공격 대상이 될 수 없으며(제51조 제2항), 특정 군사목표물을 겨냥하지 않거나 그럴 수 없는 수

단을 쓰는 무차별 공격은 금지된다(제51조 제4항). 민간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중대한 위반이다(제85조 제3항). 비국제적 무력충돌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제2추가규정서 제13조, 관습인도법).

쓰이는 기출 2024-3 (1), 2023-2 (2), 2019-3

답안 속 문장

“무력충돌의 성격이 어떠한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은 구별 원칙 위반이며, 가담자는 전쟁범죄에 대한 개인 형사책임을 진다.”

ICC의 관할과 개인 형사책임

ICC는 제노사이드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를 관할한다(로마규정 제5조). 관할은 규정 발효 후 범죄에 한정되고(제11조), 범죄지국이나 피의자 국적국이 당사국이거나 관할권을 수락해야 하며(제12조), 당사국 회부·안보리 회부·소추관의 독자적 개시로 시작된다(제13조~제15조). 국가의 진정한 수사·기소가 있으면 사건은 재판적격성이 없다(보충성, 제17조). 직접 실행·공동 실행(제25조 제3항 (a))과 명령·교사(제25조 제3항 (b))에 책임이 인정되고, 군 지휘관은 실효적 통제 아래 있는 부하의 범죄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는데 필요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책임진다(제28조). 상급자 명령은 법적 복종 의무, 위법성 부지, 명령의 명백한 위법성 부재를 모두 충족할 때만 면책되며, 제노사이드·인도에 반한 죄의 명령은 명백히 위법하다(제33조).

대립 구도

명령에 따른 실행자(제33조) ↔ 명령자(제25조 제3항 (b)) ↔ 부작위 지휘관(제28조)

쓰이는 기출 2020-3, 2022-1 (2)(3)

답안 속 문장

“항복한 자와 민간인을 재판 없이 몰살하라는 명령은 명백히 위법하므로, 이를 실행한 하급자는 상급자 명령을 이유로 면책되지 않는다.”

8-2 기출 풀이

2020 제3문

내전 중 항복자·가족 살해와 상급자 명령·지휘관 책임

총 20점 · 소문 2개 · 로마규정 제33조, 제28조

제3문.

다음 제시문을 읽고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을 위한 로마규정에 근거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제시문〉

2003년 8월 A국 정부군과 반란단체 간의 무력충돌로 인해 내전이 발생하였다. A국은 반란단체를 진압하기 위해 군사 작전을 수행하였다. A국 정부군 소속의 甲대위는 상부의 지시 하에 작전을 수행하던 중 항복한 반란단체의 조직원과 그 가족 구성원의 처리 문제에 대해 상부에 문의하였다. 乙대령은 반란단체의 조직과 가족들이 중대한 반역행위를 했기에 그들을 몰살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甲대위는 해당 조직원과 그 가족들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살해하였다. 甲대위와 乙대령은 전쟁범죄 혐의로 2020년 1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되었다.

※ A국은 ICC규정의 당사국이다.

- 1) 甲대위가 상부의 지시에 따라 행한 살해행위가 형사책임 면제에 해당하는지 논하시오. (10점)
- 2) 만약 甲대위가 상부의 지시 없이 반란단체의 가족들을 집단살해한 경우, 乙대령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10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개인 형사책임의 두 축인 상급자 명령의 항변(제33조)과 지휘관 책임(제28조)을 정확히 서술하는지 본다. **연결 개념**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전쟁범죄(제8조 제2항 (c)), 시간적 관할(제11조), 명령자 책임(제25조 제3항 (b)). **합정 2**의 '집단살해'라는 표현에 끌려 제노사이드로 단정하면 안 된다. 반란단체 가족은 보호 집단이 아니므로 전쟁범죄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 답안 개요

소문	쟁점	근거 조문·판례	결론	분량
전제	관할권과 범죄 성립	로마규정 제8조 제2항 (c), 제11조	전쟁범죄 성립	약 300자
1)	상급자 명령에 따른 살해의 면책	제25조 제3항 (a)·(b), 제33조	명백히 위법 → 면책 불가	약 500자
2)	지시 없는 살해에 대한 乙의 책임	제6조, 제28조 (a)	실효적 통제·인식 가능성·조치 불이행 시 책임	약 600자

예시답안 — 2020 제3문

전제: 관할권과 전쟁범죄의 성립. ICC는 규정 발효(2002년 7월 1일) 후의 범죄에 관할권을 가지며, 그 후 당사국이 된 국가에 대해서는 그 국가에 발효한 후의 범죄에 한한다(제11조). 2003년 8월 범행이므로 A국이 그 전에 당사국이었던 관할권이 있다. 제8조 제2항 (c)는 비국제적 무력충돌에서 무기를 내려놓은 자를 포함하여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살해와, 정규 법원의 사전 판결 없는 처형을 전쟁범죄로 규정한다. 항복한 조직원과 그 가족은 모두 보호 대상이므로 그 살해는 전쟁범죄이다.

1) 상부 지시에 따른 甲의 살해행위가 형사책임 면제에 해당하는지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정부나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형사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① 명령에 따를 법적 의무가 있었고, ② 명령이 위법함을 알지 못하였으며, ③ 명령이 명백히 위법하지 않았던 경우에만 면제된다. 세 요건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제2항은 제노사이드나 인도에 반한 죄를 범하라는 명령은 명백히 위법하다고 본다.

사안에서 乙대령의 명령은 항복한 조직원과 그 가족을 재판 없이 ‘몰살’하라는 것이다. 항복한 자와 민간인의 즉결 살해는 국제인도법의 가장 기본적 금지로서, 군인이라면 누구나 위법함을 알 수 있는 명백히 위법한 명령이다. 따라서 ③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甲은 면책되지 않으며, 제25조 제3항 (a)에 따라 직접 실행자로서 책임진다. 상급자 명령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 명령을 내린 乙도 제25조 제3항 (b)에 따라 범죄를 명령한 자로서 책임을 진다.

2) 甲이 지시 없이 가족들을 살해한 경우 乙의 형사책임

(1) 범죄의 성격. 반란단체 조직원의 가족은 국적·민족·인종·종교 집단이 아니므로 그 살해를 제노사이드(제6조)로 보기 어렵고, 비국제적 무력충돌 중의 살해로서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2) 지휘관 책임(제28조 (a)). 乙이 직접 명령하지 않았더라도, 군 지휘관은 ① 자신의 실효적 지휘·통제 아래 있는 부대가 범죄를 저질렀고, ② 그 부대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저지르려 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당시 상황상 알았어야 했으며, ③ 범죄를 방지·억제하거나 수사·기소를 위해 권한 있는 당국에 회부하기 위해 자신의 권한 내에서 필요하고 합리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그 범죄에 대해 형사책임을 진다.

(3) 사안의 적용. 甲은 乙의 지휘 계통 아래 있는 대위로서 실효적 통제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甲이 항복자와 가족의 처리 문제를 乙에게 문의했으므로 乙은 이들이 甲의 통제 아래 있으며 위해 위험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다. 그럼에도 乙이 보호 지시나 감시 등 합리적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살해 후에도 조사·회부를 하지 않았다면 乙은 지휘관 책임을 진다. 그렇지 않다면 책임이 부정된다.

결론. 몰살 명령은 명백히 위법하므로 甲은 상급자 명령을 이유로 면책되지 않는다. 지시가 없었던 경우에도 乙은 실효적 통제, 인식 또는 인식 가능성, 필요한 조치의 불이행이 인정되면 제28조의 지휘관 책임을 진다.

근거: 로마규정 제6조, 제8조 제2항 (c), 제11조, 제25조 제3항, 제28조, 제33조

2021 제1문

원어민 교사 HIV 검사와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

총 20점 · 소문 2개 · 개인통보, 견해의 효력, 세계인권선언

제1문.

B국 국적자인 甲은 2008년 A국의 한 초등학교 영어 원어민 교사로 해당 학교와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A국 정부는 외국인 원어민 교사에게 계약 시마다 HIV/AIDS 및 마약 검사 결과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자국민이나 재외동포에게는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甲은 계약 갱신 시 검사 결과 제출을 거부하였고 재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甲은 검사 결과 제출 요구가 차별이라는 이유로 A국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외국인 원어민 교사와 관련한 과거 유사 사안에 대한 소송 결과가 부정적이었으므로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없어, 甲은 바로 자신이 입은 피해사실을 UN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에 통보하였다. 동 위원회는 이 사건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과 세계인권선언 위반이라는 견해를 채택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A국과 B국 모두 자유권규약 및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 당사국이다)

(총 20점)

- 1) A국은 UN 인권위원회가 채택한 위 견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A국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국제법에 따라 검토하시오. (10점)
- 2) A국은 세계인권선언이 선언적 효과만 있을 뿐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국제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A국의 주장에 대해 그 타당성을 국제법에 따라 검토하시오. (10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인권조약 이행 메커니즘의 법적 성격과 세계인권선언의 지위를 묻는다. **연결 개념** 선택의정서 제1조·제2조·제5조, 일반논평 제33호, 디알로(2010), 관습법화, 헌장 제55조·제56조. **합정 1)**에서 'A국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고'라는 요구에 따라, 비구속성·국내구제 미완료·위원회 권한 범위라는 A국의 논거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그 뒤 타당한 부분과 부당한 부분을 나누어 평가한다.

■ 답안 개요

소문	쟁점	근거 조문·판례	결론	분량
1)	위원회 견해의 수용 거부	규약 제2조, 제26조, 제28조 · 선택의정서 제1조, 제2조, 제5조 · 일반논평 제33호 · 디알로(2010)	구속력은 없으나 성실한 고려 의무, 선언 부분은 권한 밖	약 800자
2)	세계인권선언의 효력	총회 결의 · 헌장 제55조, 제56조 · 테헤란(1980)	선언 자체는 비구속, 관습법 조항은 구속	약 600자

예시답안 — 2021 제1문

1) UN 인권위원회 견해를 수용할 수 없다는 A국 주장

(1) A국 주장의 근거. 첫째, 자유권규약위원회(제28조)는 사법기관이 아니며, 선택의정서 제5조 제4항에 따라 개인통보를 심리한 후 그 ‘견해’를 당사국과 개인에게 송부할 뿐이다. 견해는 판결처럼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둘째, 수리 요건 흠결이다. 선택의정서 제2조와 제5조 제2항 (b)는 이용 가능한 모든 국내구제를 완료할 것을 요구하는데, 甲은 국내 소송을 제기한 뒤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통보하였다. 셋째, 위원회는 ‘규약’상 권리 침해만 심리할 수 있으므로(선택의정서 제1조) 세계인권선언 위반을 판단한 것은 권한 밖이다.

(2) 타당성 검토. 견해가 판결과 같은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은 타당하다. 그러나 위원회는 일반논평 제33호(2008)에서 견해가 사법적 결정의 중요한 특징을 가지며 당사국은 규약과 선택의정서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조약법협약 제26조)에 따라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하였다. ICJ도 디알로 사건(2010)에서 규약 해석에 관한 위원회의 견해에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A국이 견해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배척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한다.

국내구제 완료에 관하여는, 위원회 실행상 동일 쟁점에 대한 확립된 판례로 인해 승소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없는 경우 구제는 ‘효과적’이지 않아 완료가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단순히 과거 결과가 ‘부정적’이었다는 정도라면 완료 예외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위원회가 세계인권선언 위반까지 판단한 부분은 권한을 넘은 것으로서 A국 주장에 이유가 있다. 실체적으로도 외국인 교사에게만 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 정당화가 없는 한 차별 금지(제26조)에 위반될 수 있다.

(3) 소결. 견해에 구속력이 없다는 A국 주장은 형식상 옳지만, 규약 당사국으로서 이를 성실히 고려할 의무를 면하지는 못한다.

2) 세계인권선언의 효력에 관한 A국 주장

(1) 형식적 성격.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UN총회 결의로 채택되었다. 총회 결의는 원칙적으로 권고이므로 선언 자체는 조약처럼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이 점에서 A국 주장은 일부 타당하다.

(2) 국제법적 효력. 그러나 ‘국제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주장은 지나치다. 첫째, 선언의 상당 부분은 관습국제법으로 인정된다. 고문·노예제·인종차별 금지, 자의적 구금 금지 등이 그 예이다. ICJ는 테헤란 인질 사건(1980)에서 자유의 부당한 박탈과 신체적 구속이 헌장 원칙과 세계인권선언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고 하였다. 둘째, 선언은 헌장 제55조·제56조의 인권 존중 의무 내용을 구체화한 권위 있는 해석으로 받아들여진다. 셋째, 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 등 이후 조약의 기초가 되었다. 다만 선언의 모든 조항이 관습법이 된 것은 아니므로 효력은 조항별로 판단해야 한다.

(3) 소결. 선언 자체는 구속력이 없지만, 관습법을 반영하는 조항은 그 자체로 모든 국가를 구속하고, 헌장 해석의 기준으로 기능하므로 A국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근거: 자유권규약 제2조, 제26조, 제28조 · 선택의정서 제1조, 제2조, 제5조 · 자유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33호(2008) · 디알로 사건(2010) · 테헤란 인질 사건(1980)

2024 제2문

항공기 납치범의 인도 요청과 고문 위험

총 30점 · 소문 3개 · 헤이그협약, 고문방지협약 제3조, 인도 아니면 소추

제2문.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글〉

A국에서는 쿠데타로 군부가 정권을 잡은 이래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소수민족을 억압하는 공포통치가 자행되고 있고, 주요 국제비정부단체들의 인권보고서는 A국을 주요 고문 자행 국가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A국 소수민족의 분리독립을 추구하는 민족해방운동단체에 소속된 3인은 A국 민간항공기를 납치한 후 중간 급유차 B국 공항에 비상 착륙하였으나, 대기 중이던 B국 특수부대에 의해 생포되었다. 납치범 3인의 신병을 확보한 B국에게 A국은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에 의거하여 범죄인인도를 요청하였다. (A국과 B국은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의 당사국이고, A국은 어떠한 인권조약도 비준하지 않았으며, B국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의 당사국이다)

- 1) B국이 납치범 3인을 A국에 인도하지 않을 국제법상 근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 2) B국이 자신이 당사국인 조약들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취할 방안이 무엇인지 논하시오. (10점)
- 3)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상 항공기 납치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두 조약의 의무가 충돌하는 듯 보이는 상황에서 ‘인도 아니면 소추’로 조화시키는 해법을 찾게 한다. **연결 개념** 헤이그협약 제1조·제3조·제4조·제6조~제9조, 고문방지협약 제3조, 벨기에/세네갈(2012), 정치범 불인도. **합정** ‘A국은 어떠한 인권조약도 비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함정이다. 송환금지 의무는 인도하는 B국의 의무이므로 A국의 비준 여부와 무관하다.

■ 답안 개요

소문	쟁점	근거 조문·판례	결론	분량
1)	인도 거부 의 근거	헤이그협약 제7조, 제8조 · 고문방지협약 제3조	인도 의무 없음, 고문 위험으로 인도 금지	약 800자
2)	두 조약을 모두 지키는 방안	헤이그협약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 벨기에/세네갈(2012)	관할권 확립 후 자국 소추	약 700자
3)	항공기 납치의 성립요건	헤이그협약 제1조, 제3조	비행 중 장악, 등록국 밖 착륙 → 성립	약 600자

예시답안 — 2024 제2문

B국은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헤이그협약)과 고문방지협약(CAT)의 당사국이다. A국의 인도 요청에 응하면 고문 위험이 있는 국가로 인도하게 되고, 응하지 않으면 헤이그협약상 의무가 문제된다. 두 조약을 동시에 지키는 길은 ‘인도 아니면 소추’ 원칙에 있다.

1) B국이 납치범을 A국에 인도하지 않을 근거

(1) 헤이그협약은 인도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8조는 납치 범죄를 기존·장래의 범죄인인도조약상 인도 대상 범죄로 보고, 조약을 인도 조건으로 하는 국가는 이 협약을 인도의 법적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하며, 인도는 피요청국 법률이 정한 조건에 따른다고 한다. 즉 협약은 인도를 가능하게 할 뿐 강제하지 않으며, 인도하지 않는 경우의 대안으로 소추 의무(제7조)를 둔다.

(2) CAT 제3조의 고문 위험 국가로의 인도 금지. CAT 제3조 제1항은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국가로 사람을 추방·송환·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그 판단에서 당해 국가에 일관된 형태의 중대하고 명백하며 대규모적인 인권 침해가 존재하는지를 포함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도록 한다. 이 의무는 예외가 없는 절대적 의무이다. A국은 군부의 공포통치 아래 주요 고문 자행 국가로 분류되고 있고, 납치범들은 탄압받는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단체 소속이어서 고문 위험이 특히 크다. A국이 인권조약을 비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B국의 의무와 무관하다.

(3) 정치범 불인도. 헤이그협약은 정치범 예외를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으므로 민족해방 목적의 범행에 B국 국내법상 정치범 불인도를 원용할 여지도 있으나, 승객을 위협에 빠뜨리는 납치는 순수 정치범죄로 보기 어려워 주된 근거는 CAT 제3조이다.

2) B국이 두 조약을 모두 위반하지 않기 위해 취할 방안

(1) 관할권 확립. 헤이그협약 제4조 제1항 (b)는 범인이 탑승한 채 항공기가 자국 영역에 착륙한 경우 착륙국이 관할권을 확립하도록 하고, 제2항은 혐의자가 자국 영역에 있고 인도하지 않는 경우 관할권을 확립하도록 한다. B국은 착륙국이자 혐의자 소재국이므로 관할권을 가진다.

(2) 인도 아니면 소추(제7조). 혐의자가 자국 영역에 있는 당사국은 그를 인도하지 않으면 범죄가 자국 영역에서 행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예외 없이 소추를 위해 권한 있는 당국에 회부해야 하며, 그 당국은 중대한 일반 범죄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B국은 인도를 거부하고 자국에서 소추 절차에 회부함으로써 CAT 제3조와 헤이그협약을 모두 준수할 수 있다. ICJ는 벨기에/세네갈 사건(2012)에서 CAT상 같은 구조의 의무에 관해 인도는 선택지이고 소추는 의무이며, 소추 의무는 인도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존재한다고 하였다.

(3) 절차적 의무. B국은 혐의자를 구금하거나 신병 확보 조치를 하고 즉시 예비조사를 하며, 항공기 등록국 등 관련 국가에 통보해야 한다(제6조). 또한 항공기와 화물을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승객·승무원이 여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제9조).

(4) 그 밖의 선택지. 고문 위험이 없는 제3의 관할국에 인도할 수도 있으나, A국의 외교적 보증만으로는 체계적 고문의 위험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

3) 헤이그협약상 항공기 납치의 성립요건

(1) 행위(제1조). 비행 중인 항공기에 탑승한 자가 ① 불법적으로, ② 폭력이나 그 위협 또는 그 밖의 위협 수단에 의하여, ③ 항공기를 납치하거나 통제를 행사하는 것, 또는 그 미수나 공범이다.

(2) ‘비행 중’(제3조 제1항). 탑승 후 모든 외부 문이 닫힌 때부터 하기를 위해 문이 열릴 때까지를 말하며, 강제착륙의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이 항공기와 탑승자에 대한 책임을 인수할 때까지 비행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3) 적용 대상(제3조 제2항, 제3항). 군·세관·경찰용 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범행이 이루어진 항공기의 이륙지나 실제 착륙지가 그 항공기의 등록국 영역 밖에 있어야 적용된다.

(4) 사안의 적용. A국 민간항공기를 비행 중 폭력·위협으로 납치하였고, 실제 착륙지가 등록국 A국 밖의 B국이므로 협약이 적용된다. 정치적 동기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결론. B국은 헤이그협약상 인도 의무가 없고, CAT 제3조에 따라 고문 위험이 큰 A국으로 인도해서는 안 된다. 대신 헤이그협약 제7조에 따라 자국에서 소추에 회부하면 두 조약을 모두 준수할 수 있다. 사안의 행위는 비행 중 민간항공기를 폭력으로 장악하고 등록국 밖에 착륙시킨 것으로 협약상 납치 범죄에 해당한다.

근거: 항공기 불법납치 억제 협약(1970)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 고문방지협약 제3조 · 소추 또는 인도 의무 사건(벨기에/세네갈, 2012)

2024 제3문

인종차별 정권에 대한 해방기구의 무력투쟁

총 30점 · 소문 2개 · 무력충돌의 분류, 무차별 공격, 포로 지위

제3문.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글〉

A국은 X민족과 Y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이다. X민족은 A국 영토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었으며, A국은 소수민족인 Y민족에 대해 인종차별정책을 시행하였다. Y민족이 X민족의 탄압에 저항하면서 A국과 무력충돌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Y민족은 A국 영토의 일부 지역을 장악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후 Y민족은 통치조직인 Y해방기구(Y Liberation Organization: YLO)를 설립하고 해당 지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하였다. YLO는 군대조직을 구성하여 병사들에게 군복을 착용하고 무기를 휴대하도록 하였으며 국제인도법에 따라 전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양측 간 무력충돌 과정에서 YLO 병사들은 A국 내 민간인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였다. 그러나 A국이 YLO를 무력으로 제압하고 YLO가 장악하고 있던 지역을 회복하면서 수십 년에 걸친 양측 간 무력충돌은 종결되었다. A국은 생포된 YLO 병사들에게 포로 대우를 부여하지 않고 자국의 내란죄를 적용하였다.

※ A국은 1949년 4개 제네바협약(The Geneva Conventions of 1949)과 1977년 2개 추가의정서의 당사국이다. YLO는 1949년 4개 제네바협약과 1977년 추가의정서를 준수하겠다는 선언을 스위스 정부에 제출하였다.

- 1) A국과 YLO 간 무력충돌 및 YLO 병사들의 A국 내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 행위에 대해 국제인도법적 관점에서 각각 검토하시오. (20점)
- 2) A국이 YLO 병사들에게 포로 대우를 부여하지 않은 행위가 국제인도법에 위반되는지 논하시오. (10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제1추가의정서 제1조 제4항과 제96조 제3항을 결합하여 무력충돌을 국제적 무력충돌로 분류할 수 있는지, 그 결과 포로 지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는다. **연결 개념** 공통 제2조·제3조, 제2추가의정서 제1조, 구별 원칙, 전투원 면책, 제3협약 제85조·제118조. **합정** ‘인종차별정책’과 ‘스위스 정부에 선언’이라는 두 사실이 출제 의도의 열쇠이다. 이를 보지 못하고 비국제적 무력충돌로만 처리하면 2)의 결론이 정반대가 된다. 대안적 분류를 함께 쓰면 안정적이다.

■ 답안 개요

소문	쟁점	근거 조문·판례	결론	분량
1)	무력충돌의 성격과 무차별 공격	공통 제2조·제3조 · 제1추가의정서 제1조 제4항, 제48조, 제51조, 제85조, 제96조 제3항 · 제2추가의정서 제1조, 제13조	국제적 무력충돌, 무차별 공격은 전쟁범죄	약 1,300자
2)	포로 대우 거부와 내란죄 적용	제1추가의정서 제43조, 제44조 · 제3협약 제5조, 제85조, 제118조 · 제2추가의정서 제6조 제5항	국제적 무력충돌이면 위반	약 900자

예시답안 — 2024 제3문

무력충돌의 성격에 따라 적용 규범과 포로 지위가 달라진다. 핵심은 인종차별정책에 대한 Y민족의 저항이 제1추가의정서 제1조 제4항의 ‘민족해방전쟁’에 해당하여 국제적 무력충돌이 되는지, 그리고 YLO의 선언이 어떤 효과를 갖는지이다.

1) 무력충돌의 성격과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

(1) 원칙적 분류. 국가 간 무력충돌에는 제네바협약 전체가(공통 제2조), 국가 내부의 정부와 무장단체 간 충돌에는 공통 제3조의 최소 규칙이 적용된다.

(2) 민족해방전쟁의 국제화. 제1추가의정서 제1조 제4항은 인민이 자결권을 행사하여 식민지배, 외국의 점령, 인종차별 정권에 대항하여 싸우는 무력충돌을 국제적 무력충돌에 포함한다. A국은 소수민족 Y에 대해 인종차별정책을 시행하였고, Y민족은 이에 저항하여 무력충돌을 벌였으므로 ‘인종차별 정권에 대한 투쟁’에 해당할 수 있다. A국은 제1추가의정서 당사국이므로 이 조항에 구속된다.

(3) YLO의 선언. 제96조 제3항은 이러한 충돌에서 체약국에 대항하는 인민을 대표하는 당국이 수탁국(스위스)에 일방적 선언을 함으로써 제네바협약과 의정서를 적용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다고 한다. 선언이 수령되면 협약과 의정서가 그 당국에 대해 효력을 발생하고, 그 당국은 체약국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YLO는 Y민족의 통치조직으로 해당 지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하였고 스위스 정부에 준수 선언을 제출하였으므로, A국과 YLO 사이의 충돌에는 제네바협약과 제1추가의정서 전체가 적용되는 국제적 무력충돌 규칙이 적용된다.

(4) 대안적 분류. 제1조 제4항의 요건이 부정된다면 이는 비국제적 무력충돌이다. 이 경우에도 YLO는 책임 있는 지휘 아래 영토 일부를 지배하며 지속적·협동적 군사작전을 수행하였으므로 공통 제3조뿐 아니라 제2추가의정서(제1조 제1항)도 적용된다.

(5)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 어느 분류에 따르든 위법하다. 국제적 무력충돌에서는 충돌 당사자가 민간인과 전투원, 민간물자와 군사목표물을 항상 구별해야 하고(제1추가의정서 제48조), 민간인은 공격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무차별 공격은 금지된다(제51조 제2항, 제4항). 민간인을 공격 대상으로 하거나 그런 결과를 알면서 무차별 공격을 하는 것은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제85조 제3항). 비국제적 무력충돌에서도 민간인은 공격 대상이 될 수 없다(제2추가의정서 제13조). 이는 관습법이기도 하므로 YLO 병사들은 전쟁범죄에 대한 개인 형사책임을 지며, A국은 이들을 소추할 수 있다.

2) 포로 대우 거부의 국제인도법 위반 여부

(1) 국제적 무력충돌인 경우. 제1추가의정서 제43조는 충돌 당사자의 군대를 책임 있는 지휘 아래 있고 국제인도법 준수를 강제하는 내부 규율 체계를 갖춘 조직된 무장 병력으로 정의하고, 그 구성원을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할 권리가 있는 전투원으로 본다. 제44조 제1항은 적대 당사자의 권력 아래 들어간 전투원을

포로로 보며, 전투원은 민간인과 자신을 구별해야 한다(제3항). YLO 병사들은 군복을 입고 무기를 휴대하며 국제인도법에 따라 싸우도록 조직되었으므로 전투원이고, 생포되면 포로이다.

(2) 개별 위반과 포로 지위. 무차별 공격에 가담한 병사라도 국제인도법 위반만으로 포로 지위를 잃지 않는다(제44조 제2항). 그 범죄로 처벌되더라도 제3협약상 보호를 유지한다(제3협약 제85조). 포로 지위에 의문이 있으면 권한 있는 법원이 결정할 때까지 포로로 대우해야 한다(제3협약 제5조).

(3) 내란죄 적용. 전투원은 적법한 전투 행위 자체로 처벌받지 않는다(전투원 면책). 따라서 A국이 적대행위 참가 자체를 이유로 내란죄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며, 전쟁범죄에 대한 개별 소추만 허용된다. 또한 적대행위가 종료되었으므로 포로는 지체 없이 석방·송환되어야 한다(제3협약 제118조).

(4) 비국제적 무력충돌로 보는 경우. 이 경우 포로 지위와 전투원 면책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A국은 국내법상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 다만 공통 제3조의 인도적 대우와 공정한 재판 보장을 지켜야 하고, 적대행위 종료 시 가능한 한 폭넓은 사면을 부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제2추가의정서 제6조 제5항).

결론. A국의 인종차별정책에 대한 Y민족의 투쟁은 제1추가의정서 제1조 제4항의 무력충돌이고, YLO의 제96조 제3항 선언으로 제네바협약과 제1추가의정서가 전면 적용된다.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은 어느 분류에 의하든 위법하며 전쟁범죄이다. 국제적 무력충돌인 이상 YLO 병사들은 전투원으로서 포로 지위를 가지므로, 포로 대우를 거부하고 참전 자체에 내란죄를 적용한 것은 국제인도법 위반이다.

근거: 제네바협약 공통 제2조·제3조 · 제3협약 제5조, 제85조, 제118조 · 제1추가의정서 제1조 제4항, 제43조, 제44조, 제48조, 제51조, 제85조, 제96조 제3항 · 제2추가의정서 제1조, 제6조 제5항, 제13조

제9장

국제환경법과 우주법

UNFCCC의 원칙 · 월경 피해 방지와 상당한 주의 · 환경영향평가 · 권고적 의견의 요청 자격 · 천체 전유 금지
· 우주활동의 국가책임과 손해배상 | 기출 3문항: 2016-3, 2025-3, 2026-3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

9-1 핵심 개념	118
9-2 기출 풀이	121
2016 제3문 UNFCCC 전문에 담긴 국제환경법 기본원칙	121
2025 제3문 군소도서국 기구의 기후변화 권고적 의견 요청	124
2026 제3문 민간 기업의 달 자원 채굴과 탐사선 파괴	127

9-1 핵심 개념

환경법과 우주법은 ‘국가 영역 밖의 공간과 공동 이익’을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다. 환경법은 판례로 확인된 관습법상 의무가, 우주법은 1967년 우주조약과 1972년 책임협약의 조문이 답안의 중심이다.

월경 피해 방지와 상당한 주의 의무

국가는 자원을 개발할 주권적 권리를 가지지만, 자국 관할·통제 아래의 활동이 다른 국가나 국가관할권 밖 지역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할 책임을 진다(스톡홀름 선언 원칙 21, 리우 선언 원칙 2). 트레일 제련소 중재에서 출발하여, 코르푸 해협 사건(1949)의 ‘영역 사용의 관리 책임’, 핵무기 권고적 의견(1996)의 국제환경법 편입, 펄프공장 사건(2010)의 상당한 주의 의무로 구체화되었다. 상당한 주의는 결과가 아니라 행위의 의무이며, 위험이 클수록 요구 수준이 높아진다.

대립 구도

자원에 대한 주권 ↔ 환경 피해 방지 책임

쓰이는 기출 2016-3, 2025-3 (2)

답안 속 문장

“국가는 자국 관할 아래 활동으로 인한 중대한 월경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할 관습법상 의무를 진다(펄프공장 사건, 2010).”

환경영향평가와 통보·협의

계획된 산업 활동이 월경 상황에서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으면 환경영향평가를 할 일반국제법상 의무가 있다(펄프공장 2010). 코스타리카/니카라과 병합 사건(2015)은 이를 산업 활동 일반으로 확장하고, 평가 결과 위험이 확인되면 잠재적 피해국에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펄프공장 사건은 이러한 절차적 의무의 위반을 실체적 의무 위반과 별개로 인정하였다.

쓰이는 기출 2025-3 (2), 2022-3 (2)

답안 속 문장

“사전 통보·협의 의무는 실체적 피해 방지 의무와 별개의 절차적 의무이므로, 실제 피해가 없더라도 그 불이행만으로 위반이 성립한다.”

사전주의와 지속가능한 발전

심각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위험이 있으면 과학적 확실성의 부족을 이유로 예방 조치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리우 선언 원칙 15, UNFCCC 제3조 제3항). ITLOS 해저분쟁재판부는 심해저 활동 보증국 책임 권고적 의견(2011)에서 사전주의적 접근이 관습법의 일부가 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고 하고 이를 상당한 주의의 내용으로 보았다. ICJ는 가브치코보·나기마로스 사건(1997)에서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를 조화시킬 필요를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으로 표현하였다.

쓰이는 기출 2016-3, 2025-3 (2)

답안 속 문장

“과학적 불확실성은 조치를 미룰 이유가 아니라, 상당한 주의의 수준을 높이는 이유가 된다.”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모든 국가가 지구 환경 보호의 공동 책임을 지되, 역사적 기여와 능력에 따라 책임의 정도가 다르다는 원칙이다(리우 선언 원칙 7). UNFCCC 제3조 제1항은 형평에 기초하여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각자의 능력에 따라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선진국이 앞장서야 한다고 규정한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만 감축 의무를 부과하였고, 파리협정은 모든 당사국의 국가결정기여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관습법으로서의 지위는 불확실하지만 해석 원칙으로 기능한다.

대립 구도

공동 책임 ↔ 차별화된 책임 · 교토(이분법) ↔ 파리(자기결정)

쓰이는 기출 2016-3

답안 속 문장

“기후변화는 인류의 공동 관심사이므로 모든 국가가 대응에 참여해야 하지만, 그 부담은 각국의 책임과 능력에 따라 차별화된다.”

권고적 의견의 요청 자격

총회와 안보리는 어떠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헌장 제96조 제1항), 총회가 허가한 UN의 다른 기관과 전문기구는 그 활동 범위 안의 법적 문제에 대해 요청할 수 있다(제2항). ICJ는 요청이 허가된 기관의 요청에 대해 의견을 줄 ‘수 있다’(ICJ규정 제65조 제1항). 전문기구는 경제사회이사회의 협정으로 UN과 제휴한 기구이다(헌장 제57조, 제63조). ICJ는 핵무기 사용(WHO 요청) 권고적 의견(1996)에서 요청이 활동 범위 밖이면 의견을 줄 수 없다고 하였다. 국가가 만든 지역기구는 설립협정으로 요청 자격을 스스로 부여할 수 없다.

쓰이는 기출 2025-3 (1), 2025-2

답안 속 문장

“UN의 기관도 전문기구도 아닌 지역 국제기구는 설립협정에 규정을 두었더라도 헌장 제96조의 요청 자격을 얻지 못한다.”

우주조약 — 전유 금지와 국가의 국제책임

외기권(달과 천체 포함)의 탐사·이용은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고 모든 국가에 자유롭다(우주조약 제1조). 외기권은 주권 주장, 사용·점유 등 어떠한 수단으로도 국가 전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제2조). 국가는 정부기관이든 비정부 단체든 자국의 우주활동에 대해 국제책임을 지며, 비정부 단체의 활동은 허가과 계속적 감독을 받아야 한다(제6조). 발사국은 우주물체로 인한 손해에 책임을 지고(제7조), 등록국은 우주물체와 승무원에 대해 관할권·통제권을 보유한다(제8조). 다른 국가의 이익을 적절히 고려하고 유해한 간섭이 예상되면 사전 협의해야 한다(제9조). 채굴 자원의 소유가 전유 금지에 반하는지는 다툼이 있다.

대립 구도

지역에 대한 관할권(금지) ↔ 우주물체·인원에 대한 관할권(허용)

쓰이는 기출 2026-3 (1)

답안 속 문장

“우주조약 제6조는 민간 기업의 활동을 국가의 ‘자국 활동’으로 보아 국가가 직접 국제책임을 지도록 하므로, 사기업의 책임이라는 항변은 통하지 않는다.”

책임협약 — 절대책임과 과실책임

발사국은 자국 우주물체가 지구 표면이나 비행 중인 항공기에 입힌 손해에 절대책임을 진다(책임협약 제2조). 지구 표면 이외의 곳에서 다른 발사국의 우주물체 등에 입힌 손해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 진다(제3조). 발사국은 발사하거나 발사를 의뢰한 국가, 그 영역·시설에서 발사된 국가이며, 우주물체에는 구성 부분이 포함된다(제1조). 청구는 외교 경로로 하고(제9조), 국내구제 완료가 필요 없으며(제11조 제1항), 1년 내 해결되지 않으면 청구위원회를 설치한다(제14조).

대립 구도

지구 표면·항공기 피해(절대책임) ↔ 우주 공간 피해(과실책임)

쓰이는 기출 2026-3 (2)

답안 속 문장

“달에서 다른 국가의 탐사선이 입은 손해는 ‘지구 표면 이외의 곳’의 손해이므로 책임협약 제3조의 과실책임이 적용된다.”

9-2 기출 풀이

2016 제3문

UNFCCC 전문에 담긴 국제환경법 기본원칙

20점 · 단일 문항 · 공동 관심사, 차별화된 책임, 협력, 월경 피해 방지

제3문.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전문의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다음 지문에 언급된 국제환경법상 기본원칙과 그 내용을 설명하시오.

(20점)

〈지문〉

이 협약의 당사자는,
지구의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인류의 공동 관심사임을 인정하고,
인간활동이 대기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현저히 증가시켜 왔으며, 이로 인해 자연적 온실효과가 증대되고 이것이 평균적으로 지구표면 및 대기를 추가적으로 온난화시켜 자연생태계와 인류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며,
기후변화의 세계적 성격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모든 국가가 그들의 공통적이면서도 그 정도에 차이가 나는 책임, 각각의 능력 및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가능한 모든 협력을 다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국제적 대응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을 인정하며,
국가는 국제연합헌장과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자기 나라의 관할 혹은 통제지역안의 활동 때문에 다른 국가나 관할권 이원지역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음을 또한 상기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지문의 문장마다 대응하는 원칙을 찾아내 명칭과 내용을 설명하게 하는 ‘원칙 추출형’ 문제이다. **연결 개념** 인류의 공동 관심사,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국제협력, 스톡홀름 원칙 21·리우 원칙 2, UNFCCC 제 3조. **함정** 지문에 직접 등장하지 않는 원칙(예: 오염자 부담)을 나열하는 데 지면을 쓰면 안 된다. 각 원칙을 지문의 어느 문장이 표현하는지 연결해 주어야 한다.

■ 답안 개요

항목	원칙	근거	핵심 내용	분량
1)	인류의 공동 관심사	전문 제1문단·UNFCCC 제3조 제1항	국제적 규율의 근거, 세대 간 형평	약 250자
2)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리우 원칙 7·UNFCCC 제3조 제1항·제2항	책임·능력에 따른 차별화	약 350자
3)	국제협력	전문 제3문단	정보 교환, 기술·재정 지원	약 200자
4)	월경 피해 방지	스톡홀름 원칙 21·리우 원칙 2·트레일 제련소·핵무기(1996)·펄프공장(2010)	상당한 주의 의무	약 400자
5)	사전주의	UNFCCC 제3조 제3항	불확실성 아래의 예방 조치	약 200자

예시답안 — 2016 제3문

제시된 UNFCCC 전문에는 국제환경법의 네 가지 기본원칙이 담겨 있다. ① 인류의 공동 관심사, ②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③ 국제협력, ④ 월경 환경피해 방지(영역 사용의 관리 책임)이다. 전문의 과학적 인식(인간 활동으로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여 온난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은 사전주의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1) 인류의 공동 관심사

기후변화와 그 부정적 효과를 ‘인류의 공동 관심사’로 인정한 것은 기후 문제가 한 국가의 국내문제가 아니라 국제공동체 전체의 정당한 관심 대상임을 뜻한다. 이는 영역 주권 안의 활동이라도 지구 기후에 영향을 주는 한 국제적 규율 대상이 된다는 근거가 된다. 심해저의 ‘인류 공동유산’과 달리 소유·관리의 공동성을 뜻하지는 않는다. 현재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세대 간 형평과도 연결된다(UNFCCC 제3조 제1항).

2)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각자의 능력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에 대응할 공동의 책임을 지되, 그 정도는 역사적 배출 기여와 경제적·기술적 능력에 따라 다르다는 원칙이다. 리우 선언 원칙 7에서 정식화되었고, UNFCCC 제3조 제1항은 당사국이 형평에 기초하여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각자의 능력에 따라 기후체계를 보호해야 하며 선진국이 앞장서야 한다고 규정한다. 교토의정서는 이에 근거해 선진국에만 감축 의무를 부과했고, 파리협정은 모든 당사국이 국가결정기여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였다.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필요와 사정에 대한 고려(제3조 제2항)도 같은 원칙에서 나온다.

3) 국제협력의 원칙

전문은 기후변화의 세계적 성격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국가가 ‘가능한 모든 협력’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지구적 환경 문제는 한 국가의 조치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협력 의무는 정보 교환, 통보·협의, 기술 이전과 재정 지원으로 구체화된다.

4) 월경 환경피해 방지 원칙

국가는 국제연합헌장과 국제법 원칙에 따라 자원을 개발할 주권적 권리를 가지지만, 자국 관할이나 통제 아래의 활동이 다른 국가나 국가관할권 밖 지역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장할 책임을 진다. 스톡홀름 선언 원칙 21과 리우 선언 원칙 2가 이를 정식화하였으며, 트레일 제련소 중재판정이 그 출발점이다. ICJ는 핵무기 권고적 의견(1996)에서 이 의무가 국제환경법의 일부임을 확인하였고, 펄프공장 사건(2010)

에서는 국가가 관할 아래 활동으로 인한 중대한 월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다할 의무로 구체화하였다. 관할권 밖 지역까지 보호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5) 사전주의와 결론

전문이 온난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은 사전주의와 연결되며, UNFCCC 제3조 제3항은 심각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위협이 있으면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예방 조치를 미루지 말라고 한다. 이처럼 전문의 원칙들은 기후변화를 공동 관심사로 규정하고, 차별화된 책임 아래 협력하며, 자국 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의무를 지우는 체계를 이룬다.

근거: UNFCCC 전문, 제3조 제1항~제3항 · 스톡홀름 선언 원칙 21(1972) · 리우 선언 원칙 2, 7(1992) · 트레일 제련소 중재(1938, 1941) · 핵무기 권고적 의견(1996) · 펄프공장 사건(2010)

2025 제3문

군소도서국 기구의 기후변화 권고적 의견 요청

총 30점 · 소문 2개 · 권고적 의견의 요청 자격, 관습법상 환경 의무

제3문.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글〉

태평양에 위치한 군소도서국가 A, B, C국은 기후 변화로 인한 해안선 상승 및 기존보다 더 빈번히 발생하는 태풍으로 인한 인적, 재산적 피해 증가에 따라 악화되는 기후변화에 국가 존망이 걸려있는데 공감하고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여 왔다. 이들 국가들은 UN기후변화골격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과 파리협정(Paris Agreement) 등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력체제와 UN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을 중심으로 한 해양법 관련 국제협력체제에서 기후변화 관련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였으나 별다른 기후변화 관련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이들 국가들은 ‘태평양 군소도서국가 기후변화 대응기구’라는 국제기구(이하 태평양기후변화기구)를 설립하고 설립협정에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였다. 이후 태평양기후변화기구는 ICJ에 “UN해양법협약 및 기후변화 관련 협약을 포함하여 일반국제법상 기후변화 관련 국가들의 의무는 무엇인가?”라는 내용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였다. (단, A, B, C국은 모두 UN회원국이다)

- 1) UN헌장과 ICJ규정상 태평양기후변화기구의 권고적 의견 요청에 대한 ICJ 관할권 성립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시오. (10점)
- 2) 위의 관할권이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권고적 의견에서 제시될 수 있는 국제환경법 관련 관습국제법상 의무를 기술하시오. (20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ICJ 권고적 의견의 요청 주체(헌장 제96조)를 정확히 아는지와, 기후변화에 적용될 수 있는 관습법상 환경 의무를 판례와 함께 정리하는지를 본다. **연결 개념** 제96조·제65조, 전문기구, 상당한 주의, 환경영향평가, 통보·협의, 사전주의, 해양환경 보호. **합정** 1)에서 ‘설립협정에 규정했으므로 가능’이라고 쓰면 안 된다. 2)는 ‘관습국제법상’ 의무를 묻는 것이므로 UNFCCC·파리협정의 조약 의무를 늘어놓기보다 판례로 확인된 의무를 중심으로 써야 한다.

■ 답안 개요

소문	쟁점	근거 조문·판례	결론	분량
1)	권고적 의견 관할권	헌장 제57조, 제63조, 제96조 · ICJ규정 제34조 제1항, 제65조 제1항 · WHO 요청 의견(1996)	요청 자격 없음 → 관할권 불성립	약 700자
2)	관습법상 환경 의무	코르푸(1949) · 핵무기(1996) · 가브치코보(1997) · 펄프공장(2010) · 코스타리카/니카라과(2015) · ITLOS 해저분쟁재판부(2011) · UNCLOS 제192조, 제194조	상당한 주의, EIA, 통보·협의·협력, 사전주의, 해양환경 보호	약 1,500자

예시답안 — 2025 제3문

1) ICJ의 권고적 의견 관할권 성립 여부

(1) 요청 주체의 제한. UN헌장 제96조 제1항은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떠한 법적 문제에 관해서도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총회가 허가한 UN의 다른 기관과 전문기구가 그 활동 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관해 요청할 수 있다고 한다. ICJ규정 제65조 제1항도 헌장에 의해 또는 헌장에 따라 요청이 허가된 기관의 요청에 대해 의견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전문기구는 경제사회이사회와 협정을 체결하고 총회 승인을 받아 UN과 제휴 관계에 들어간 기구이다(제57조, 제63조).

(2) 사안의 포섭. 태평양기후변화기구는 세 나라가 설립한 지역 국제기구로서 UN의 기관도, 전문기구도 아니다. 설립협정에 ICJ 권고적 의견 요청 권한을 규정하였더라도, 이는 그 협정 당사국 사이의 합의일 뿐 헌장과 ICJ규정이 정한 요청 자격을 만들어 낼 수 없다. 또한 쟁송 사건의 당사자는 국가에 한정되므로(ICJ규정 제34조 제1항) 기구가 쟁송 절차를 이용할 수도 없다. 설령 전문기구라 하더라도 ICJ는 핵무기 사용(WHO 요청) 권고적 의견(1996)에서 질문이 요청 기구의 활동 범위를 벗어나면 의견을 줄 수 없다고 하였다.

(3) 소결과 대안. ICJ는 이 요청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 기구는 회원국을 통해 UN총회가 요청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실제로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 의무에 대해 UN총회는 2023년 결의로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였고, 군소도서국들이 설립한 기구는 UNCLOS 체제 안의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한 바 있다.

2) 국제환경법 관련 관습국제법상 의무

(1) 월경 피해 방지 의무(상당한 주의 의무). 국가는 자국 관할·통제 아래의 활동이 다른 국가나 관할권 밖 지역의 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트레일 제련소 중재에서 출발하여, ICJ는 코르푸 해협 사건(1949)에서 자국 영역이 다른 국가의 권리에 반하는 행위에 사용되도록 알면서 허용하지 않을 의무를, 핵무기 권고적 의견(1996)에서 이 의무가 국제환경법의 일부임을, 펄프공장 사건(2010)에서 이것이 상당한 주의 의무임을 확인하였다. 상당한 주의의 수준은 위험의 크기에 비례하므로, 기후변화처럼 피해가 심각하고 과학적으로 예견되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고 감시할 높은 수준의 주의가 요구된다. 다만 기후변화는 다수 국가의 누적 배출로 발생하므로 개별 국가의 인과관계와 책임 배분이 쟁점이 된다.

(2) 환경영향평가 의무. 펄프공장 사건은 계획된 산업 활동이 월경 상황에서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으면 환경영향평가를 할 일반국제법상 의무가 있다고 하였고, 코스타리카/니카라과 병합 사건(2015)은 이를 산업 활동 일반으로 확장하였다. 대규모 배출 시설이나 화석연료 사업 허가에도 적용될 수 있다.

(3) 통보·협의 및 협력 의무. 중대한 월경 피해 위험이 있는 활동에 대해 잠재적 피해국에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할 의무, 그리고 공동의 환경 문제에 협력할 일반적 의무가 인정된다. 기후변화처럼 어느 한 국가도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서 협력 의무의 의미는 특히 크다.

(4) 사전주의적 접근. 심각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위험이 있으면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조치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 ITLOS 해저분쟁재판부는 심해저 활동 보증국 책임 권고적 의견(2011)에서 사전주의적 접근이 관습법의 일부가 되어가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고, 이를 상당한 주의 의무의 내용으로 보았다.

(5) 해양환경 보호 의무. UNCLOS 제192조의 해양환경 보호·보전 의무와 제194조의 오염 방지 의무는 관습법으로도 인정된다. 온실가스로 인한 해양 산성화와 온난화는 해양환경 오염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다.

(6) 지속가능한 발전과 형평. ICJ는 가브치코보·나기마로스 사건(1997)에서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를 조화시킬 필요를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으로 표현하였다.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은 주로 조약상 원칙이지만, 상당한 주의의 수준을 각국 능력에 따라 달리 판단하는 해석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다.

결론. 지역 국제기구는 UN 기관이나 전문기구가 아니므로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자격이 없다. 관할권이 있다고 전제하면, ICJ는 월경 피해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 의무, 환경영향평가, 통보·협의와 협력 의무, 사전주의적 접근, 해양환경 보호 의무를 기후변화와 관련된 관습법상 의무로 제시할 수 있다.

근거: UN헌장 제57조, 제63조, 제96조 · ICJ규정 제34조 제1항, 제65조 제1항 · 핵무기 사용(WHO 요청) 권고적 의견(1996) · 코르푸 해협(1949) · 핵무기 권고적 의견(1996) · 가브치코보·나기마로스(1997) · 펄프공장(2010) · 코스타리카/니카라과 병합 사건(2015) · 심해저 활동 보증국 책임 권고적 의견(ITLOS 해저분쟁재판부, 2011)

2026 제3문

민간 기업의 달 자원 채굴과 탐사선 파괴

총 30점 · 소문 2개 · 천체 전유 금지, 제6조의 국가책임, 책임협약의 과실책임

제3문.

A국의 민간 기업 ‘스페이스-알파’는 달의 남극 지역에서 희토류 채굴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A국은 달에서의 민간 기업 ‘스페이스-알파’의 활동을 인증하고 계속적으로 감독하고 있다. A국은 해당 지역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주장한다.

A국으로부터 발사되어 달의 남극 지역에 설치된 ‘스페이스-알파’의 채굴 시설에서 장비의 오작동으로 파편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 파편이 인근에서 탐사 중이던 B국의 정부 탐사선과 충돌하여 탐사선이 파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A국은 해당 사고가 민간 기업의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단, A국과 B국은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과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임)

(총 30점)

1)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상 i) A국의 관할권 주장 및 민간 기업 ‘스페이스-알파’의 달 자원 채굴의 적법성과 ii) 민간 기업 ‘스페이스-알파’의 행위에 대한 A국의 국제책임 성립 여부를 판단하시오. (15점)

2)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상 우주물체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원칙(과실책임 또는 절대책임)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B국 정부 탐사선의 파괴 사고와 관련하여 A국의 국제책임 성립 여부를 판단하시오. (15점)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 우주조약의 핵심 조문(제2조, 제6조)과 책임협약의 책임 이원화(제2조, 제3조)를 사안에 정확히 적용하는지 본다. **연결 개념** 전유 금지, 등록국 관할권, 자원 채굴 논쟁, 비정부 단체 활동의 국가 책임, 발사국·우주물체의 정의, 청구 절차. **합정** 2)에서 ‘우주물체로 인한 손해이므로 절대책임’이라고 쓰는 것이 가장 흔한 오답이다. 손해 발생 장소가 달(지구 표면 이외)이고 피해 대상이 다른 국가의 우주물체이므로 제3조가 적용된다.

■ 답안 개요

소문	쟁점	근거 조문·판례	결론	분량
1) i)	배타적 관할권 주장과 채굴의 적법성	우주조약 제1조, 제2조, 제8조, 제9조	지역 관할권 주장은 위반, 채굴은 다툼 있음	약 700자
1) ii)	민간 기업 행위에 대한 A국 책임	우주조약 제6조, 제7조 · 국가책임초안 제55조	A국이 직접 책임	약 400자
2)	책임 원칙과 탐사선 파괴	책임협약 제1조, 제2조, 제3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과실책임 적용, 과실 입증 시 A국 책임	약 1,000자

예시답안 — 2026 제3문

1) 우주조약상 판단

(1) i) A국의 배타적 관할권 주장. 우주조약 제2조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은 주권 주장, 사용이나 점유, 또는 그 밖의 어떠한 수단에 의해서도 국가 전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A국이 달 남극 ‘지역’에 대해 배타적 관할권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영역적 지배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제2조 위반이다. 다만 A국은 등록국으로서 채굴 시설과 인원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가진다(제8조).

(2) 자원 채굴의 적법성. 우주조약은 자원 채굴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 채굴 자원의 소유가 제2조의 ‘전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린다. 천체 자체와 분리된 자원을 구별하여 채굴은 제1조의 자유로운 ‘이용’이라는 견해가 있고 미국·룩셈부르크 국내법과 아르테미스 약정이 이를 따르나, 달 자원을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보는 달협정은 비준국이 적고 A국이 당사국이라는 사정도 없다. 결국 채굴 자체를 위반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국가의 이용 자유를 배제하지 않고, 다른 국가의 이익을 적절히 고려하며 유해한 간섭이 예상되면 사전 협의할 의무(제9조)를 지켜야 한다.

(3) ii) 민간 기업 행위에 대한 A국의 국제책임. 제6조는 국가가 정부기관이든 비정부 단체든 자국의 외기권 활동에 대해 국제책임을 지고, 그 활동이 조약에 따라 수행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으며, 비정부 단체의 활동은 관련 당사국의 허가와 계속적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사인 행위를 원칙적으로 귀속시키지 않는 일반 국가책임법에 대한 특별법이다(국가책임초안 제55조). A국은 스페이스-알파의 활동을 인증하고 계속 감독하고 있으므로 그 활동은 A국의 자국 활동이다. 따라서 ‘민간 기업의 책임’이라는 A국 주장은 우주조약상 받아들여질 수 없다. 제7조도 발사국에 손해 책임을 지운다.

2) 책임협약상 책임 원칙과 A국의 책임

(1) 책임 원칙의 구분. 책임협약 제2조는 발사국이 자국 우주물체가 지구 표면에 또는 비행 중인 항공기에 입힌 손해에 대해 절대책임을 진다고 한다. 피해자는 발사국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반면 제3조는 지구 표면 이외의 곳에서 한 발사국의 우주물체 또는 그 탑승 인원·재산이 다른 발사국의 우주물체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가 다른 발사국 또는 그 책임 아래 있는 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고 한다.

(2) 우주물체와 발사국 해당 여부. 제1조에 따르면 ‘발사국’은 우주물체를 발사하거나 발사를 의뢰한 국가, 그리고 그 영역이나 시설에서 우주물체가 발사된 국가이다. ‘우주물체’는 그 구성 부분과 발사체 및 그 부분을 포함한다. 채굴 시설은 A국에서 발사되어 달에 설치되었으므로 우주물체이고, 오작동으로 생긴 파편은 그 구성 부분이다. 따라서 A국은 발사국이다. B국 탐사선의 파괴는 재산 손해이다.

(3) 사안의 적용. 손해는 달에서, 즉 지구 표면 이외의 곳에서 B국의 우주물체(탐사선)에 발생하였다. 따라서 제2조의 절대책임을 아니라 제3조의 과실책임을 적용된다. B국은 장비 오작동이 A국 또는 A국이 책임지는 자(스페이스-알파)의 과실, 예컨대 설계·정비·감독 소홀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과실이 입증되면 A국은 민간 기업의 행위라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4) 청구 절차. B국은 국내구제 완료 없이(제11조 제1항) 외교 경로로 청구하고(제9조), 1년 내 해결되지 않으면 청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제14조). 배상은 국제법과 정의·형평의 원칙에 따라 정한다(제12조).

결론. A국의 지역 관할권 주장은 우주조약 제2조 위반이고, A국은 민간 기업 활동에 제6조의 직접 책임을 진다. 달에서의 손해에는 책임협약 제3조의 과실책임을 적용되므로, 과실이 입증되면 A국이 배상책임을 진다.

근거: 우주조약(1967)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 책임협약(1972) 제1조, 제2조, 제3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 국가책임초안 제55조

부록

참조 자료

A 연도별 문항 일람 · B 주제 색인 · C 핵심 조문 요지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

부록 A 연도별 문항 일람	130
부록 B 주제 색인	131
부록 C 핵심 조문 요지	133

부록 A 연도별 문항 일람

연도	문	주제	배점	수록 장
2016	1	불간섭·무력사용금지·자위권	50	7장
	2	공관 불가침과 화재	30	3장
	3	UNFCCC와 국제환경법 원칙	20	9장
2017	1	국영기업의 국가면제, 대사의 민사면제	40	2장
	2	평화유지군 행위의 책임	30	4장
	3	국제해협 통과통항	30	5장
2018	1	조약의 개념, 체결권한, 국내법 위반	40	1장
	2	불가항력과 대응조치	40	4장
	3	범죄인인도, 영해 통항 선박 형사관할권	20	5장
2019	1	반란단체 행위의 귀속, 외교적 보호	40	4장
	2	관할권 이론, 고문의 보편관할권	30	2장
	3	자국민 구출을 위한 무력사용	30	7장
2020	1	강행규범 위반 조약, 가분성, 국가책임	40	1장
	2	해석선언과 유보, 조약 관계	40	1장
	3	상급자 명령, 지휘관 책임	20	8장
2021	1	자유권규약위원회 견해, 세계인권선언	20	8장
	2	자위권의 요건, 비피해국의 책임 추궁	40	7장
	3	ICJ 잠정조치, 관할권 항변	40	6장
2022	1	비회원국에 대한 안보리 강제조치, ICC 관할	40	7장
	2	면제의 개시, 행위 귀속, 영토 내 불법행위	30	3장
	3	국내법 위반 무효, 중대한 위반, 제18조	30	1장
2023	1	EEZ 급유·선박 충돌, 추적권	30	5장
	2	간접 무력 행사, 집단적 자위권, 지역기구	30	7장
	3	강행규범과 국가면제	40	2장
2024	1	현상유지 원칙, 국가승계	40	2장
	2	항공기 납치, 송환금지, 인도 아니면 소추	30	8장
	3	민족해방전쟁, 포로 지위	30	8장
2025	1	제27조 제2항, 저조고지·인공구조물, 제97조	40	5장
	2	자결권, 대세적 의무, 제53조	30	1장
	3	권고적 의견 요청 자격, 관습 환경 의무	30	9장
2026	1	중대한 위반, 책임의 내용, 대응조치	35	4장
	2	대사관 점거, 잠정조치의 구속력, 판결 집행	35	6장
	3	천체 전유 금지, 우주활동 책임, 책임협약	30	9장

부록 B 주제 색인

개념에서 기출 문항으로 찾아가는 색인이다. 굵은 글씨의 문항이 그 개념을 중심 쟁점으로 다룬다.

개념	기출 문항
조약의 개념(명칭과 구속 의사)	2018-1
체결권한·전권위임(제7조, 제8조)	2018-1 , 2022-3
국내법 위반과 무효(제27조, 제46조)	2018-1 , 2022-3
유보·해석선언(제2조 제1항 (d), 제19조~제21조)	2020-2
강행규범과 조약 무효(제53조, 제44조 제5항, 제71조)	2020-1 , 2025-2
중대한 위반과 종료·정지(제60조, 제65조)	2022-3 , 2026-1
발효 전 의무(제18조)	2022-3
이행불능·사정변경(제61조, 제62조)	2018-2, 2020-1, 2024-1
대세적 의무	2025-2 , 2021-2
자결권	2025-2 , 2024-3
현상유지(uti possidetis) 원칙	2024-1
국가승계(조약, 재산·부채)	2024-1
관할권의 근거(속지·속인·보편주의)	2019-2 , 2018-3, 2024-2
국가면제(제한적 면제, 상업적 거래)	2017-1 , 2022-2
강행규범과 국가면제	2023-3
영토 내 불법행위 예외	2022-2, 2023-3
공관 불가침	2016-2 , 2026-2
외교관의 면제와 그 개시	2022-2 , 2017-1
행위의 귀속(제4조, 제5조, 제7조)	2022-2 , 2017-2, 2026-1
반란단체·채택 행위의 귀속(제10조, 제11조)	2019-1 , 2026-2
불가항력·긴급피난	2018-2 , 2016-2
책임의 내용(중지·배상)	2026-1 , 2020-1
대응조치	2018-2 , 2026-1 , 2016-1
비피해국의 책임 추궁(제48조)	2021-2
외교적 보호(국적, 국내구제)	2019-1 , 2023-3
국제기구의 책임	2017-2
무해통항·통과통항	2017-3
영해 통항 선박 형사관할권(제27조)	2018-3 , 2025-1
EEZ 연안국 권한	2023-1 , 2025-1
선박 충돌(제97조)	2023-1 , 2025-1
추적권(제111조)	2023-1
섬·저조고지·인공구조물	2025-1
ICJ 관할권과 선결적 항변	2021-3
잠정조치	2021-3 , 2026-2

개념	기출 문항
판결의 집행(헌장 제94조)	2026-2
권고적 의견 요청 자격	2025-3
불간섭 원칙	2016-1 , 2021-2, 2023-2
무력사용금지와 간접 무력 행사	2016-1 , 2023-2 , 2019-3
자위권(무력공격, 필요성·비례성)	2016-1 , 2021-2 , 2023-2
자국민 구출·인도적 간섭	2019-3
안보리 강제조치(제7장)	2022-1 , 2026-2
ICC 관할범죄와 관할 요건	2022-1 , 2020-3
상급자 명령·지휘관 책임	2020-3
인권조약기구의 견해, 세계인권선언	2021-1
고문 위험국 송환금지, 인도 아니면 소추	2024-2 , 2019-2
무력충돌의 분류, 포로 지위	2024-3
월경 피해 방지·상당한 주의	2016-3 , 2025-3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2016-3
우주조약(전유 금지, 제6조)	2026-3
책임협약(절대책임과 과실책임)	2026-3

부록 C 핵심 조문 요지

이 책의 예시답안에서 인용한 주요 조문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문언 그대로의 번역이 아니라 내용을 충실히 옮긴 요지이므로, 시험장에서 인용할 때는 이 요지를 자신의 문장으로 풀어 쓰면 된다.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1969)

조문	요지
2(1)(a)	조약: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고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국제적 합의.
2(1)(d)	유보: 명칭에 관계없이 서명·비준·수락·승인·가입 시 조약 일부 규정의 법적 효과를 자국에 대해 배제·변경하려는 일방적 성명.
7	국가원수·정부수반·외교장관은 전권위임장 없이 조약 체결의 모든 행위에 관해 국가를 대표한다(제2항(a)). 그 밖의 자는 전권위임장을 제시하거나 관행 등으로 대표 의사가 나타나야 한다(제1항).
8	권한 없는 자의 조약 체결 행위는 그 국가가 사후에 확인하지 않는 한 법적 효과가 없다.
18	서명국 등은 조약 발효 전이라도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19	조약이 유보를 금지하거나, 특정 유보만 허용하거나, 유보가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않으면 유보할 수 없다.
20	제2항: 교섭국 수가 한정되고 전체 적용이 동의의 본질적 조건이면 모든 당사국의 수락 필요. 제4항: (a) 수락하면 조약 관계 성립, (b) 이의는 명확한 반대 의사가 없는 한 조약 발효를 막지 않음, (c) 하나 이상의 수락이 있으면 유보부 동의가 효력 발생. 제5항: 통보 후 12개월 또는 동의 표시일 중 늦은 날까지 이의가 없으면 수락으로 간주.
21	유보는 유보국과 상대국 사이에서 해당 규정을 유보 범위에서 상호적으로 변경한다(제1항). 다른 당사국 상호 간에는 변경이 없다(제2항). 이의국이 조약 발효에 반대하지 않으면 유보 관련 규정은 유보 범위에서 두 국가 사이에 적용되지 않는다(제3항).
26	유효한 모든 조약은 당사국을 구속하며 당사국은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27	당사국은 조약 불이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내법을 원용할 수 없다(제46조의 경우는 예외).
28	다른 의도가 없으면 조약은 발효 전에 발생한 행위·사실에 관해 당사국을 구속하지 않는다.
31~33	통상적 의미·문맥·대상과 목적에 따른 성실한 해석(제31조), 보충적 수단(제32조), 복수 정본의 해석(제33조).
44(5)	제51조~제53조의 경우 조약 규정의 분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45	무효·종료 사유를 안 뒤 조약이 유효하다고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행동으로 묵인한 국가는 그 사유를 원용할 수 없다.
46	체결권한에 관한 국내법 위반은 명백하고 근본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칙에 관한 것이 아니면 원용할 수 없다. ‘명백’이란 통상 관행에 따라 선의로 행동하는 국가에게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
53	체결 당시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은 무효이다. 강행규범은 국제공동체 전체가 수락·인정한 이탈 불가 규범.
60	양자조약의 중대한 위반은 상대방에게 종료·전부 또는 일부 정지의 사유가 된다(제1항). 중대한 위반은 허용되지 않는 이행 거부 또는 대상·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규정의 위반(제3항). 조약의 위반 관련 규정이 우선한다(제4항). 인도적 조약의 인간 보호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5항).
61	이행에 필수적인 대상의 영구적 소멸·파괴로 이행이 불가능하면 종료·탈퇴 사유가 되고, 일시적이면 정지 사유만 된다.
62(2)(a)	국경을 확정하는 조약에는 근본적 사정변경을 원용할 수 없다.
64	새 강행규범이 출현하면 이와 충돌하는 기존 조약은 무효가 되어 종료한다.

조문	요지
65~67	무효·종료·정지를 주장하는 당사국은 서면으로 통고하고, 특별히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3개월을 기다려야 하며, 이의가 있으면 헌장 제33조의 수단으로 해결한다. 12개월 내 해결이 안 되면 제53조·제64조 분쟁은 ICJ에, 그 밖의 분쟁은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제66조).
71(1)	제53조로 무효인 조약의 당사국은 강행규범에 저촉되는 규정에 근거한 행위의 결과를 가능한 한 제거하고 상호관계를 강행규범에 일치시켜야 한다.

■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ILC, 2001)

조문	요지
1, 2	모든 국제위법행위는 국가책임을 수반한다. 국제위법행위는 국가에 귀속되는 작위·부작위가 국제의 무 위반을 구성하는 것.
4	국가기관의 행위는 그 기능·지위와 관계없이 국가의 행위.
5	국가기관이 아니라도 국내법에 의해 정부권한의 요소를 행사하도록 권한을 받은 자가 그 자격으로 한 행위는 국가의 행위.
7	국가기관이나 제5조의 자가 그 자격으로 행동한 이상, 권한 초과나 지시 위반의 행위도 국가의 행위.
8	국가의 지시에 따르거나 지휘·통제 아래 행동한 사인의 행위는 국가의 행위.
10(1)	새 정부가 된 반란단체의 행위는 그 국가의 행위.
11	국가가 자기 행위로 인정하고 채택한 행위는 그 범위에서 국가의 행위.
12	국가의 행위가 국제의무가 요구하는 바와 합치하지 않으면 의무의 연원·성격에 관계없이 위반.
20~25	위법성 조각사유: 동의, 자위, 대응조치, 불가항력, 조난, 긴급피난.
23	불가항력: 통제를 벗어난 저항할 수 없는 힘·예견 불가능한 사건으로 이행이 실질적으로 불가능. 원용국의 행위에 기인하거나 원용국이 위험을 떠안은 경우 제외.
25	긴급피난: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본질적 이익을 지키는 유일한 수단이며, 상대국·국제공동체의 본질적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지 않을 것.
26, 27	어떤 조각사유도 강행규범 위반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조각사유가 소멸하면 이행을 재개하고 물질적 손실 보상 문제는 남는다.
29~31	계속 이행 의무, 위법행위의 중지과 재발방지 확약·보장, 손해의 완전한 배상.
35~37	배상의 형태: 원상회복, 금전배상, 만족.
40, 41	강행규범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에 대해 모든 국가는 적법한 수단으로 이를 종식시키기 위해 협력하고, 그로 인한 상황을 승인하거나 유지를 원조해서는 안 된다.
42	피해국: 개별적으로 의무를 지는 상대국, 또는 집단·국제공동체에 대한 의무 위반으로 특별히 영향을 받는 국가 등.
43	책임을 추궁하는 피해국은 책임국에 청구를 통고한다.
48	비피해국도 집단 이익 보호를 위한 의무 또는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한 의무 위반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중지·재발방지와 수익자를 위한 배상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49~53	대응조치: 이행 유도 목적, 일시적·가역적(제49조). 무력 금지, 기본적 인권, 보복 금지 인도적 의무, 강행규범, 분쟁해결 절차, 외교 불가침은 영향받지 않음(제50조). 비례성(제51조). 이행 요구·통고·교섭 제의 등 절차(제52조). 이행 시 종료(제53조).
54	비피해국이 적법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해하지 않는다.
55	특별법이 규율하는 범위에서 초안은 적용되지 않는다.

■ 외교관계협약(1961)·영사관계협약(1963)

조문	요지
외교 1(i)	공관 지역: 소유자에 관계없이 공관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부속 토지.
외교 9	접수국은 언제든지 이유를 밝히지 않고 공관장·외교관을 기피인물로 통고할 수 있다.
외교 22	공관 지역은 불가침, 공관장 동의 없이 진입 불가(제1항). 접수국의 특별 보호 의무(제2항). 수색·징발·압류·강제집행 면제(제3항).
외교 24	공관 문서는 언제 어디서나 불가침.
외교 29	외교관의 신체 불가침, 체포·구금 불가, 접수국의 보호 의무.
외교 31	형사재판권 면제. 민사·행정재판권 면제(부동산·상속·공무 외 직업적·상업적 활동 소송 제외). 파견국 재판권은 면제되지 않음(제4항).
외교 32	면제는 파견국만 명시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
외교 39	부임을 위해 입국한 순간(또는 임명 통고 시)부터 특권·면제를 누린다(제1항). 직무 종료 후 출국 시 등에 소멸하나 공무상 행위의 면제는 존속(제2항).
외교 41, 45	접수국 법령 존중 의무, 공관의 직무 외 사용 금지(제41조). 외교관계 단절·공관 철수 시에도 공관·재산·문서의 존중·보호(제45조).
영사 31(2)	화재 등 신속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재난 시 영사기관장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

■ UN해양법협약(1982)

조문	요지
2	연안국 주권은 영해와 그 상공·해저에 미친다.
13	저조고지: 간조 시 드러나고 만조 시 잠기는 자연 지형. 영해 안에 있으면 기선으로 사용 가능, 그 밖에는 독자적 영해 없음.
17~20	무해통항권(제17조), 통항의 의미(제18조), 무해의 의미와 유해 행위 목록(제19조), 잠수함의 부상·국기 게양(제20조).
25, 30	연안국의 보호권(제25조).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군함에 대한 즉시 퇴거 요구(제30조).
27	통항 중 선박 내 범죄에 대한 체포·수사 자제와 네 가지 예외(제1항). 내수를 떠나 통항 중인 선박에 대한 조치권(제2항). 기국 영사 통보(제3항). 항행 이익 고려(제4항).
36~39, 44, 45	통과통항 제도의 적용 범위·예외(제36조~제38조), 통과 중 선박의 의무(제39조), 정지 금지(제44조), 무해통항이 적용되는 해협(제45조).
56, 58	EEZ에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제56조). 다른 국가의 항행 자유와 공해 규정의 적용(제58조).
60(8), 80	인공섬·시설·구조물은 섬의 지위와 자체 영해가 없고 경계획정에 영향이 없다(대륙붕에 준용).
62(4), 73	조업 외국인이 준수할 연안국 법령(제62조 제4항). 어업 법령의 집행: 승선·나포·사법절차, 신속 석방, 구금형 금지, 기국 통고(제73조).
74(3), 83(3)	경계획정 합의 전 잠정약정 노력과 최종 합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을 의무.
92, 97	공해에서 기국의 배타적 관할권(제92조). 충돌 등 항행사고의 형사 절차는 기국·국적국만, 기국 외 나포·억류 금지(제97조).
111	추적권: 관할수역 내 개시, 중단 없는 계속, 정지신호, 권한 있는 선박·항공기, 항공기의 추적, 부당한 나포의 배상(제8항).
121	섬은 만조 시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제1항). 사람의 거주나 독자적 경제생활이 불가능한 암석은 EEZ·대륙붕 없음(제3항).

■ UN헌장 · ICJ규정

조문	요지
헌장 2(3), 2(4)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의무. 무력의 위협·행사 금지.
헌장 2(6), 2(7)	비회원국도 평화 유지에 필요한 한 헌장 원칙에 따르도록 확보. 국내관할 사항 불간섭(제7장 강제조치는 예외).
헌장 25, 27(3)	안보리 결정의 수락·이행 의무. 비절차사항은 상임이사국 동의 투표를 포함한 9개국 찬성(제6장·제52조 제3항 결정에서 분쟁 당사국 기권).
헌장 33	분쟁 당사자는 교섭, 심사, 중개, 조정, 중재, 사법적 해결 등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을 구해야 한다.
헌장 39~42	위협·파괴·침략의 결정(제39조), 잠정조치(제40조), 비군사적 조치(제41조), 군사적 조치(제42조).
헌장 51	무력공격 발생 시 안보리 조치 때까지 개별적·집단적 자위권, 즉시 보고 의무.
헌장 53(1)	지역기관에 의한 강제조치는 안보리 허가 없이 취할 수 없다.
헌장 94	회원국은 자국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ICJ 결정에 따른다(제1항). 불이행 시 상대방은 안보리에 제소할 수 있고 안보리는 권고하거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제2항).
헌장 96	총회·안보리는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 총회가 허가한 다른 기관·전문기구에는 활동 범위 안의 법적 문제에 대해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규정 34(1)	국가만이 재판소에 제기되는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규정 36	당사자가 회부하는 사건과 헌장·조약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제1항), 선택조항 수락(제2항), 관할권 다툼은 재판소가 결정(제6항).
규정 38	적용 법규: 조약, 관습, 법의 일반원칙, 판결·학설(보조수단). 합의 시 형평과 선.
규정 41	재판소는 사정상 필요하면 각 당사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잠정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규정 59, 60	판결은 당사자 사이에서 그 사건에 관해서만 구속력이 있으며, 종국적이고 상소할 수 없다.
규정 65(1)	재판소는 헌장에 의해 또는 헌장에 따라 허가된 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법적 문제에 대해 권고적 의견을 줄 수 있다.

■ 로마규정 · 고문방지협약 · 항공기 납치 억제 협약

조문	요지
로마 5~8	관할범죄: 제노사이드(제6조), 인도에 반한 죄(제7조), 전쟁범죄(제8조), 침략범죄.
로마 11~13	시간적 관할(제11조). 범죄지국 또는 피의자 국적국이 당사국이거나 관할권 수락 선언(제12조 제2항, 제3항). 당사국 회부·안보리 회부·소추관 개시(제13조).
로마 17	국가의 진정한 수사·기소가 있거나 중대성이 부족하면 재판적격성 없음(보충성).
로마 25(3)	실행(a), 명령·교사(b) 등의 개인 형사책임.
로마 28(a)	군 지휘관은 실효적 지휘·통제 아래 부대의 범죄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는데 필요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책임진다.
로마 33	상급자 명령은 법적 복종 의무, 위법성 부지, 명백한 위법성의 부재를 모두 충족할 때만 면책. 제노사이드·인도에 반한 죄의 명령은 명백히 위법.
CAT 3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상당한 근거가 있는 국가로 추방·송환·인도 금지. 중대하고 대규모적인 인권 침해의 존재 등 고려.
CAT 5, 7	속지·속인·수동적 속인주의 관할권(제5조 제1항), 혐의자 소재국의 관할권(제2항). 인도하지 않으면 소추를 위해 회부(제7조).

조문	요지
헤이그 1, 3	비행 중 항공기 탑승자가 불법적으로 폭력·위협 등으로 항공기를 장악·통제하는 행위(제1조). 비행 중의 정의, 군·세관·경찰 항공기 제외, 이륙지나 실제 착륙지가 등록국 밖일 것(제3조).
헤이그 4, 6~9	관할권 확립(제4조), 신병 확보·예비조사·통보(제6조), 인도 아니면 소추(제7조), 인도 대상 범죄와 협약의 인도 근거(제8조), 항공기 반환과 여행 계속 편의(제9조).

■ 국가면제협약(2004) · 외교적 보호 초안(2006) · 국제기구 책임 초안(2011)

조문	요지
면제 2, 5	국가에는 주권적 권한을 행사하는 기구 포함(제2조 제1항 (b)). 상업적 거래의 범위와 성질 우선 기준(제2조 제1항 (c), 제2항). 국가는 협약에 따라 면제를 누린다(제5조).
면제 10	외국 사인과의 상업적 거래에 관한 소송에서 면제 원용 불가(제1항). 독립 법인격의 국영기업 소송은 국가 면제에 영향 없음(제3항).
면제 12	사망·상해·유형 재산 손해의 금전 배상 소송에서 행위가 법정지국 영역에서 발생하고 행위자가 그곳에 있었으면 면제 원용 불가.
보호 7, 9	다른 국적국에 대한 청구는 청구국 국적이 우세할 때만(제7조). 회사의 국적국은 설립국, 일정한 경우 경영 본거지·재정 통제국(제9조).
보호 11, 12	주주 국적국의 보호: 회사 소멸 또는 가해국 설립 강제의 경우(제11조). 주주 고유 권리의 직접 침해(제12조).
보호 14, 15	국내구제 완료(제14조)와 그 예외: 실효적 구제의 합리적 가능성 부재 등(제15조).
기구 7	국가가 국제기구의 처분에 맡긴 기관의 행위는 기구가 실효적 통제를 행사하면 기구에 귀속.
기구 62	회원국은 책임을 수락하였거나 피해자가 그 책임에 의존하도록 유도한 경우 책임진다.

■ 국제인도법 · 우주법 · 환경법

조문	요지
제1의정서 1(4)	식민지배, 외국 점령, 인종차별 정권에 대항하여 자결권을 행사하는 무력충돌을 국제적 무력충돌에 포함.
제1의정서 43, 44	군대와 전투원의 정의(제43조). 포로 지위, 구별 의무, 위반만으로 지위 상실 없음(제44조).
제1의정서 48, 51, 85	구별 원칙(제48조). 민간인 공격·무차별 공격 금지(제51조). 중대한 위반(제85조).
제1의정서 96(3)	인민을 대표하는 당국은 수탁국에 일방적 선언으로 협약·의정서를 적용할 수 있고, 체약국과 같은 권리·의무를 가진다.
제2의정서 1, 6(5), 13	적용 요건(제1조). 적대행위 종료 시 폭넓은 사면 노력(제6조 제5항). 민간인 보호(제13조).
제3협약 5, 85, 118	의문 시 법원 결정까지 포로 대우(제5조), 포획 전 행위로 소추된 포로의 보호 유지(제85조), 적대행위 종료 후 지체 없는 석방·송환(제118조).
우주 I, II	탐사·이용의 자유와 모든 국가의 이익(제1조). 주권 주장·사용·점유 등에 의한 국가 점유 금지(제2조).
우주 VI~IX	비정부 단체 활동을 포함한 자국 우주활동의 국제책임과 허가·감독(제6조), 발사국의 손해 책임(제7조), 등록국의 관할권·통제권(제8조), 적절한 고려와 사전 협의(제9조).
책임 I~III	발사국·우주물체의 정의(제1조). 지구 표면·비행 중 항공기 손해의 절대책임(제2조). 지구 표면 이외에서 다른 발사국 우주물체 손해의 과실책임(제3조).

조문	요지
책임 IX, XI, XII, XIV	외교 경로 청구(제9조), 국내구제 완료 불요(제11조), 배상 기준(제12조), 1년 내 미 해결 시 청구위원회(제14조).
UNFCCC 3	형평과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각자의 능력에 따른 기후체계 보호, 선진국 선도(제1항). 개도국의 특별한 사정(제2항). 사전주의적 조치(제3항).

AI 논술 첨삭 서비스

써봄

writegrow.net

직접 쓴 답안, 이제 바로 첨삭받으세요.

Google Gemini 3.1 Pro를 활용한 한국어 논술 자동 첨삭 서비스

네 개 영역으로 나누어 점수를 매기고, 고칠 곳을 짚어 줍니다

논리구조

단락의 배치와 흐름이 논지를 따르는가

근거타당성

이론·조문·자료가 주장을 실제로 뒷받침하는가

주장명확성

입장과 결론이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한가

언어표현

문장이 정확하고 간결한가

영역별 점수와 함께 **강점 · 개선점 · 구체적 제언**을 담은 상세 피드백을 제공하고, 첨삭 결과는 PDF 리포트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PDF·DOCX·TXT 파일을 올릴 수 있고, 여러 편을 한 번에 올리는 일괄 첨삭(최대 10편)도 지원합니다.

이 책과 함께 쓰는 법

- 1 기출 문항을 실전처럼 시간을 재고 씁니다**
예시답안을 보기 전에 답안 개요를 세우고 끝까지 씁니다.
- 2 답안을 써봄에 올려 첨삭을 받습니다**
손글씨 답안은 옮겨 적어 TXT·DOCX로 올리면 됩니다. 영역별 점수와 고칠 곳이 바로 나옵니다.
- 3 책의 출제 포인트·예시답안과 비교해 다시 씁니다**
첨삭에서 약하게 나온 영역을 중심으로 같은 문항을 한 번 더 씁니다.

회원가입하면 3회 무료 분석

요금제	월 이용료
개인 — 수험생	9,900원
교사 — 교사·학원	29,900원

요금과 제공 내용은 2026년 9월 writegrow.net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writegrow.net

QR 코드로 바로 접속